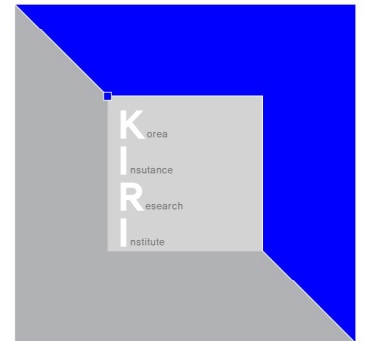




2014 연차보고서

2014. 12

『2014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보험연구원은 2008년 개원, 2010년 11월 법인 설립 이후 보험·금융과 리스크관리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보험산업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원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금융·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현안 이슈를 조기에 발굴하고 이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폭넓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핵심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4년 연차보고서는 올해 우리 원의 다양한 연구결과와 2015년 연구사업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구성은 크게 네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문에서는 2014년 우리 원이 각종 보고서 발간을 통해 발표한 연구성과를 사업목표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014년은 2013년에 선정한 핵심연구과제의 후속과제와 더불어 추가과제를 선정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연속성 있는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문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토론을 위해 개최한 세미나와 공청회 등 각종 연구행사 개최내용을 실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보험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각종 연구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부문에서는 보험연구원이 2015년에 수행할 주요 연구과제를 소개하였습니다. 뉴 노멀 시대 경영전략 모색, 보험산업 규제 변화 대응, 신성장 동력 발굴, 노후소득보장 강화 라는 사업목표 하에 수행할 주요 연구과제의 연구계획과 주요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문은 보험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일반 연구 관련 활동을 담았습니다. 보험 및 금융전문 학술지인 「보험금융연구」, 설문조사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등 정기간행물 소개와 금융·보험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등 대내외 활동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문은 보험연구원의 일반 현황으로서 연구조직과 각 연구부서의 주요 연구영역 및 업무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저성장은 경기순환상 경기하강 국면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 7월 금융규제 개혁안을 발표한 정부는 소비자 신뢰 제고, 재무



건전성 규제 강화, 그림자 규제 철폐 등의 보험정책 방향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보험산업이 가보지 않은 길로서 패러다임적 변화이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경영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며, 장기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사업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차보고서가 정부, 업계, 학계 등 여러 관심있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보험연구원의 지난 한 해 동안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 원에 대한 각계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국가 경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4년 12월

보험연구원장 강 호

A stylized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consisting of several fluid, connected strokes.

I . FY2014 주요 연구

	1. 금융·보험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1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2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23	세계 100대 은행과 국내 은행의 수익성 비교와 시사점
23	간편심사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
24	보험회사의 GA 채널 활용에 대한 소고: 자회사 형태를 중심으로
25	위안화 활용도 제고 합의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26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와 시사점
27	미래 여성노인의 노후준비 실태와 시사점
	2. 경영 선진화
3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 방안
32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34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3. 신성장 동력 발굴
38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40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보험산업 대응방안
42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을 위한 환경 변화
45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4. 고령화시대 보험산업 역할 확대
48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50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
52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 건강보험 협력 방안
55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5. 소비자 보호와 신뢰도 제고
58	보험산업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
60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62 보험민원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64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와 채널 연구

6.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 68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70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7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75 질병장애 및 장기요양 인구 증가에 관한 연구
- 76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성과 제고에 관한 연구
- 78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률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79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7. 금융·보험 이슈 연구

보험금융연구

- 82 보험상품의 핵심상품설명서 개선효과 추정: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 83 RBC를 고려한 보험회사 포트폴리오 최적화
- 84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보험회사 전환 가능성 분석
- 85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이 입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CEO Report

- 86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87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88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KiRi Weekly 이슈

- 89 싱가포르의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개편 논의와 시사점
- 90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와 Fragile 5의 외환위기 가능성
- 90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의 한계와 향후 고려사항
- 91 보험계약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행시 영향
- 92 책임준비금 시가평가 도입과 보험회사의 선제적 대응
- 9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현황과 시사점
- 94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생활습관과 시사점
- 94 FY2013 생명보험 동향 및 시사점
- 95 FY2013 손해보험산업 동향과 시사점

Contents

- 96 국민건강보험 흑자가 민영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
- 97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과 시사점
- 98 장수리스크 관심 확대와 시사점
- 99 부부 이혼 시 퇴직급여 재산분할제 도입 방안
- 100 재보험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소고
- 101 보험금 청구·지급관련 제도개선의 향후 논의방향
- 101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특징과 검토 방향
- 102 해외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의 시사점
- 103 미국 MMF 규제 개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104 복합점포 활성화의 득과 실
- 105 자동차보험 보상원리에 대한 소고
- 106 일본 제3보험 상품동향 및 시사점
- 107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108 공제사업 현황 및 감독강화 필요
- 109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타당성 검토
- 109 보험회사 세제적격 연금지출 현황 및 시사점

KiRi Weekly 포커스

- 111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 111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보유현황 및 시사점
- 112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위험요인과 시사점
- 112 개인정보유출 등 사이버리스크 관리 중요성과 관리방안
- 113 “보호자 없는 병원” 시행의 고려사항
- 113 2013년 4월~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분석과 시사점
- 114 세액공제 확대에 관한 소고
- 114 펀드슈퍼마켓 도입과 금융상품 판매채널 진화 전망
- 115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의 배경과 영향
- 115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보상한도 확대 필요
- 116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
- 117 국내 금융업권간 인수합병 추진현황과 시사점
- 117 제3보험 손해사정사제도 再考
- 118 국가간 개인정보 이동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필요성
- 118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논의에 관한 소고
- 119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보험회사 치매보험상품
- 119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 120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도입의 의미와 시사점

-
- 120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 논란
 - 121 사적연금의 연금화 필요성과 과제
 - 121 글로벌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전략과 시사점
 - 122 잠재성장률 제고와 금융의 역할
 - 122 한국과 일본 노인 삶의 질과 노인복지에 관한 소고
 - 123 최근 금융정책 변화와 시사점
 - 123 일본 경제 장기부진 시사점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 124 고령층 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판매채널의 역할
 - 124 보험회사 이자율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시사점
 - 125 해외 장수스왑(Longevity Swap) 거래 증가와 시사점
 - 125 이슬람 금융과 금융회사 해외사업
 - 126 보험회사 행정지도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와 시사점
 - 126 일본의 정성적 위험관리체계 강화와 시사점
 - 127 비경제활동인구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합리화 필요
 - 127 국내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시사점
 - 128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논의와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검토
 - 128 기준금리 인하, 저금리 장기화와 보험산업
 - 129 손해사정의 외부위탁 강제법안에 대한 검토
 - 129 3/4분기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소고
 - 130 판매채널 다변화에 따른 온라인채널 활성화 방안 필요
 - 130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의 의의와 시사점
 - 131 한-중 FTA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131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의무보험 제도 개선 방향
 - 132 변액보험 보증수수료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시사점
 - 132 자동차보험을 통한 다른 손해보험 상품 판매가능성 분석
 - 133 미국 CDA(Contingent Deferred Annuity)상품 판매 논의와 시사점
-

Ⅱ . FY2014 주관 행사

	1. 정책·경영세미나
138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140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 방안
142	보험회사의 자본강화전략과 정책과제
144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
146	201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50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
153	판매채널제도 개선 연구용역 설명회
156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제도개선 세미나
	2. 국제세미나
160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종합적 위험관리(ERM)
163	효율적 의료비 관리를 위한 공·사 협력 방안
	3.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168	Reinsurance and Systemic Risk: The Impact of Reinsurer Downgrading on Property-Casualty Insurers
169	Financial Crisis and Capital Management
170	글로벌 금융위기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
171	한국경제 & 금융시장 전망 Stagnation vs Reflation
	4. Global Insurance Forum
174	터키 보험시장의 현황과 국내 보험회사의 진출 가능성
175	중국 금융산업 동향과 금융회사의 중국 사업
176	인도네시아 금융산업 현황과 우리은행의 진출 사례
177	Actuarial Professions around the World: General Comparison and Personal Experiences
	5. 금융정책포럼
180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글로벌 보험그룹 자기자본규제 논의
181	우리나라 보험정책 평가와 과제

6. 고령화포럼

- 184 공·사연금의 유기적 연계방안과 연금정보 시스템의 구축 방안
- 185 국민이전계정의 개념과 활용
- 186 의료자원의 수급 현황과 문제점

7. 기타 행사

- 188 한국연금 어디로 갈 것인가?
- 190 건전한 사회와 보험 -보험사기와 소비자 보호 -
- 194 고령화시대, 건강 및 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 파트너십 구축
- 196 2014년 기자간담회 - 핵심연구과제 설명회 -

Ⅲ. 2015년 주요 연구 계획

1. 뉴 노멀 시대 경영전략 모색

- 19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및 보험회사 경영에 대한 시사점
- 198 보험회사의 효율적 비용관리
- 198 국내 보험산업의 빅 데이터 활용 현황 및 과제
- 199 일반손해보험 언더라이팅 능력 제고 방안
- 199 손해사정 정책 및 경영전략 연구

2. 보험산업 규제변화 대응

- 200 IFRS 4 phase 2가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 200 금융·보험업 세제 연구
- 200 보험회사의 신채널 활용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한 연구

3. 신성장 동력 발굴

- 201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저성장 극복 사례 연구
- 201 자동차보험 국제 경쟁력 비교 및 해외진출에 대한 시사점
- 201 신흥시장(Emerging Market) 현황 및 보험회사 진출 전략
- 201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성장 전략

Contents

4. 노후보장 강화

- 202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제고 방안
- 202 정년연장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 및 대응
- 202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및 제도 개선 방안

IV. FY2014 연구 관련 활동

- 204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 205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제공
- 206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207 고령화리뷰
- 208 각종 대외 연구 활동
- 211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 212 보험·금융 도서 정보제공

V. 일반 현황

- 214 경영비전
- 214 연혁
- 215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 216 임직원 현황
- 216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 220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 220 2014년 KIRI Weekly 발간 목록

● 2014년 발간 주요 보고서 형태

연구보고서

경제·금융·보험산업에 대한 학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포괄적으로 제시

정책/경영보고서

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적·경영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

조사보고서

금융·보험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상품·정책·시장 측면의 조사결과를 시의성 있게 제시

보험금융연구

1990년 12월 창간한 보험·금융 전문 학술지로서 2006년 1월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월, 5월, 8월, 11월 연 4회 발간

CEO Report

최고경영자, 정책 및 감독자를 대상으로 금융·보험 산업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

이슈·포커스

웹 주간지 『KIRI Weekly』의 일부분으로 경제·금융·보험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속보성 정보와 분석 내용을 제공

I.

FY2014 주요 연구

금융·보험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경영 선진화

신성장 동력 발굴

고령화시대 보험산업 역할 확대

소비자 보호와 신뢰도 제고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금융·보험 이슈 연구

Chapter

금융·보험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세계 100대 은행과 국내 은행의 수익성 비교와 시사점
- 간편심사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
- 보험회사의 GA 채널 활용에 대한 소고: 자회사 형태를 중심으로
- 위안화 활용도 제고 합의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와 시사점
- 미래 여성노인의 노후준비 실태와 시사점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동향분석실 | 정책보고서

14

연구배경

세계는 저성장, 저금리, 인구고령화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소위 뉴 노멀(New Normal) 시대로 경제 금융 및 사회 환경이 변화해 가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크게 훼손된 것도 원인이지만,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 여력 부족, 설비투자 부진, 소득분배구조 악화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 경제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명목임금 증가율 둔화, 주거비용 상승, 노후대비부담 확대, 과도한 가계부채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민간소비의 본격적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 이에 더해 설비투자도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기업의 수익성과 한계기업 증가 등으로 크게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제여건 속에 보험회사는 지금의 경제·금융상황이 경기 순환성 하강국면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기업체질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2015년 보험산업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보험산업 규제 개혁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감독당국의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계획은 2018년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가격결정에 대한 보험산업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규제 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경제·제도·감독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국내외 경제와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전망을 실시하였으며, 보험회사가 직면하게 될 경영과제 및 감독당국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경제전망

IMF는 2015년 세계경제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완만하게 회복되어 2014년보다 0.5%p 상승한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일본 경제성장률은 하락한 반면, 미국 및 유로지역의 성장세 확대로 2014년보다 0.5%p 높은 2.3% 성장할 전망이다. 신흥국은 인도를 중심으로 2014년보다 0.6%p 상승한 5.0%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중국 경제성장 둔화, 지정학적 불안 확대 등이 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국내경제는 선진국의 경제성장세 확대에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내수가 소폭 개선될 것이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4년보다 0.2%p 높은 3.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민간소비는 취업자수 증가에

2015년 국내경제는 선진국의 경제성장세 확대로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내수가 소폭 개선될 것이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4년보다 0.2%p 높은 3.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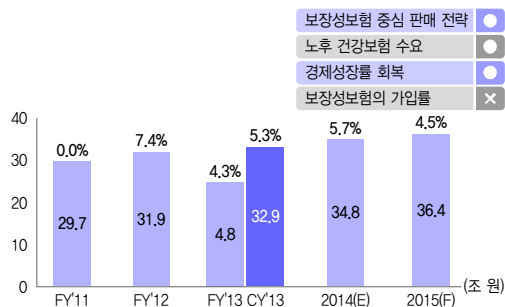
도 불구하고 명목임금 증가율 하락, 전세가 상승 및 월세 비중 증가, 노후 대비 부담, 가계부채 증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2014년에 비해 0.4%p 상승한 2.7%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기저효과와 견조한 수출 증가세,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 등에도 한계기업 비중 확대로 그 증가폭이 제한되어 5.7%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수출의 경우 2015년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6.0%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설비투자 증가로 수입도 자본재를 중심으로 6.5%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경기가 소폭 개선되고 원화절상 추세가 완화된 2014년보다 0.4%p 높은 2.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상황의 경우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와 여성 및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 등으로 고용률은 2014년보다 0.5%p 상승한 60.6%를, 실업률은 0.2%p 하락한 3.3%를 나타낼 전망이다.

보험산업 전망

〈생명보험〉

보험회사들의 상품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보장성보험 판매 강화 노력과 가계의 노후대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경제성장률 회복이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주도적인 혁신상품 부재와 소비자 권익 강화로 2015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4.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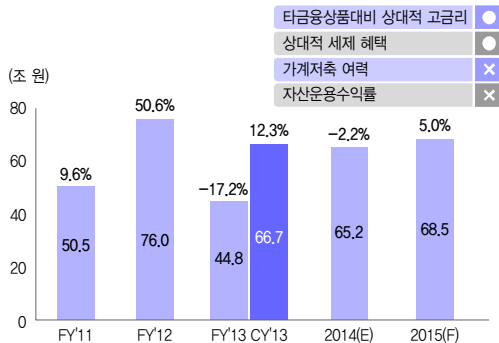


- 주: 1) FY11실적에는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제외됨.
 2) 2014(E)는 2014년 1 ~ 12월이고 2015(F)는 2015년 1 ~ 12월임.
 3) CY13은 2013년 1 ~ 12월 실적임.

2015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이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하고 단체보험이 퇴직연금 위주로 고성장하면서 5.4% 성장이 전망된다.

2015년 저축성보험은 2014년까지 이어진 일반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가 완전히 소멸되면서 예년 수준의 성장세 회복이 전망된다. 또한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것에 비해 저축성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3.5%대로 금리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일반저축성보험 수요가 살아나면서 2015년 저축성보험은 5.0%의 성장이 전망된다.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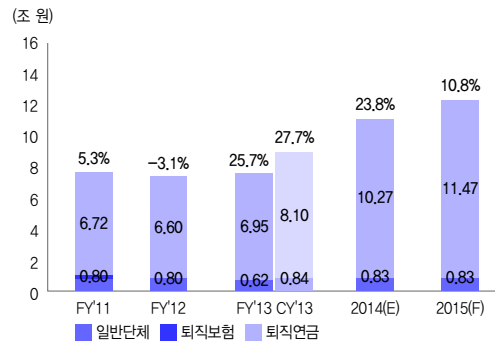


주: 1) FY'11실적에는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제외됨.
2) FY'13은 2013년 4 ~ 12월이고 '14(E)는 2014년 1 ~ 12월임.
3) CY'13은 2013년 1 ~ 12월임.

다만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률 하락과 소폭의 경제성장률 회복은 저축성보험 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5년 일반단체보험은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고용시장 정체로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2015년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 비율 상향(2015년 말까지 70%) 조정,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비율 추가 축소 등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 퇴직연금 시장 성장의 외형적 성장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단체보험의 성장이 정체하겠으나 퇴직연금 시장이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수혜로 확대되면서 생명보험권 퇴직연금 보험료도 10.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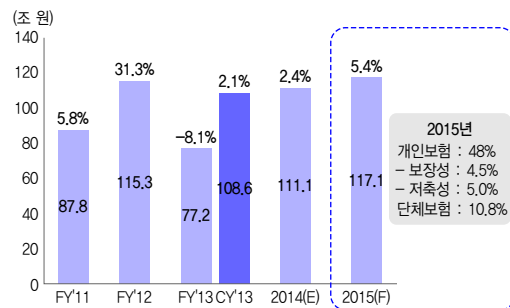


주: 1) 2014(E)는 2014년 1 ~ 12월 실적이고 2015(F)는 2015년 1 ~ 12월 실적임.
2) FY'13은 2013년 1 ~ 12월 실적이며, 전년동기와 비교함.
3) CY'13은 2013년 1 ~ 12월임.
4) 퇴직보험 수입보험료는 FY'11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그 수치가 미미하여 표기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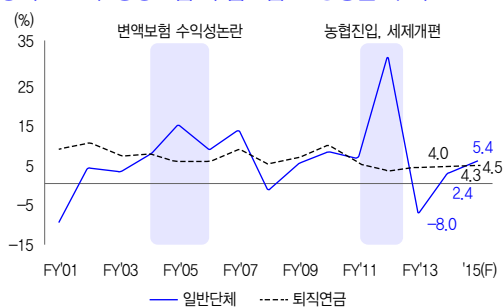
2015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성장 동력이 약화된 데다 대부분 종목에서 뚜렷한 실적 개선 요인이 보이지 않아 4.8%의 제한적인 증가가 전망된다.

종합해보면 2015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이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하고 단체보험이 퇴직연금 위주로 고성장하면서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5.4% 성장이 전망된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명목GDP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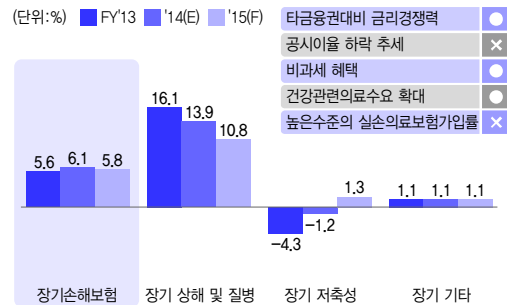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 실적 기준임.

〈손해보험〉

2015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4년과 유사한 수준의 초회보험료 유입과 안정적인 해지율 유지 등으로 5.8%의 제한적 증가가 전망된다. 장기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의료수요 확대,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노력 등이 신규수요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높은 수준의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 저축성보험의 경우 타 금융권 저축상품 대비 금리경쟁력과 비과세 혜택 등으로 소폭의 신규수요 회복이 예상되나, 저축 여력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증가폭은 예년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주: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 실적 기준임.

2015년 개인연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의 장점이 부각되어 초회보험료가 소폭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적인 신규수요 위축으로 성장 여력은 약화되어 있어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0.2%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은퇴 이후 소득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5.6% 증가가 전망된다.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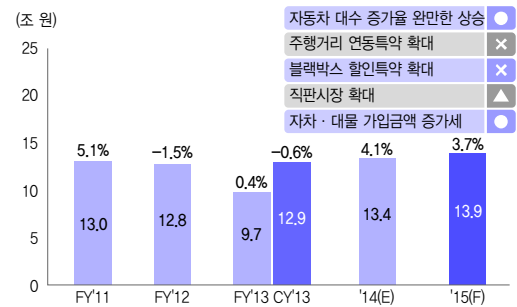
종목	FY2012		FY2013		2014(E)		2015(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개인연금	41,489	21.1	31,829	3.1	41,344	-2.6	41,407	0.2
퇴직연금	32,840	3.3	31,152	9.8	41,271	15.9	43,568	5.6
합계	74,337	11.1	62,991	6.3	82,616	5.8	84,975	2.9

주: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 실적 기준임.

2015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어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5년 상반기에는 2014년 반영되지 않은 자동차보험료 인상분이 반영될 것이고, 자차담보의 완만한 회복세와 대물담보의 가입금액 증가세가 계속되어 원수보험료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 확대에 의한 대당보

험료 감소세와 온라인 채널 비중 확대 추세 지속은 원수보험료 확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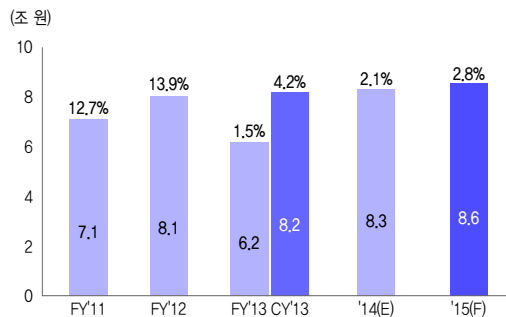


주: 1)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 실적 기준임.
2) CY2013은 2013년 1~12월 실적임.

2015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회복이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대부분 종목의 실적 개선 여력이 크지 않아 2.8%의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주택착공 증가세 등에 힘입은 소폭의 신규수요 회복세가 예상되나, 건설경기의 빠른 회복세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종목으로의 수요 분산 추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0.5% 감소가 전망된다.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선박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둔화되고 적하보험을 비롯한 다른 종목들도 낮은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2년 동안 계속된 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2.0% 증가가 전망되나, 본격적인 경기회복 지연으로 증가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특종보험의 경우 경기회복이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여 상해, 종합, 그리고 기타 특종보험이 부진한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4년과 동일한 3.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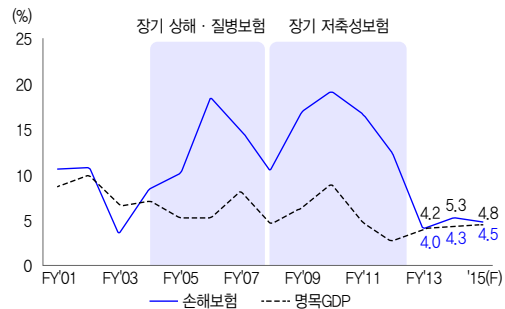


- 주: 1)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 실적 기준임.
2) CY2013은 2013년 1~12월 실적임.

종합해보면 2015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성장 동력이 약화된 데다 대부분 종목에서 뚜렷한 실적 개선 요인이 보이지 않아 4.8%의 제한적인 증가가 전망된다. FY2004 이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에 힘입어 명목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FY2013

이후에는 성장 동력이 약화됨에 따라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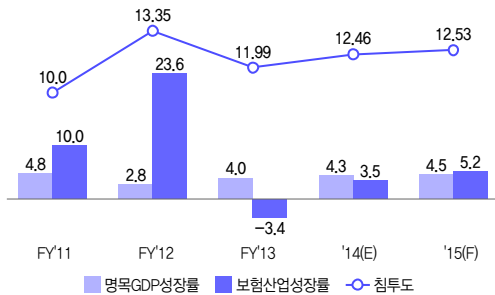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 실적 기준임.

2015년 보험산업 전체를 살펴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보험료 증가율이 모두 명목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5.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산업 종합〉

2015년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보험료 증가율이 모두 명목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5.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침투도 추이 및 전망



2015년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총보험료/명목GDP)의 경우 총보험료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4년 보험침투도와 유사한 12.53%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생명보험 침투도는 2014년 보다 0.07%p 상승한 7.53%, 손해보험 침투도는 0.01%p 상승한 5.0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총보험료/총인구수)는 386만 9,0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밀도는 각각 232만 3,000원, 154만 6,000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밀도 추이 및 전망

(단위: 천 원)

구분	FY2011	FY2012	FY2013	2014(E)	2015(F)
생명보험	1,764.5	2,306.0	1,538.0	2,203.8	2,323.2
손해보험	1,224.7	1,370.7	1,070.5	1,476.2	1,546.5
전체	2,989.2	3,676.7	2,608.4	3,679.9	3,869.7

주: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월~12월 실적 기준임.

주요 경영과제

2015년 보험산업 경영과제로 첫째, 뉴 노멀 시대의 경영전략 모색, 둘째, 신성장 동력 발굴 노력 지속, 셋째, 효율적인 비용관리 방안 마련, 넷째, 보험산업 규제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제시한다.

첫째, 뉴 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경영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기존시장에서 양적인 수요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익원 발굴이 필요하며, 기존고객으로부터 사업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고객 중심의 사업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해외진출, 사업 다각화, 상품 및 서비스 개선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과 더불어 이러한 전략에 부합하는 조직 개편,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등을 병행하여 추진한 주요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뉴 노멀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위기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역량 확보와 기업가치 제고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신성장 동력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2015년 보험산업 경영과제로 첫째, 뉴 노멀 시대의 경영전략 모색, 둘째, 신성장 동력 발굴 노력 지속, 셋째, 효율적인 비용 관리 방안 마련, 넷째, 보험산업 규제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제시한다.

여야 한다.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존 시장의 성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수익원 발굴에 대한 노력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존 사업에 대한 경쟁이 격화되는 한편 유망 사업도 빠르게 레드오션화되고, 기존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신규사업 실패 부담도 증가한다. 또한, 저성장기에는 핵심역량이 더욱 중요해지며, 핵심역량 유무에 따라 신규 수익원 발굴의 성공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사업, 고령층 대상 시장, 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효율적인 비용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뉴 노멀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성장·저효율 경영에서 저성장·고효율 경영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여 수익성 등 경영성과를 유지해야 한다. 저성장 장기화는 기존사업에 대한 경쟁을 심화시켜 수익성 등 경영성과를 하락시킬 것이며, 경영성과가 하락하면 핵심역량을 키울 재무적 여력이 부족해져서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비용구조 개선과 사업비율 관리가 중요한 경영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력은 물론 상품,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비용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보험산업 규제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효율 선진화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소비자 신뢰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금융규제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복합점포, 설계사모집 이력관리 시스템, 단종 보험대리점 등이 가시화될 경우 건전한 영업환경 질서 확립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위험률 산출 및 안전할증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라 시장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정책·감독당국은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보험업계도 가격결정능력을 보다 제고해야 한다. 2018년까지 부채시가평가 도입 등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가 완료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대응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보험산업 규제 변화에 따라 정책 및 감독당국은 시장 자율 원칙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보험업계는 보험산업 규제 변화에 따른 자율성 강화로 시장경쟁이 심화될 것에 대비하는 한편 이러한 자율성 강화가 모집질서 확립과 소비자권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테마진단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4년 봄호

일본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통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장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부분적 연금개혁 중심에서 전면적 연금개혁으로 전환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연금개혁 초기는 공적연금 단일화 등과 같은 개혁보다 연금급부 인하, 연금지급 개시연령 인상, 연금보험료 인상과 같이 보험료와 급부수준을 조정하는 연금정책을 주로 추진하였다. 즉 부분적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경향이 현저하다. 그러나 2012년 이후부터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부분으로 분리된 공적연금제도의 통합을 적극 검토하고 스웨덴식 최저소득보장연금제도 도입을 계획하는 등 전면적 연금개혁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공적연금 제도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유도하고자 공제연금과 근로자의 공적연금을 과감하게 통합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저성장 경제 및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 다양화 등의 시장환경에 부합하기 위하여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추진되고 있

다. 즉, 적격퇴직연금과 후생연금기금을 폐지하는 등 경제성장기 연금모델을 과감히 개혁하는 한편, 노동시장 및 급여 유연화에 부응하는 확정각출연금과 확정급부기업연금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사적연금기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예: 특별법인세 폐지, 캐시벨런스 플랜의 탄력화, 집단운용형 DC 도입)를 완화하여 사적연금가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보장기능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공적연금부문에서는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저소득장애인에게 추가적인 연금급부를 지급하고 단시간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사회보장격차 해소를 위해 후생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소득보장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반면에 사적연금부분에서는 영세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나 단시간 근로자 및 주부 등에게 연금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사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아베정권은 소득세 인상후 세제역진성을 고려하여 저소득계층에 현금지급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계 100대 은행과 국내 은행의 수익성 비교와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4년 봄호

2011년 해외 대형 플랜트 수주실패 이후 우리나라 경제규모(세계 15위)에 부합하는 은행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 은행의 경제규모 대비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13년 Banker지 선정 세계 100대 은행에 포함된 국내 대형은행들의 GDP대비 총자산 비중은 1.38배로 100대 은행 평균 1.41과 유사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대형은행들의 총자산 대비 해외자산 비중은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4.3%에 불과하여 수익의 국내시장 의존도가 크다. 그러나 수익성의 경우, 세계 100대 은행에 포함된 국내 대형은행들과 규모 및 사업구조가 유사한 해외 은행들의 자산수익률(ROA)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0.68%로 캐나다 1.08%, 싱가포르 1.36%, 미국 1.26%, 스웨덴 1.00%에 비해 낮았다. 예대마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은행은 2.27% 수준으로 미국 상업은행 평균 3.0%에 비해 0.73%p 낮았다. 이처럼 국내 대형은행이 규모에 비해 수익창출력이 낮고 국내 시장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금융의 핵심 역량인 리스크 평가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금은 은행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기보다는 리스크 평가능력 제고를 통해 이자 및 비이자 수익을 적절히 확대해야 한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하에서 금융회사 경영의 전문성·자율성·일관성 등이 제고되어야 한다.

간편심사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

김석영(연구위원)·변혜원(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4년 여름호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보험 수요 및 투자수익 감소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수익성 창출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 보험회사들은 고연령층 및 전통적 보험상품 가입이 거절된 그룹을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간편심사 보험상품을 도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간편심사 보험상품이란 보험인수 시 전통적인 가입심사(underwriting)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고지항목을 축소하여 완화된 가입심사를 거치는 상품을 의미한다. 간편심사 보험상품은 가입심사 방법에 따라 인수기준완화형, 한정고지형, 가입한정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실버암 보험상품은 한정고지형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당뇨CI상품이나 고혈압 OK상품 등은 가입한정형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에서도 이전에 보험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유병자와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한 무심사 상품과 한정고지형 간편심사 상품이 도입되어 판매되고 있다. 간편심사 건강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을 보완하는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데, 일반상품 청약자 중 가입이 거절된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만기 계약자를 재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

고 있다. 안정적인 보험료의 산정은 간편심사 상품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인데, 일본의 경우 축적된 지급심사 경험자료를 바탕으로 한 요율 산정과 충분한 안전할증 반영을 통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미국 생명보험시장에서 간편심사 보험상품은 종신보험, 정기보험, 유니버설 및 변액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쉽고 빠른 심사 처리과정에 대한 니즈, 낮은 처리비용에 대한 니즈, 시장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니즈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간편심사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상품이 하나 이상의 건강 질문을 물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습관이나 취미 관련 정보 등을 묻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간편심사 보험상품이 가져야 할 신속한 가입심사를 위해 자동 언더라이팅, MIB 체크와 같은 다양한 언더라이팅 수단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간편심사 보험상품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고 해당 시장에 지속적으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합한 타겟 그룹을 선정하고, 가입대상자 및 보장범위와 관련된 질문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장금액의 적절한 한도 설정과 함께 가입 초기 보장금액을 감액하는 상품설계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더라이팅 기준을 완화하였으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충분한 안전할증을 위험률 산출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GA 채널 활용에 대한 소고: 자회사 형태를 중심으로

황진태(연구위원)·권오경(연구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4년 여름호

2000년 이후 보험시장의 성숙 및 경쟁심화와 더불어 다양한 보험판매채널이 등장하였으며, 이중 GA 채널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최근 10년간 GA 채널은 연평균 11.7% 성장하였으며, 2013년 말 기준 사용인 수는 16.1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최근 보험회사들도 적극적으로 GA 채널을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단순 제휴를 넘어 GA 채널을 자회사하는 등 GA 채널 활용방식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내외 GA 활용사례를 검토하여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 보험회사의 성공적인 GA 활용 전략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보험회사의 GA 채널 활용 유형에는 신규설립, M&A, 기존 조직분사, 단순 지분참여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활용 목적의 경우 주로 신규 시장 개척, 비용절감을 위한 모집조직의 효율성 제고, 채널 다변화 차원이라 할 수 있다. GA 채널의 실제 활용 목적은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채널의 단점이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조직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GA 채널 활용이 고려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GA 채널 활용방법 중 최근 GA 자회사 방식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경우 동 채널에 대해 보험회사가 경영상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구체적 활용유형으로는 신규설립, 기존 영업조직 분사, M&A가 대표적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신규설립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강한 통제력 확보와 낮은 보험회사의 실적 감소 가능성이 장점인 반면, 초기 영업부진과 많은 조직구축 비용 소요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기존 영업조직 분사는 초기 안정적 판매실적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겠으나, 분사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 등이 단점이다. M&A는 신규설립에 비해 경영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 반면, 많은 인수자금과 피인수 GA의 이질적 문화 해소 등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국내 GA 자회사의 영업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설립 초기 시 발생한 영업부진과 높은 초기비용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초기설립 시 비용으로 결손금이 누적(예, AIG어드바이저, 메리츠금융서비스)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해당 GA 자회사의 누적 손익분기점이 되는 투자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외 GA 자회사 사례를 볼 때 보험회사는 GA 채널 활용 시 수익성 및 경영상 통제력 확보 가능성, 자사 채널과의 마찰 가능성 및 시너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경영전략상 해당 GA의 전속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자사 채널과의 마찰 시 취급상품을 달리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다.

위안화 활용도 제고 합의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임준환(선임연구위원)·황인창(연구위원)·김혜란(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4년 가을호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이 합의되었는데, 이는 한·중 간 대외무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위안화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의 주요내용은 1) 한국에서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2) 위안화 청산결제 구축, 3)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의 자격 부여, 4)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 장려이다. 이러한 합의로 한국에 위안화 직거래시장이 개설되어 국내 은행 간 시장에서 달러를 매개로 한 거래가 아닌 원·위안화가 직접 거래되며, 서울 소재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함으로써 중국 본토 밖인 한국에서 위안화 결제대금의 청산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국에 800억 위안(약 13조 450억 원)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부여하여 중국 본토 밖인 역외에서 조달한 위안화로 본토 자본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고, 한국 채권시장에서 한국 또는 외국 기업 및 금융기관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이 장려된다.

이와 같은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 합의는 직접적인 효과와 중·장기적인 효과를 함께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직접적인 효과로서 원·위안화 환거래 및 결제수수료를 절감시키고, 국내 투자자에게 위안화 투자를 다양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직거래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원·위안화 환전수수료가 현재 거래 대금의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 합의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위안화 국제화와 더불어 원화 국제화가 병행되어야 하고, 위안화 역외금융허브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제도 완비가 필요하다. 원화 국제화를 위해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중국에도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위안화 역외금융허브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첫째,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중개시스템 구축 및 시장조성자를 지정하고, 둘째, 위안화 금융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금융지원제도 마련을 해야 하며(예, 유동성 공급제도), 마지막으로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 취득 지원 및 위안화 수급창출을 위한 위안화 금융상품 개발 허용이라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와 시사점

보험동향 2014년 가을호

OECD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가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변화를 살펴보면, OECD 주요 선진국들은 지난 30년 동안 공통적으로 보험 및 연금 자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우리나라 가계 역시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2007년 이후 보험 및 연금자산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금 및 예금 비중은 정체, 금융투자상품

(채권, 주식, 펀드)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를 미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2000년과 2012년 사이 연령별 가계 자산구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금융자산 규모가 정점에 이르는 연령대가 50대 초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약 10세 정도 늦춰지고, 금융자산 비중도 60대 이상 가구에서 다소 높아졌다. 또한 60세 이후 연령대에서 총자산 중 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 추세가 과거에 비해 둔화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전 연령대에서 현금 및 예금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주식자산 비중은 감소하는 상반된 추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험자산 비중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구성 변화의 주요 요인인 인구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는 보험산업에 있어 수요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보험상품의 핵심구매 연령대인 30~40대 인구비중이 점차로 감소되고 있어 보험산업의 성장성이 둔화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가구와 고령가구 비중 증가는 소득보장 보험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대수명 증가와 불충분한 공적연금으로 인해 연금과 저축성 보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여성노인의 노후준비 실태와 시사점

오승연(연구위원) | 테마진단

2014년 고령화리뷰 제3호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는데, 이 중 여성노인의 빈곤은 남성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과거 여성은 남편 혹은 성인 자녀를 통해 노후를 보장 받았으나, 가족 규범의 해체로 가족 내 노후보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여성의 노후준비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미혼과 이혼 증가로 남성 가장의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여성 가구주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노후소득의 원천이 될 연금 가입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여성 노인의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노후준비 현황을 미시적, 거시적 수준에서 조사하여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현 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소득 구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후 소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연금 소득원(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개인연금 등)을 살펴보면, 2013년 현재 55-79세 여성 노인 여성의 42.4%만이 연금 수령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통해 충당하는 노후소득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미래 여성노인은 현 세대 여성 노인들과 달리 얼마나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동패

널 자료를 이용해 여성의 혼인 상태별로 노후준비 실태를 분석하였다.

미혼 여성가구주의 경우 다른 여성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 및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노후준비에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및 사별 여성 가구주는 교육, 고용, 소득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공·사연금 가입률과 납입액 역시 낮아 노후준비의 취약계층이다. 평균 수명 증가와 미혼 및 이혼 증가로 여성 가구주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노후 빈곤 해소 위해 노후준비 취약계층인 여성가구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무배우 여성 가구주에 비해 경제적 안정성이 나은 편이나,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배우자를 상실할 경우 독자적인 노후소득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혼 시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의 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사별 시 여성 배우자에게 유산을 적절히 보전해주는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무배우 여성의 경우 절반 정도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이탈하는 시기는 첫 아이 출산보다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기혼자에게 불리한 직장 분위기와 근로여건도 원인임을 말해준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기혼여성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의 변화가 출산·양육 지원정책 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Chapter 2

경영 선진화

-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 방안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IFRS와 RBC 연계방안
-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 방안

김석영(연구위원) · 김세중(연구위원) · 김혜란(연구위원) | 보고서

30

연구배경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현재 수입 보험료 기준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일반대중의 평가는 예상외로 부정적인데 이는 보험회사의 사업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에 기인한다. 보험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전망이 좋지 않다는 점 또한 수익구조 개선을 필요로 한다. 보험회사는 수익구조 개선뿐 아니라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주요내용

3이원 보험료 산출방식에서는 실제 보험금지급률, 실제사업비율, 실제이율 등을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등과 비교하여 보험회사 수익을 원천별로 분석할 수 있다. FY2011 생명보험산업의 3이원 규모를 살펴보면 당기순이익 4조 3천억 원 중 사업비차익이 2조 4천억 원으로 54.5%를 차지하며, 수익이 사업비차익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수익구조가 계속해서 사업비차익 중심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보험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할 때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출시하는데 그림자 규제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유로운 수익구조 결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사업비차익은 종합손익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을 보

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본 보유가 요구되는데 반해 현재 보험산업의 이익규모는 최소 재무건전성 유지에도 버거운 수준으로 평가된다. 현재와 같은 사업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하에서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규모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요율 산정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충분성의 원칙, 비과도성의 원칙, 그리고 공정성의 원칙이 있으며 3이원 방식의 보험료 산출체계는 상품 개발시 3가지 예정기초율, 즉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을 적용하여 수지상등의 원칙이 성립되도록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생명보험회사들의 위험률차익률은 2000년대 초반에는 30% 수준에 달하였으나 2013년 11.7%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외환위기 당시에 유동성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확정고금리로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외환위기 이후 금리가 하락함으로써 이때 판매한 상품들에서 이차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비차익 규모는 1999년에 9천 6백억 원에서 2000년에 1조 4천억 원, 2001년에는 2조 원 그리고 2002년에는 3조 원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크게 두 가지 원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4년 이전에는 예정신계약비를 한도로 하는 이연상각제도로 인해 초기에 상당한 이익을 확보하는 구조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실제신계약비를 한도로 이연하는 제도로 바뀐

위험물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로 전환된다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에 보험회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도 현재의 규제 해소가 필수적이다. 고령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비고령 인구가 감소하는 고령화는 생명보험 가입자 연령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명보험회사들이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고령층의 니즈가 높은 보험 상품에 대한 공급을 확대해 이들의 가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으로써 초기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 보험산업의 3이원 구조는 보험료 산출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따라서 보험료 산출체계와 관련한 감독당국 규제는 보험회사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보험회사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규제로는 안전할증 한도 30% 설정, 예정관리비 인상 억제 등을 들 수 있으며, 예정이율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감독규제는 보험료 산출원칙 중 보험료의 비과도성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감독당국의 노력으로 볼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적정의 보험료를 계약자로부터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는 보험회사가 원해서 선택한 구조라기보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더 큰 것이다. 위험물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로 전환된다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에 보험회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도 현재의 규제 해소가 필수적이다. 고령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비고령 인구가 감소하는 고령화는 생명보험 가입자 연령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명보험회사들이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고령층의 니즈가 높은 보험 상품에 대한 공급을 확대해 이들의 가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위험물차익 중심의 경영은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능력, 언더라이팅 능력, 지급심사 능력을 향상시키며, 해외진출 경쟁력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나 경감해주는 것은 보험회사의 본질적 기능인 것이며 보험회사는 보험의 본질적 기능인 위험 인수 및 관리에서 이익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차역마진이 발생한 바 있으나 그들은 우리와 달리 사업비차익이 아닌 위험물 차익 확보를 통해 이차역마진에 대응하였다.

결론 보험회사 수익구조는 사회후생 증대를 위해 위험물차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위험물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는 보험회사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대효과를 가지며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위험물차익 중심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위험물 산출에 관한 규제 해소가 선행되어야 하고 위험물차익 중심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적정 이익 확보가 필요하다.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김해식(연구위원) · 조재린(연구위원) · 이경애(연구위원) | 보고서

32

연구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1.5배(150%) 이상 높은 수준의 RBC 지급여력비율 유지를 보험회사에 권고하고 있고, 2014년에는 RBC 요구자본 산출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RBC 정성평가와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 4 phase 2, 2nd Exposure Draft 이하 phase 2)을 포괄하는 종합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동 로드맵은 자본규제에 관한 국제기준의 변화를 반영하여 2018년 이후 전개될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로드맵에 따른 규제 변화가 보험회사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보험회사가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대응수단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로드맵의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추가되어야 선진화 로드맵에 따른 새로운 감독제도의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IFRS 보험부채 시가평가정보를 활용한 RBC 지급여력평가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

2013년 현재의 보유계약이 만기까지 계속 유지될 경우 보험회사가 보유해야 할 준비금의 현재가치와 현재 보유

하고 있는 준비금을 비교한 부채적정성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결과는 생명보험의 경우 29조 원의 장래이익(LAT잉여)이,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20조 원의 장래이익이 예상됨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국내 보험산업은 건전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양호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장래이익의 세부 내용을 보면, 세부 상품구성별로 편차가 크다. 금리확정형이나 유배당에서는 대체로 장래손실이 예상되고 있고, 금리연동형이나 무배당에서는 장래이익이 예상되는 구조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무배당·금리연동형에서 64조 원의 장래이익이 예상되는 반면, 유배당·금리확정형에서 35조 원의 장래손실이 예상되면서 최종적으로 29조 원이란 장래이익이 보유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예상되는 장래이익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인가는 향후 전개될 저금리와 저성장이라는 불리한 경제환경에서 무배당·금리연동형 상품구성의 장래이익이 얼마나 줄어들고 유배당·금리확정형 상품구성의 장래손실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게다가 2018년에 예정된 회계규제의 변화(phase 2)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경제 및 규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익성과 건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낙관하기 어렵다.

IFRS 4 phase 2의 보험부채 시가평가는 phase 1

IFRS 4 phase 2의 보험부채 시가평가는 투자자는 물론 지급 여력 감독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phase 1에서 phase 2로의 이행기에 장래손실과 장래이익 간의 비대칭적인 인식으로 인한 가용자본 급락 문제는 단기 간에 해소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므로 지급여력평가에서는 IFRS와 다르게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여 장래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의 LAT와 비교할 때, LAT에서 채택된 사일로 방식이 phase 2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 서로 다른 상품구성 간에는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지 못하며, 손실계약이 있다면 그 손실은 장부에 즉시 반영해야 하므로 자본의 감소를 피할 수 없다. 현재 국내 보험회사에는 손실계약이 존재하므로 상품구성 기준에 따라 장래손실의 규모의 차이가 있을 것이나, 결국 장래손실은 자본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phase 2는 보유계약에도 소급적으로 시가평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3년 생명보험회사의 LAT 결과를 활용하여 phase 2의 시가평가 영향을 살펴보면, 국내 생명보험의 경우 35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과 64조 원의 이익이 예상되는 계약의 두 가지 상품구성이 있게 된다. 향후 생명보험의 수익성이나 상품구성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보고 2013년 현재 재무 상태가 2018년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phase 2 시행 시 생명보험의 가용자본은 58조 원에서 23조 원으로 감소하고 요구자본은 20조 원이므로 산업 평균 RBC비율은 286%(=58/20)이지만 phase 2를 반영한 RBC비율은 115%(=23/20) 수준으로 급락하게 된다. 그 결과 phase 2 시행으로 생명보험회사 23개사 중 최소지급여력기준인 RBC비율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회사가 8개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RBC 강화로 인한 요구자본 증가율 30%를 고려한다면 산업 평균

RBC비율은 89%로 하락하여 최소지급여력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회사 수가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phase 2에 대비한 LAT의 단계적 강화를 진행하되 RBC 지급여력평가에 장래손실을 포함하고 있는 phase 2 자본과 더불어 장래이익도 가용자본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시가에 기초한 지급여력평가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우선 장래손실을 한도로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자본의 일정 비율로 장래이익 인정 한도를 설정하여 자본 구성의 질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결론 국내 보험산업이 처한 상황과 손실계약에 대한 논의를 배경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IFRS-RBC 연계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IFRS 자체 기준을 보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RBC의 가용자본 조정을 통해 IFRS가 RBC 지급여력평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여 새로운 지급여력평가제도의 정착률을 유도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IFRS와 RBC 두 측면에서의 접근이 모두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조영현(연구위원) · 조재린(연구위원) · 김혜란(연구위원) | 보고서

34

연구배경

최근의 거시경제 환경은 보험회사에 우호적이지 못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신계약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금리하락으로 금리리스크가 큰 생명보험회사의 경제적 자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하여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무건전성제도와 회계제도 변화도 보험회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제도와 회계제도 변화의 요체는 보험회사의 위험규모와 경제적 가치를 정교하게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7월말 금융감독당국도 이러한 맥락에서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정책은 보험회사에게 보다 많은 준비금과 자본을 요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보험회사가 최적의 방법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유도 혹은 허용하는 정책에 대한 제시는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회사 자본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험회사가 자본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재무건전성 제도 강화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감독당국이 제시한대로 금리 위험액과 신용위험액 신뢰수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2018년 말 예상되는 생보사의 평균 RBC 비율은 207%이다. 이는 규제변화가 없었을 때 예상되는 2018년 말 평균 RBC비율 284%에 비해 77%p 가량 낮은 수치이다. 여기에 더해 IFRS 4 phase 2가 시행될 경우 2018년 말 생보사의 평균 RBC비율은 104%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은 현재의 할인율을 평균 4.75%로 가정하여 계산한 LAT자료에 근거하므로 부채시가평가 시 적용되는 실제 할인율이 이보다 낮을 경우 가용자본의 감소로 생보사의 평균 RBC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자본관리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자본확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총자본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는 다양한 자본확충 수단이 있을 때 실현가능하다. 보험회사가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은 크게 이익의 내부유보, 신주발행, 후순위채 발행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우 이익의 내부유보와 신주발행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후순위채는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만 발행이 허용되고 있다. 국내 생보사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2018년 평균 RBC비율을 약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자본확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총자본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는 다양한 자본확충 수단이 있을 때 실현가능하다. 보험회사가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은 크게 이익의 내부유보, 신주발행, 후순위채 발행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우 이익의 내부유보와 신주발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30%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매년 3조원의 자본을 추가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설령 생보사가 2015년부터 모든 이익을 내부유보하더라도 연평균 1.1조 원 정도의 자본을 추가적으로 확충하는데 그쳐 외부조달이 필요하다. 국내 생보사는 자본확충 시 후순위채를 이용함으로써 자본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자본구조의 대표적인 두 이론인 trade-off 이론과 pecking order 이론에 따르면, 후순위채와 같은 타인자본의 적절한 발행이 자본비용을 낮추거나 신주발행에 비해 선호된다. 실제로 AXA, Prudential(미국), 다이이치 등의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후순위채를 가용자본의 10~20% 가량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적절한 후순위채 발행이 보험회사의 자본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자본확충 이외에 요구자본을 경감시킴으로써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도 있다. 생보사는 2013년 말 기준 요구자본 중 금리위험액 비중이 38.9%로써 가장 높다. 생보사가 2015년부터 금리리스크를 매년 10%씩 감축시킬 경우 2018년 RBC비율은 대략 16%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생보사는 금리리스크를 자산과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온 것이 특징이다. 미국 생보사와는 다르게 파생상품을 이용한 금리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산시장의 경우 장기채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며, 보험시장의 성장률 둔화로 신계약을 통한 부채구조 조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회사는 파생상품을 이용한 금리리스크 헤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새롭고 효과적인 자본확충 전략과 위험경감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이다. 자본확충 시 적절한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함으로써 자본비용을 낮추고, 금리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금리리스크를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상시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최소의 자본비용으로 최적의 자본구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RBC제도에 금리파생상품이용 효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Chapter

3

신성장 동력 발굴

-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보험산업 대응방안
-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을 위한 환경 변화
-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전용식(연구위원) · 조영현(연구위원) · 채원영(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금융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명목 GDP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금융·보험산업 부가 가치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가계의 소득증가를 둔화와 기업의 투자수요 위축, 고령인구 비중 증가로 금융상품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금리는 금융산업의 저수익으로 이어져 금융회사들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신성장 동력은 보험업권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모색해야 할 과제이다. 그렇다면 금융산업의 신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특히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방안은 무엇인가?

본 보고서는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해외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성장이란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기존 고객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국내 시장의 보험수요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신규 고객 확보와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측면에서 해외사업이 앞에서 기술한 성장의 정의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특히 진출 지역이 다변화될수록 보험회사의 지속성장 기반이 확대되고 리스크 분산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사업이 중요하다. 국내 대형 보험회사들의 경우 해외시장에 이미 진출하여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국내 보험시장의 선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성과는 미미하다. 그리고 글로벌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성과와 비교할 경우, 해외사업을 성장동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을 현지 시장에서의 점유율, 수익 등 정량적 지표와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평가하고 정책적,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주요내용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은 70년대부터 사무소 개설로 시작되었다. 해외시장의 금융시장, 보험산업 정보를 수집을 통해 국내시장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해외진출이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현지법인 설립이 늘어나면서 해외 보험영업이 활성화되었다. 손해보험의 경우 계열 제조업 기업의 해외진출과 병행하여 현지 시장에서 계열 제조업 기업의 위험을 인수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중국,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현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영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사업 경영성과 측면에서 손해보험의 경우 규모는 작지만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생명보험의 경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기회가 줄어들고 있어 신성장 동력으로서 해외사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이 전략으로 반영되어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해외사업비중을 미국,

우리나라의 해외사업비중을 미국,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해외사업 비중은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 0.95%, 손해보험 1.23%에 불과하다. Forbes 2000 보험회사 가운데 해외사업 비중 집계 가능한 55개 보험회사의 해외사업비중 중간값은 생명보험 10%, 손해보험 4.8%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해외사업비중은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 0.95%, 손해보험 1.23%에 불과하다. Forbes 2000 보험회사 가운데 해외사업비중 집계 가능한 55개 보험회사의 해외사업비중 중간값인 생명보험 10%, 손해보험 4.8%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주요국들이 70년대부터 자국 보험산업의 성장기회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다변화와 해외사업을 시작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해외사업비중이 그렇게 작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울 수 있으나, 해외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기간이 20년이 채 안되는 일본 보험회사들의 경우 생명보험 23.9%, 손해보험 17.8%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보험회사들의 진출 국가들인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률이 높고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보험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등으로 측정한 보험산업 발전단계가 낮아 향후 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보험산업 경쟁도가 높고, 진출방식의 한계, 경영관리 비용 등으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경쟁력을 현지에서 발휘하기가 어렵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해외사업의 편익보다 아직은 비용이 더 큰 Contractor 외(2003)가 제시한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

관리 비용,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통화가치 변동으로 인한 비용, 외국기업이라는 이유에서 발생하는 부담(Liability of Foreignness) 등 극복해야하는 부담이 아직은 더 큰 것이다.

결론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해외사업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들이 제시하는 해외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관리해야 한다.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현지 경영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상품전략, 경영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국내 시장에서 축적한 경쟁력을 해외시장에서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적 성장(Organic Growth) 전략에서 외적 성장(Inorganic Growth) 전략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감독당국도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지 경영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외환관리규정, 해외사업 승인 및 신고수리 절차 규정, 그리고 현지 경영성과 평가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보험산업 대응방안

강성호(연구위원) · 정원석(연구위원) · 김동겸(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40

연구배경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적 위험의 증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사회안전망은 기본적 복지욕구 해소에 그치지 않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내할 복지재정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 하락 등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과거와 동일한 대응방안으로는 고령화 리스크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한 복지욕구 충족과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새로운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고령층 대상 보험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령층 대상 국내보험시장을 건강 및 소득 보장으로 구분하여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했다.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주요 선진국의 대응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제점과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고령층 대상 보험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주요내용

고령층 대상 국내보험시장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보험수요자인 고령층은 저소득 및 고위험군의 특성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금융에 대한 이해력 또한 부족하여 필요한 보험수요에 비해 실현된 보험수요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공급측면에서 보면, 보험회사는 고령층 대상 보험상품에 대한 위험관리가 어려워 이들에 대한 보험상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도 미흡하여 고령층 대상 보험산업은 전반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의 대응사례를 살펴보았다.

선진국들은 고령화 과정에서 직면한 복지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협력을 확대 추진한 것이 눈에 띈다. 이에 부응하여, 사적부문에서는 고령친화형 보험상품 적극적 개발, 현물서비스 공급,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적에서 추진하는 건강보험 및 간병보험을 민영보험에서 대체(Opt out)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일의 사례나, 민영보험 채널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는 미국의 사례는 대표적인 공·사협력을 보여준다. 또한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및 세제지원(예, 리스터연금, NEST제도) 등은 보험산업에 대해 법,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바탕 위에 선진국의 보험산업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고령층 대상 보험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유병자 보험, 장기요양보험을 민영

선진국들은 고령화 과정에서 직면한 복지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협력을 확대 추진한 것이 눈에 띈다. 이에 부응하여, 사적부문에서는 고령친화형 보험상품의 적극적 개발, 현물서비스 공급,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험 형태로 활발히 공급하거나, 독일의 고령화 적립금(Aging provision)처럼 고령기에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사례가 있다.

또한 현물서비스를 다양하게 공급하거나 부가서비스까지 보험산업에서 활발히 추진하는 것도 눈여겨 볼 만하다. 즉,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모두 보험사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고령층 대상 보험산업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건강보장과 관련하여, 민영 건강보험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가입자특성 및 위험군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 공급(예: 소액·유병자보험 등) 활성화와 보험료 할인 및 조정 (예: 건강관리 시 보험료 할인, 보험료 탄력 조정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현물서비스까지 보험금 지급방식을 다양화하고, 건강관리서비스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보험업법의 ‘특별이익 금지’, 의료법의 ‘환자알선행위’ 등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가 요구된다.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은퇴시점을 전후하여 차별화된 연금상품을 개발하고(예: catch up policy, 부동산 유동성 제고, 고연령거치연금(ALDA) 등), 중산층 이하에 대한 공·사적 연금

연계강화(예: 공적연금 가입전제로 개인연금 보조금 지급 및 세제지원 등)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노후소득보장은 은퇴 전에 충분한 가입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노후설계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고, 고령기에는 노후생활안전을 보장하는 돌봄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결론 고령층 대상 보험산업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는 이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개선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가 고령화 리스크에 대응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사보험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환경적 요소 개선과 동시에 고령특화 상품 적극적 공급 및 현물 및 부가서비스 공급이 추진된다면 고령층 대상 보험산업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을 위한 환경 변화

최창희(연구위원) · 정인영(연구원) | 보고서

42

연구배경

대형 안전사고 발생으로 배상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소송제도가 발달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시장 침투도¹⁾는 각각 0.55%와 0.41%이고 일본의 배상책임보험 시장 침투도는 0.1%인데 반해 한국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침투도는 0.0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된 배상책임보험 관련 연구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의료과실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 배상책임보험의 특정 종목에 대해서 수행되었으나 배상책임보험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영업배상책임보험 시장이 성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피보험 이익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내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법으로 가입이 강제화 되어 있는 60여 개 의무보험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나 현재 의무보험은 미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내 배상

책임보험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국내 의무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본고는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를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 이익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기대값과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미국과 한국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먼저 미국 민사소송의 소송비용과 소송비용의 변동성(표준편차)은 한국의 5배 이상이였다. 전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9.3%이고 미국이 17.5%이다. 1인당 발생하는 손해배상 소송 건수의 기대값은 한국이 0.0022이고 미국이 0.0044로 미국의 발생 건수가 한국의 두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1인당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비용이 만 원 수준인데 반해 미국의 1인당 손해배상 기대값은 \$35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1인당 손해배상액의 표준편차가 44만 원으로 낮는데 비해 미국의 표준편차는 \$44,313로 한국에 비하여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수치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미국과 한국의 보험을 통한 리스크 전가 수준은 각각 70.55%와 70.58%로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 GDP 대비 배상책임 보험료.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다수의 불합리한 점을 갖고 있다. 낮은 수준의 대인사고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제약을 가할 뿐 아니라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성장을 저해하는 환경적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 의무보험 관리체계상의 문제점들도 배상책임보험 시장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적 요소들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한국의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경제주체에게 부과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외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고는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외국과 비교하였다. 한국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손해액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손해(위자료)로 손해 삼분설을 취하고 있다. 적극적 손해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이고 소극적 손해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지 못하게 된 미래 소득에 대한 손해이다. 먼저 적극적 손해는 손실된 사물이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물 손실 대한 실손보상이므로 이에 대한 국내외 산정 방법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소극적손해와 위자료 산정 방법은 한국의 기준이 외국의 것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주부, 미취학아동, 학생)의 소득 기준을 일용노임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1960년대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통계 값이 없던 시절에 정해진 기준으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기준이고 전보적 손해배상을 표방하고 있는 국내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인 5%를 할인율로 사용하는 것과 외국에 비하여 짧은 가동연령 기간이나 가동연령 기간에서 남녀 간 차별 등 일실회의 산정상에 다양한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의 위자료 산정 방법은 한국과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 비하여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되는 경직된 산정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처한 환경상의 두 번째 문제점은 허술한 의무보험 관리체계이다. 현재 국내는 60여 개의 의무보험이 법규로 정해져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이 배상책임보험이다. 또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과반수가 의무보험일 만큼 의무보험이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다수의 국내 의무보험이 가입 대상자 관리 시스템 미비, 일관성 없고 낮은 최저 보상 한도, 미가입에 대한 처벌 기준 부재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 대상자에게 피해를 입을 경우 최소한의 손해도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결론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낮은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의무보험 관리체계상의 문제점들이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인사고 손해배상 기준의 합리화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 2차적으로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의 합리화는 안전관리 비용의 증가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 등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국내의 실정과 대인사고 손해액 기준 변화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60여개나 되는 의무보험이 도입된 이유는 사업상 제3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거나 대형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업자들에게 가입을 강제화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의무보험 관리체계의 문제점은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보험 관리 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정봉은(연구위원) · 이선주(연구원) | 보고서

45

연구배경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이 9.58%로 치매환자 수는 61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치매와 정상의 중간단계로 치매 직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는 유병률이 28%로 65세 이상 노인 중 1/4인 약 178만 명에 달하며 경도인지장애자의 10~15%가 매년 치매로 전환되므로 치매자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59%에 달하는 경증치매자들은 대부분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경증치매는 장기요양보험의 신체기능 중심 평가구조상 등급인정을 받지 못하여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가족에 의해 수발되거나 고 비용을 부담하면서 요양병원에 장기입원되어 있는 실정이다. 가족수발도 주수발자가 없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수발 중에 배회로 인한 실종, 학대나 치매살인 등 사회적 부작용도 빈발하고 있다. 경증치매는 민영보험에서도 보장하지 않고 있고, 정부·지자체가 실시하는 지역사회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사업에서도 저소득층에 국한하여 최소한의 돌봄서비스만 지원하고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보장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인지상태가 건강한 때에 스스로 자가준비하여 치매치료 및 요양이 가능하도록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치매보장 선진국인 일본은 최종증까지 국가가 개호보험에 의해 보장하고 있다. 경증치매자들이 국가개호보험의 지원 아래 하루종일 주간보호서비스센터에서 인지훈련과 돌봄서비스를 받고 방문개호원에 의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말 단기입소, 복지용구대여서비스 등 재가서비스를 혼합적으로 이용하여 요양함으로써 경증기 치매악화를 방지하고 부양가족은 수발 스트레스가 경감되고 평소대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개호보험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액 평균 소요비용은 약 6만 9천円이나, 이 비용은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으로 충당되는 수준이다. 국내 치매노인의 요양욕구와 비용을 설문조사와 FGI 등으로 조사한 결과, 방문요양은 주 1~4회 이용하고, 주간보호는 주 3~5일 이용하며 기타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을 주1회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월 154~165만 원이 소요되고 치매경증기(3년) 동안 총 4800~5200만 원이, 중증기(9년)에는 6,500만 원이 소요되며 치매전기간에는 1억 2천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치매발병시 본인의 재산이 치매요양을 위해 쓰이지 않고 방임될 개연성이 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에서는 치매자의 재산을 횡령·유용하는 등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후견제도지원신탁’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신탁은 치매자의 신상보호 지

치매신탁이 도입되면 보장사각지대에 있는 경증치매자도 자가 준비를 통해 요양서비스를 받아 치매증상악화를 방지·지연시키고 경증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원 보다 재산의 유지·관리·보호가 주목적이어서 피후견인 가족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4개의 신탁은행만 In-bound 방식으로 판매하였고 일본 국민들이 복지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주는 시혜 조치로 인식하는 등의 이유 때문에 보급이 저조하다. 동 신탁은 이용대상이 중증치매자나 장애인이어서 인지상태가 건강한 경도인지장애자는 이용할 수 없고, 가정재판소 주도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탁설정부터 계약변경, 중도인출, 해지, 용처보고 등 모두 친족·제3자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감독하에 가정재판소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이어서 경직된 시스템이다.

치매신탁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은 아직 인지상태가 건강한 경도인지장애자나 일반인이다. 이들이 임의후견인을 공증·선임하고 경증치매기 또는 치매전기간에 소요될 요양비용을 신탁에 위탁하는 치매신탁이 도입된다면 치매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자나 경도인지장애자들이 요양자금을 자가준비할 수 있다. 사적계약인 임의후견인을 활용하게 되면 치매발병시 후견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에 임의후견인의 업무가 개시되어 법원과 감독인 및 임의후견인의 유기적 체제가 작동하여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치매신탁의 목적은 요양자금 교부 등 신상보호에 있으며, 신탁형식은 자익신탁이고 신탁기간은 4~11년이 적절하며, 중도해약은 임의후견감

독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보험사의 치매신탁 활성화를 위해서는 Out-bound 권유가 관건이므로 신탁권유대행인(설계사)에 대한 과도한 판매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치매신탁 권유방식은 단순 권유판매보다는 임의후견인활용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더 나아가 임의후견인 구축지원 컨설팅 및 조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래 치매발병에 대비하여 친족 외에 법무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으로 구성된 공동임의후견인을 구축하여 신상보호지원 체제를 갖추어 놓기 위해서는 치매신탁 설정시 충분한 상담·컨설팅이 필요하다. 치매신탁은 치매보험상품과 연계마케팅을 구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치매신탁 시장은 경도인지장애자 중에서 중고소득층인 자가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경증기 동안 33조 원, 경도인지장애자의 절반이 가입시 43조 원으로 예상되며 치매전기간 동안 최대 99조원으로 전망되었다.

결론 치매신탁이 도입되면 보장사각지대에 있는 경증치매자도 자가 준비를 통해 요양서비스를 받아 치매증상악화를 방지·지연시키고 경증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는 요양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치매신탁과 치매보험과의 시너지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hapter

4

고령화시대 보험산업 역할 확대

-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
-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 건강보험 협력 방안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원석(연구위원) · 김미화(연구원) | 보고서

48

연구배경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된 일자리로 부터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이고 평균수명은 81.3세로 퇴직후 28.3년을 은퇴기로 보내야 한다. 약 30여 년에 이르는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노후에 대비한 재무적 준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OECD 기준 노인빈곤율은 48%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65세 이상 노인이 일하는 비율은 30.1%, OECD 국가중 2위 수준으로 매우 높다. 이는 대다수의 노인들이 빈곤하며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일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노인층 빈곤율 48.5%는 우리나라의 전체 빈곤율 약 15%보다 매우 높은 수치로 빈곤노인의 상당수가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근로기에는 중위소득 이상을 올리다가 은퇴 이후 근로소득이 끊어지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래의 심각한 노인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가 중위소득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자산관리와 재무설계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무설계는 자산을 처음 축적하는 고객과 이미 어느 정도의 자산을 형성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자산관리는 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한 고객

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자산관리를 재무설계에 포함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재무설계는 현재의 자산을 기초로 하여 미래의 소득에 대한 소비와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인데, 이때 합리적인 투자와 소비를 위해서는 많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고객이 그 모든 과정을 스스로 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자산관리 서비스의 목표는 고객의 소비수준이 전 생애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Consumption Smoothing)인데, 이러한 목표의 성취는 근로기에 중산층에서 은퇴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적안전망의 역할과도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노후보장패널 1차와 4차 자료의 50세에서 65세 사이 연령층의 소득수준변화를 분석한 결과 6년 사이 가구 총소득은 약 4,086만 원에서 2,631만 원으로 약 1,455만 원 감소하였고 이중 근로소득의 감소는 1,358만 원에 달하였다.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1차 조사에서 40% 수준이던 빈곤층 비율은 4차 조사에서 60%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1차 조사에서 중위소득층이었던 866가구 중 중위소득층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390가구로 45% 수준인데 반해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구는 458가구로 52.8%에 이르러 연령증가에

자산관리 서비스의 목표는 고객의 소비수준이 전 생애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Consumption Smoothing)인데, 이러한 목표의 성취는 근로기에 중산층에서 은퇴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적안전망의 역할과도 맞아 떨어진다 할 수 있다.

따라 빈곤층으로의 전락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빈곤층으로 전락한 그룹의 소득원을 살펴 본 결과 근로소득의 단절과 그에 대한 대체소득원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되어 근로기에는 중위소득층이었던 사람들이 근로소득이 끊기면서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화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금 일반국민들의 고령화에 대응한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의식 역시 고취되어 본 연구를 위해 실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4 정도가 고령화에 대비해서 소정의 비용을 들여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니즈에 발맞추어 지금까지 거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던 금융권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노후·은퇴설계 서비스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설문조사 결과 노후준비를 위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자산관리를 맡길 금융기관으로 보험사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23%에 머물러 은행을 선택하겠다는 응답 62%의 1/3 수준이다. 해당 금융기관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신뢰도를 꼽아 보험사의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신뢰도 제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보험사의 생애자산관리서비스와 은행의 은퇴설계서비스 분석 결과 예금·증권·보험을 아우르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지급결제

가능으로 인한 급여정보 및 대출기능으로 인한 고객의 자산부채 정보 등 고객 정보에 대한 접근성 모두 은행이 앞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판매 채널 면에서도 은행의 경우 고객이 찾아오야 하는 보험사의 판매형태에 비해 판매 효율성 및 비용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의 비교열위 극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설계사들이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보험사의 신뢰도 제고 및 자산관리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

결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후의 경제적 준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생애주기에 맞춘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니즈는 확대되어 가고 있다. 보험사와 설계사의 역량을 강화한다면 보험회사의 서비스가 국민의 노후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

오승연(연구위원) · 김유미(연구원) | 보고서

50

연구배경

인구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존 고령화의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거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소비자의 보험수요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가 소비자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보험산업 전망에 도움이 되는 기초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시자료인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와 『노동패널』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보험 가입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보험수요와 보험 구매력을 함께 분석한다. 분석의 기본단위는 소득과 소비를 함께하는 가구인데, 가구 유형을 크게 6가지(1인가구, 부부가구, 부부와 자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편모와 자녀가구, 편부와 자녀가구)로 나누어 분석한다.

주요내용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는 소비자의 객관적 위험 보장 수요를 변화시키는데,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고령화는 조기사망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장수리스크와 건강리스크를 증대시킨다. 또한 1인화, 여성화, 고령화로 대변되는 가구구조 변화는 부양가족을 갖는 가구의 비중을 감소시켜 가장의 소득보장 위

험을 감소시킬 것이다. 한편,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는 전통적 가치관 변화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부모 부양책임이 줄어들고 자녀에 대한 상속동기가 감소하게 되면서, 과거 유산으로 남기던 주택자산을 노후소득의 원천으로 활용하려는 유인이 증가할 것이다. 미혼, 만혼 그리고 이혼의 증가는 골드미스를 포함한 여성 가구주를 증가시킬 것이다. 자식을 떠나보낸 빈둥지 가구가 증가하면서 노년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아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소득 계층인 30~50대 인구비중 감소와 소득 양극화 추세는 보험 구매력을 갖는 소비층의 변화를 수반할 것이다. 특히, 연령과 가구 유형별로 보험구매력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보험 상품별 주요 가입층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35~54세, 가구 유형별로는 전통적 가구(부부와 자녀 혹은 3세대 이상 가구)가 모든 상품에서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보험 가입이 가장 낮은 계층은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며 가구유형별로는 1인가구와 부부가구다. 그런데 연령별, 가구유형별 가입률 차이가 가장 큰 보험 상품은 사망보장보험과 저축성보험이었고, 건강 보험은 비교적 고른 가입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이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반면, 사망보장수요는 핵심 가입층의 감소에 따라 부침

인구고령화와 가구구조의 변화는 보험 소비자의 객관적 위험보장 수요, 주관적 보험 수요, 보험가입 여력의 변화를 통해 보험 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량적 분석 결과 2001년과 2012년 사이에 발생한 인구고령화와 가구구조의 변화는 가구 연평균 보험료를 58만 원 정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장 심할 것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 여력을 OECD 가구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빈곤층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유층의 평균 납입 보험료 상승률이 다른 계층에 비해 매우 높았다. 그 결과, 보험 가입금액별 신계약 건수에서 저축성 보험 상품(연금, 변액)과 종신보험에서 저가 보험상품 비중이 감소하고 고가 보험상품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가구유형과 연령이 납입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구 특성 변수로 소득, 순자산, 맞벌이, 자가소유여부 등 경제변수와 가구주 성별, 교육수준, 종사상지위를 통제하였다. 분석결과 1인가구와 부부 가구는 평균적으로 나머지 가구에 비해 각각 21%, 5%정도 납입보험료가 낮고, 부부와 자녀 가구의 경우 7%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과 보험료는 역 U자형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 가운데 소득, 순자산, 성별, 교육, 자영업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납입 보험료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가구의 납입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정량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Di Nardo, Fortin, Lemieux(DFL)의 re-weighting 방법을 이용하여 반사실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2년의

실제 평균 보험료는 254만 원이었고, 2012년에 2001년의 인구 및 가구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보험료는 312만 원이었다. 즉, 2001년과 2012년 사이 일어난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는 납입보험료를 58만 원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Firpo, Fortin, and Lemieux(FFL)의 Detailed decomposition 방법을 이용해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의 각각의 영향을 분리해 계산한 결과, 인구고령화는 보험료 변화의 12%, 가구구조 변화는 6.8%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객관적 위험보장 수요 변화로 연금이나 건강 보험 상품 수요는 증대하는 반면, 사망보장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보험 상품은 주로 전통적 가구의 보험수요에 맞춰져 있는데, 1인가구, 여성가구, 고령가구의 증가에 대응해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한 전통적인 설계사 대면방식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 건강보험 협력 방안

조용운(연구위원) · 김경환(수석연구위원) · 김미화(연구위원) | 보고서

52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GDP 대비 의료비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의료비 보장률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것을 진료비라 하며 진료비는 의료비 증가율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진료비 상승에 대응하는 정책을 내어 놓아야 함과 동시에 지출을 증가시키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진료비 부분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은 진료비 상승에 따라 높은 보험금 지급률을 경험하고 있고, 제도정비 미흡으로 보험금의 부당지급을 감수하고 있다. 이제는 공·사 건강보험이 협력하여 진료비 상승 추세를 억제하고 의료보장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때이다.

본 연구는 먼저 공·사 건강보험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진료비 증가 추세 억제, 공·사 건강보험의 합리적 보장체계 확립 및 소비자권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네 가지 범주로 접근하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프라 정비에 관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

하지 않는 영역은 진료코드와 진료비상세내역서식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국민건강보험은 요양기관 경쟁 촉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손의료보험은 보장 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2017년 완료를 목표로 현재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보험회사의 비표준화로 인한 어려움은 조만간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비표준화 문제를 조사해 보고 표준화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다.

둘째, 의료서비스 공급방법에 관한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상환제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미청구건 발생 등을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자는 수작업으로 보험금 청구건을 처리함에 따라 많은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요양기관이 실손의료보험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망을 경유하여 실손의료보험자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제3자청구제도(요양기관이 진료비를 피보험자에게 청구, 요양기관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실손의료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 대행)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셋째, 보장내용에 관한 것이다. ① 현재 보험회사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대상과 비보장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요청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위탁을 하고 있

공·사가 협력하여 비급여 진료코드 표준화, 공·사 건강보험의 협력적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비급여진료수가기준 마련 등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 진료비와 실손의료보험료 증가 추세를 둔화시키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연구는 피보험자의 불편 해소 및 보험회사 행정 간소화를 위해 보험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위탁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여러 해 동안 정부에 요청해 왔지만 국민건강보험의 협력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② 국민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상한제(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상한액 이하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지만 피보험자의 상한액을 알 수 없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최대 상한액을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본인부담상한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③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신의료기술 등을 사전적으로 요양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 보장 영역 밖,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 - 으로 인정하고 사후적 심사(진료행위의 경우 150일 소요)를 거쳐 국민건강보험 보장대상 여부 - 효과성 미흡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 밖의 의료행위로 판정할 수 있음 - 를 결정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 청구가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 밖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신의료기술 등도 보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본 연구는 신의료기술 등을 분리하여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

한다. 이는 신의료기술 등의 남용과 부당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④ 현재의 의료이용량과 관계없는 국민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률제도는 잦은 의료이용 혹은 과잉수요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영역에 대해서 처음 몇 일 혹은 몇 회는 기존보다 낮은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하고 많이 이용할수록 높은 부담율을 적용하는 차등본인일부부담률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국민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질환자의 추가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적정의료수요를 유도하고 공·사 건강보험의 진료비 증가세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1차요양기관이 하루에 70건 이상의 외래진찰을 하면 국민건강보험이 지급하는 건당 진찰료가 낮아지는 ‘진찰료차등수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1차요양기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차요양기관 이상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추진하고 있지만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의 추진방향에 동의 한다. 입원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공급해야할 2차 이상 요양기관의 외래공급 확대 억제 그리고 1차 요양기관 문지기기능 강화정책과 일관성을 위해 필요하다 고 본다. 그리고 동 제도는 외래규제에

따라 입원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70건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입원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70건을 확대 혹은 동제도의 폐지가 합리적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영역의 진료수가 기준은 하루 의료공급량 및 가격 등은 통제하고 있으나 상해 및 질병당 총액제한이 없다. 이는 입원기간 연장 등 과잉공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총액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이 포괄수가제 도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데 진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의 진료수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없어 이 영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이 부풀어 지는 풍선효과를 정량적으로 보이면서 국민건강보험의 비보장 영역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규제차이에 의한 의료시장의 왜곡을 줄여야 함을 다시 주장한다.

결론

그 동안 공·사 건강보험은 대립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제는 공·사가 협력하여 진료비 증가 추세를 억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전성주(연구위원) · 박선영(연구위원) | 보고서

55

연구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심각한 빈곤을 문제에 직면해 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소득빈곤율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소득빈곤율 비율이 3배 이상으로 OECD 국가 최고 수준이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OECD 평균 노인인구 소득빈곤율이 2007년 21.6%에서 20.4%로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2007년 44.6%에서 2010년 47.2%로 증가하는 등 노인 인구의 빈곤율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품이 바로 주택연금이다.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 중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은 67.8%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79.1%에 달한다. 주택연금은 이러한 고령층의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의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노인인구 소득빈곤율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택연금 시장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들의 주택연금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주택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요내용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주택연금 시장의 대부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적보증을 통해 가입자에 대한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상품이 차지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해당지자체에 신고된 노인 복지주택 소유자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대출한도는 5억 원, 수시인출금 설정 한도는 대출 한도의 50%이다. 현재 주택연금 상품은 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이 있으며 월지급금 지급유형에 따라 정액형, 12개월마다 3%씩 증가(감소)하는 정률증가(감소)형, 전후후박형 등이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금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을 보장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에 대해 총연금지급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초 연금지급일에 주택가격의 2%를 초기보증료로 부과하고 이후 매월 보증잔액에 대해 연리 0.5%에 해당하는 연보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적보증 주택연금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매년 평균 약 5,000여 건의 신규 가입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말 현재 누적 가입건수 18,832건, 보증공급액 24조 9,614억 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연금 시장의 문제점은 빠르게 성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주택연금 활성화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주택가격 제한 완화, 초기보증료를 낮추거나 다른 옵션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주택연금 상품의 개발, 그리고 대출금리 마진의 현실화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연금 시장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장하고 있는 공적보증 주택연금 시장으로 인해 보증공급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금융 공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공적 보증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으며 대출금리가 3개월 CD금리+마진금리 1.1%로 고정되어 있어 취급 금융기관의 판매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택연금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

1989년 공적보증 HECM 상품 도입으로 주택연금 제도를 시작한 미국은 전체 역모기지 시장의 90%가 공적보증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초기보증료로 주택평가액의 2%를 부과하는 HECM Standard 외에 초기보증료를 0.01%로 크게 낮춘 HECM Saver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낮은 대출비용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 HECM 제도를 벤치마크 모델로 하여 2011년 공적보증형태로 주택연금 제도를 시작한 홍콩의 경우 주택가격이나 보유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대신 주택가격 인정한도를 최대 HK 1,500만 달러로 정하고, 동시에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정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민간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주택연금 시장을 개발한 영국은 1965년부터 주택지분 유동화 상품(Equity Release Product)을 출시해 왔다. 영국의 주택연금 상품은 차입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연금을 받는 평생주택담보대출

(Lifetime Mortgage)과 가입시 차입자가 일부 지분 혹은 주택 전체를 자산관리회사(Reversion Company)에 매각하는 한편 평생 거주권을 보장받는 주택매각방식(Home Reversion Plan)이 대표적이다. 특히, 영국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주축이 되어 주택연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잔고계좌 설정과 상속보증 옵션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결론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주택연금 활성화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가입자의 주택가격 제한 완화, 초기보증료를 낮추거나 다른 옵션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주택연금 상품의 개발, 그리고 대출금리 마진의 현실화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연금 시장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Chapter

5

소비자 보호와 신뢰도 제고

- 보험산업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
-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보험민원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와 채널 연구

보험산업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

이태열(선임연구위원) · 황진태(연구위원) · 이선주(연구위원) | 보고서

58

연구배경

보험산업의 경우 소비자에 대한 신뢰확보가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상품, push-marketing, 불충분한 설명,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금 등의 이유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그 결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많은 검토와 연구가 있어 왔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보험산업의 본질을 도의시한 채 보험산업의 무조건적 노력을 요구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과거 선행연구의 시각에서 벗어나 보험산업의 본질과 관련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왜 개선되지 않는지, 개선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제시하려 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보험산업의 신뢰도 문제를 각각 보험산업의 고유한 요인과 경영, 규제 등 내생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원인 분석을 하고, 효과적 신뢰제고를 위한 공공규제 강화 및 자율규제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보험산업의 낮은 신뢰도는 보험계약의 내용이 복잡하고 push-marketing이 불가피한 보험산업의 고유 성격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GFK Verein이 2014년 25개국을 대상으로 한 32개 직업군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설계사 직업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한국·

독일·네덜란드의 보험설계사 직업에 대한 신뢰도 순위는 32개 직업 중 31위, 캐나다·호주는 30위, 영국·스위스는 29위, 미국·일본은 28위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와 상관없이 보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갖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대상 25개국 대부분에서 push-marketing 관련 직업(보험설계사, 광고마케터, TV호스트, 소매업자)과 권력 관련 직업(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 경찰관, 공무원)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World Economic Forum과 IMD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소비자 중시 정도에 비해 기업의 윤리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여건이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실 기업의 소비자 중시 정도와 기업의 윤리성에 대한 평가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윤리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낮은 것은 특이할 만한 일이다 하겠다. 정리하면 보험산업 신뢰도 결정의 핵심변수인 정직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기반이 보험뿐 아니라 전체 기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약한 사회적 신뢰기반에다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노력 부족과 하향식 규제방식이 보험산업의 신뢰 문제를 가중시켰다고 할 수 있

보험산업의 신뢰문제에 있어 보험회사들이 영업 중심 경쟁의 관행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정책 당국이 나서지 않으면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 시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과거 보험산업이 저축기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영업력 외에는 경쟁력의 차별화가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여 있었던 탓도 있다. 정부정책의 경우 선단행정식 소비자보호 정책으로 시장의 자율성과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다. 일례로 보험회사들이 영업 중심 경쟁의 관행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정책 당국이 나서지 않으면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과거 보험산업이 저축기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영업력 외에는 경쟁력의 차별화가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여 있었던 탓도 있다. 또한, 정부정책의 경우 설명의무 강화, 적합성 원칙 도입, 판매수수료 체제 개선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선단행정식 소비자보호 정책으로 시장의 자율성과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목적으로 제판 분리, 비전속 채널의 활성화 등 일련의 채널 다양화 정책이 실시되었으나, 그 결과 스스로 영세채널이 양산되는 등 규제 사각지대가 확대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규제의 구체화와 자율규제의 보완적 기능 활성화를 제안한다. 그리고 공공규제 구체화의 일환으로 설명의무 강화를 제안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보험계약 체결단계에 대한 설명의무를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보험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영업 관련 자료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세 독립채널 확대에 따른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향후 구축 예정인 모

집이력시스템상의 위촉기준과 판매채널의 배상자력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장자율의 자정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의 경우 복잡한 현장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 기능의 경우 감독당국의 위임에 의존하여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규제업무에 대한 지배구조 개방, 문서주의에 의한 투명화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결론 이러한 공공규제 구체화와 자율규제의 보완적 기능 활성화를 통해 미진하나마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으나, 신뢰라는 것이 장기간 동안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만큼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변혜원(연구위원) · 이해량(연구위원) | 보고서

60

연구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서 소비자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 제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과거에 비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이동하는 경향과 금융상품 복잡성 심화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올바른 금융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금융역량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역량이란 소비자가 금융지식과 함께 바람직한 재무 결정을 하기 위한 수단과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태도나 행동 변화까지 염두에 둔 개념이다.

금융역량 부족은 소비자 후생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결국 금융 및 사회적 소외, 정보 비대칭성 심화, 시장참여자 간 신뢰 저하, 높은 사회안전망 비용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반대로 소비자 금융역량은 금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소비자들 자신이 자신의 혜택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그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성장과 후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내용

금융역량과 소비자의 재무행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금융이해력이 은퇴계획, 저축, 부의 축적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금융이해력과 소비자의 투자행태 간의 관계를 연구한

실증분석들은 금융이해력이 높을수록 주식시장에 참여 할 확률이 높아지거나, 수수료가 낮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금융이해력이 보험 관련 재무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인 연구들도 존재한다. Cole et al.(2013)은 금융이해력이 높은 인구가 사는 지역에서 강수보험(Rainfall Insurance)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중국 농경지역에서 날씨보험에 대한 수요의 주요 제약은 금융교육 부족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동 연구는 일부 소비자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큰 양의 확산효과를 가져왔으며, 동 확산효과는 사회연결망을 통한 보험지식 확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었다. Song(2012)은 중국 농촌가계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 복리개념을 배운 농부들은 연금 기여를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금융교육의 효과나 실험을 통한 소비자 재무행태 변화에 대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자의 현황을 바탕으로 기존 사례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연구는 먼저 국내 소비자의 금융역량 현황을 점검하고 보험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개념은 무엇인지 살펴 보았다. 금융역량 측정에 가장 자주 사용된 대표적인 질문은 복리, 실질수익률, 위험분산과

일반교육이나 웹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위험에 대한 인식 및 평가능력, 위험보장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별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나 판매자의 설명 개선을 통하여 보험소비자 금융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는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통해 소비자후생을 높이고, 보험회사도 장기적인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된 질문이다. 이에 반해 보험이해력은 크게 위험에 대한 인식능력과 보험계약 이해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목적, 계약형태, 개념 등이 다르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보험소비자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개념을 찾고자 연금보험상품과 실손의료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실험을 실시하였다. 위험평가 및 상품선택에서 알아야 할 핵심개념을 제공한 후, 정보에 기초한 결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를 통해 확인하였다. 아울러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어떤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는지 직접 선택하도록 하였다. 실험결과, 핵심개념을 제공하지 않았던 대조군 그룹의 과반수가 자신이 수령하게 될 예상연금수령액이나 가입되어 있는 보장성보험의 보장범위(보장위험, 보장금액)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위험대비 정도의 충분성 판단 기준도 확실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까지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설명서를 위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보험 및 연금 관련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 사례를 검토하였는데, 보험 관련 사례로서는 영국의 Money Advice Service의 보험부문,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Insure U),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산하 Money Smart의 보험부문을 살

펴보았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정부 주도의 웹사이트라는 점과 단순화된 구조 하에서 보험상품의 유형,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금 관련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 사례로서는 스웨덴의 Orange Statement를, 캠페인을 통한 소비자의 참여 유도 사례로서 SFOFE의 Financial Planning Day 사례를 살펴보았다.

결론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학교교육과 정부주도형 웹사이트는 위험의 인식, 또는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의 평가와 보험상품의 위험보장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별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상품공시, 특히 상품설명서를 사용한 보험소비자 금융역량 강화가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금융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유도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혜택과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할 때 소비자후생이 제고될 것이며, 보험회사도 장기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민원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박선영(연구위원) · 권오경(연구위원) | 보고서

62

연구배경

전 세계적으로 판매단계 및 금융 상품의 다변화에 따라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내 보험 산업의 민원건수가 전체 금융 산업 민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보험 산업의 민원감축 문제가 감독당국의 선결과제로 취급되어 왔다.

지금까지 감독당국은 보험민원 감축을 위해 무수한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업계와 감독당국의 민원감축 노력과 그 개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그동안 민원 건수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현행 민원평가 지표 및 프로세스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나아가서 이 같은 문제점 진단을 통해 보험민원 프로세스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표가 있다.

주요내용

먼저 민원평가 등급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민원평가 등급에는 소비자들의 피드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민원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감독정책들은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지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객관지표와 소비자 체감만족도 간의 괴리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둘째, 현행 민원등급 산출 과정을 보면 회사별 영업규모는 반영되고 있지만 판매프로세스나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판매채널 차이 등 상품별 영업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민원등급과 상품 포트폴리오 및 판매채널 판매 비중 등은 상관관계가 낮거나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가중치 적용시 민원의 질적 차이나 내부 민원절차와의 연관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에 제기되는 악성민원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현행 시스템 보다는 자체 합의비율이 높을수록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등급산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민원 프로세스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보험민원 해결절차를 경험한 소비자들은 신속성과 공정성 부분에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보험소비자 230명에게 실제 자신이 경험한 분쟁해결 절차와 그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공정성(48점)과 신속성(46.4점) 영역이 평균 5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둘째, 소비자들이 불만 발생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민원해결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

민원건수 감축에 초점을 맞춘 감독정책을 민원 프로세스의 질적 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원 정보공개제도 개편, 금융회사 내부민원해결 절차를 통한 상향식 민원해결 프로세스 확립, 감독기구로부터 분리된 통합 금융 ombudsman 기구 신설 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민원관련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공감대를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민원 제기 경험이 있는 보험소비자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보험 소비자들의 상당수가 불만 발생시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민원 프로세스상 취약점으로 지적된 통합성, 공정성(투명성), 독립성 측면에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크게 세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각종 민원 데이터를 민원 포털 사이트에 회사 및 상품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교표로 게재해 소비자가 회사의 민원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원스톱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이같은 제도 도입의 취지는 금융 회사들이 민원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의 평가를 확실히 인식하고 시장 자정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Name and Shame”의 원칙이 작동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둘째, 영국, 호주, 일본의 경우처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기 전에 회사 내부 민원 절차를 일정기간 거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업계 자율규제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고 업계 공동협약을 통해 민원해결 절차를 표준화하고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해결 노력의 주도권을 업계로 이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업계 자율규제를 통한 시장 자정 작용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상향

식 민원 해결 및 감축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감독기구에서 분리된 통합 금융 ombudsman 기구를 설립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등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민원을 한곳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제안한다. 통합 금융 ombudsman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사 등 운영의 독립성 뿐 아니라 민원담당 인력의 전문성 또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국 호주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조정인 제도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결론 앞에서 제시된 민원 정보공개제도 개편, 금융회사 내부민원해결 절차를 통한 상향식 민원해결 프로세스 확립, 감독기구로부터 분리된 통합 금융 ombudsman 기구 신설 등의 대안은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제도적인 환경 변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 민원 프로세스의 선진화를 도모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민원관련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공감대를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와 채널 연구

황진태(연구위원) · 권오경(연구위원) · 이성은(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2000년대 들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논의가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으나, 본격적 이슈화는 2012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보험설계사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보험산업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관련 논의에 대한 검토와 고민이 보험산업에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군 중 보험설계사의 사용종속성 수준은 가장 낮은 편으로 평가된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교차모집 및 부업 등 겸업이 가능한 데다 조회 참석도 선택적이다. 한편, 해외에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접근법은 해석론적 방법과 입법론적 방법 등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해석론적 방법의 경우 다수의 해외사례에 해당하며, 대표적 국가로 미국, 일본, 한국이 있다. 이는 개별 사례별로 법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용자 간 입장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이 때 미국의 경우 지휘·감독, 이익·손실 위험 부담 여부, 설비투자 정도, 기간의 계속성을 판

단지표로 하는 보통법 검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비슷하게 사용종속성 관계의 여부를 기본적으로 근로자성 판단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입법론적 방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법을 적용하거나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보호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과 프랑스가 있다. 독일의 경우 1926년 노동법원법상에 유사근로자 제도(특별법)를 최초로 도입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연방휴가법, 단체협약법, 취업자보호법, 노동보호법에도 유사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즉, 독일은 근로자, 자영업자, 유사근로자 형태의 삼분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독일과는 달리 노동법전 제7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일반 근로자와는 별도로 각 대표직군별로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입법론적 접근법에 대한 평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입법론적 방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위장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유사근로자의 법 적용이 노동법원법, 연방휴가법, 단체협상법 등에 국한되어 적용된다는 점, 유사근로자 직군이 이질적

해외에서 사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접근법은 해석론적 방법과 입법론적 방법 등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해석론적 방법의 경우 다수의 해외사례에 해당하며, 대표적 국가로 미국, 일본, 한국이 있다. 이는 개별 사례별로 법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용자 간 입장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입법론적 방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법을 적용하거나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보호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고 다양해 그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입법을 통한 이들 직군에 대한 보호가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현재 노동법전 제7권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군들이 감소하고 있으며, 대신 위장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 보호의 실효성이 낮은 편이라 하겠다.

한편, 보험설계사에 대한 근로자성이 입법을 통해 인정된다고 가정 시 그 파급효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경우 고정비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모집조직 축소, 생산성 하향 평준화 등의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반면, 긍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고능률 설계사 위주의 모집조직 구축으로 인한 전문성 제고, 보험계약 유지율 및 설계사 정착률 개선 등이 그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입장에서는 부정적 효과로 직업선택권 제한 등 실질적 권익 축소, 고정급 비중 증가로 고능률 설계사 수입 감소 등이 있으며, 전업의식 확립과 안정적 소득 유지, 복리후생과 퇴직금, 전문성 향상 등은 긍정적 효과라 하겠다.

또한, 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 시 고려해야 할 채널경영전략으로 고능률 설계사 위주의 영업조직 설계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근무여건의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발생 가능한 채널공백의 대안으로 해촉설계사의 전속 형태 개인대리점화, 비전속 보험대리점 활용 확대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시장점유율 유지 및 확대능력과 채널의 비용 효율성이 있다.

결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도 독일과 프랑스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무리한 입법을 통한 보호방안 마련 시 오히려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입법을 통한 실질적 보호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많은 편으로 이들 직군에 대해 무리한 노동법 적용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반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는 오히려 자율적 합의가 가능한 노동관계 형성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진과정에서도 전체 직군에 대한 일방적인 입법보다는 직종별로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적용 법률도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노동법보다는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등 사회보장법·경제법을 통한 우회적 보호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이들의 보호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Chapter

6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 모집채널,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질병장애 및 장기요양 인구 증가에 관한 연구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성과 제고에 관한 연구
-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률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한기정(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준규(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위탁연구 보고서

68

연구배경 보험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금융산업으로서 보험업법이 그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간 보험업법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이 되어 왔지만, 본격적인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주요국의 보험규제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우리 보험업법 선진화를 위한 토대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외국의 보험규제 법제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이미 수년 이상 경과하여 적시성을 상실하였거나, 일부 국가에 국한한 단편적 연구에 그친 한계가 있어 종합성과 체계성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주요국의 보험규제 법제는 보험산업 발전과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쌍두마차를 목표로 하여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최신 법제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독일, 일본, 미국(뉴욕주), 영국, 호주 등 주요 금융선진국을 연구범위로 하여 보험규제 법제에 대한 분석 및 비교를 시도하였다. 분석 및 비교는 크게 나누어 모집채널, 영업행위 규제, 보험회사 도산 시 보험계약자 보호 3개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주요국의 입법례와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언하였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독일, 일본, 미국, 영국, 호주의 최신 보험규제 관련 법제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를 우리 보험업법상 규제내용과 비교하였다.

분석 및 비교는 크게 나누어 모집채널, 영업행위 규제, 보험회사 도산 시 보험계약자 보호 3개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모집채널의 경우 ① 모집종사자의 종류, ② 모집종사자의 진입규제, ③ 모집종사자의 법적 지위, 권리와 의무로 주제를 나누어 분석했다.

영업행위 규제의 경우 우리 보험업법상 규제 내용을 중심으로 ① 보험모집광고 규제, ② 보험약관 규제, ③ 보험안내자료 규제 및 정보제공 의무, ④ 설명의무, ⑤ 적합성 원칙, ⑥ 중복계약 체결 확인제도, ⑦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 규제, ⑧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기타 금지행위, ⑨ 특별이익 제공 금지, ⑩ 모집위탁 및 수수료 지급 금지, ⑪ 자기계약 금지, ⑫ 철회권(cooling-off)으로 항목을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보험회사 도산 시 보험계약자 보호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대해서 실체법적으로 우선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있다. 이 경우 우선권이 인정되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내용(보험금청구권만 포함되는지 보험료반환청구권도 포함되는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서 우선권이 인정되

보험회사 도산 시 보험계약자 보호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대해서 실체법적으로 우선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있다. 이 경우 우선권이 인정되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내용(보험금청구권만 포함되는지 보험료반환청구권도 포함되는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서 우선권이 인정되는지 등) 및 우선순위, 우선권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의 자산범위 등과 관련하여 각 나라별로 세부적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는지 등) 및 우선순위, 우선권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의 자산범위 등과 관련하여 각 나라별로 세부적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유형을 불문하고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나(독일도 유사), 일본과 미국 뉴욕주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사이에 차이를 두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지지 않을수록, 보험회사 도산 시 보험계약자를 강력히 보호할 사회정책적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보험계약자에게 폭넓은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권리 중 구체적으로 어느 권리에 우선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현재 보험업법 규정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 구체적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보험회사 구조조정 방법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의 임의적 이전 과정(기존 보험회사의 해산을 전제로 함)에서 보험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보험계약자의 기존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법원이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자는 견해도 제기되는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강제적 계약이전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계약의 임의적 이전제도를 설 계한다면, 절차진행의 효율성을 무겁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의 사전심사 제도를 두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결론 최근 보험업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과 비교되면서 개정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주요국의 보험규제 법제에 대해 수년 이상 경과한데가 비교대상이 제한적인 기존 연구와 달리 최신 조사를 바탕으로 개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일본, 미국, 영국, 호주의 최신 보험규제 관련 법제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를 우리 보험업법상 규제내용과 비교하였다. 이 보고서가 향후 보험업법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김경환(수석연구원) · 강민규(변호사) · 이해량(연구원) | 보고서

연구배경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정보의 활용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측면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2014년 1월 8일 검찰 발표 이후 한동안 우리나라를 들쭉이게 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는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한 단계 높여 놓는 강력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인정보도 사회적 자산의 하나로서 활용가치가 존재하는 바,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더불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보험분야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률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인정보법제의 다기화 및 중첩적용에 대한 문제점 및 해소방안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보험정보주체의 보호 강화방안 및 보험산업의 특성 반영 방안을 같이 검토한다.

주요내용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문제점으로 적용법률의 불명확·중첩적용 및 보험산업 특성 미반영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현행 개인정보법제하에서는 보험회사가 동일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거래경로나 수집정보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적용법률이 불명확

하고 중첩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보험산업의 규제법인 보험업법을 제외하더라도, i) 오프라인으로 수집한 보험정보에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되고, ii) 오프라인으로 수집한 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며, iii) 온라인으로 수집한 보험정보에는 신용정보법 외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이에 더하여 iv) 거래경로를 불문하고 신용정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충 적용된다.

한편, 보험거래의 경우는 정보주체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존재하는 등 현실적으로 동의의 수령이 용이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법제상으로는 엄격한 동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보험범죄예방·중복보험 확인 등의 업무에서조차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개인정보 법제 개선방안으로서 ‘적용법률 일원화’와 ‘보험개인정보의 활용근거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적용법률 불명확과 중첩적용 해소를 위해서는 적용법률의 일원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적용법률 일원화를 위해서는 산업별 특성이나 각계 의견의 조율 등이 필요하여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단계별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즉, 1단계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보험산업에 있어 현재 보험개인정보는 활용과 보호의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산업의 발전과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보험정보의 건전한 활용과 프라이버시권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개선이 가능한 방안으로, 정책당국은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적용법규의 혼란으로 인해 불법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다수 법률 간의 상호충복·충돌·누락요소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석 및 적용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개인정보 보호법률 간 체계 재정비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법률 간의 정합성 부족문제의 해결방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간의 중첩규정들을 일반법-특별법의 법률관계의 법리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는 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법률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법이나, 보험산업의 근거법률인 보험업법을 보험개인정보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재정립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상호 간에 보험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공동이용의 경우 ‘제3자 제공’보다 동의규제를 완화하되, 이용목적별로 규제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즉, 보험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사전동의와 사후통지 및 연간 이용내역을 철저히 알려주되, 보험범죄 방지 등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목적일 경우에는 합리

적인 수준에서 동의나 통지의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범죄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사기 적발자 명단, 보험청약 거절자 명단 또는 보험인수 유의자 명단 등의 활용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결론 보험산업에 있어 보험개인정보는 활용과 보호의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보험의 단체성, 대수의 법칙,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하여 보험정보의 활용가능성이 다른 산업보다 크다. 프라이버시권 보호라는 대명제하에 보험정보 이용이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거나 금지된다면, 건전한 보험제도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시킬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손실로 귀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정보가 마케팅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어 보험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보험산업 발전과 보험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보험정보의 건전한 활용과 프라이버시권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수석연구원) · 이정환(선임연구원) | 조사자료집

72

연구배경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제도는 보험회사 스스로 리스크 및 자본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감독제도로서, 특히 정성적 감독을 강조한다. 국제기구 및 주요국들은 지급불능 사례 분석과 금융위기 교훈 등을 토대로 감독당국 및 금융기관에 ORSA 제도를 권고하기 시작하였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및 유럽연합(EU)은 ORSA 제도를 각국 감독당국에 권고하였으며 미국, 호주 등은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도 Basel II에서 ORSA와 유사한 제도인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 체제(ICAAP)” 제도를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보험권 국제기구와 주요국들이 ORSA 제도를 권고하거나 도입 검토를 실시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2013년부터 ORSA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감독당국의 ORSA 제도 도입 추진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와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에 부합하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ORSA 제도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요국들이 검토하고 있는 ORSA 제도의 주요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 감독당국에서 제시한 ORSA 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내용을 살펴본다. 이는 우리나라 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감독 및 경영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내용

ORSA 제도는 리스크 중심 감독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서 리스크 중심 감독을 위한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감독당국 관점의 정량적 감독 한계를 극복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부각된 정성적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ORSA 제도는 리스크 대상 확장, 리스크 간 상관관계·리스크 계수 적용, 평가 기간 확장을 통하여 감독당국의 정량적 감독이 지닌 한계를 보완한다.

IAIS 등 국제기구는 각국의 감독당국에게 ORSA 실행 핵심 요소를 요구(또는 권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상은 포괄적 리스크 평가, 경제적 자본 모형과 지급여력, 미래지향적 지급여력 니즈 평가, 이사회 역할, 관리도구 역할, 내부보고 및 외부보고, 그룹 ORSA 평가, ORSA 실행시기이다. 국제기구 및 국가별 ORSA제도의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IAIS는 지급여력 목적의 ERM 관련 규정인 “보험 핵심원칙 16”과 “기준 및 가이드선”을 2002~2011년 기간에 걸쳐 마련하였고, 진전된 보험감독체계 및 금융시장 발달, 금융위기 교훈, 금융부문평가 제도(FSAP)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ORSA 관련 규정을 수립하였다. “보험핵심원칙 16”과 “기준 및 가이드선”은 ERM 체제, ORSA 관련 총론, 경제적 자본 및 감독목적 요구자본, 계속성 분석으로 구분된다.

ORSA 제도는 보험회사 스스로 리스크 및 자본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감독제도로서, 특히 정성적 감독을 강조한다. IAIS 및 EU는 ORSA 제도를 각국 감독당국에 권고하였으며 미국, 호주 등은 도입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역시 ORSA 도입을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 감독당국에서 제시한 ORSA 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내용을 살펴본다. 이는 우리나라 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감독 및 경영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U는 정성적 감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리스크 관리의 정성적 요인과 적합한 지배구조를 강조하는 ORSA 관련 규정을 수립하였다. EU의 ORSA 가이드라인(안)은 비례성 원칙, 지급여력 준수 평가, 미래지향적 전망, 의사결정(리스크 관리, 자본관리) 활용, 하향식 접근법의 특징을 지닌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리스크 중심 감독을 강조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ORSA 모델법과 ORSA 매뉴얼을 제정하였다. ORSA 모델법은 보험그룹 및 대형 보험회사의 리스크 식별·평가·감시·관리·보고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ORSA 매뉴얼은 ORSA 요약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ERM 체계, 리스크 규모 평가, 보험그룹의 리스크 대비 자본 평가, 보험그룹의 미래지향적 지급여력 평가 등이 포함된다.

호주의 재무건전성 감독체제는 솔벤시 2와 같은 맥락의 리스크 감독 중심 체제로서 내부자본 적정성평가체계(ICAAP) 즉, ORSA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있다. ICAAP 규정은 이사회 역할, 감독당국 감독·평가·시정조치, 목표자본 충족 요구 등 ORSA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한편 ICAAP 실무가이드는 이사회의 역할, 리스크 선호 및 관리, ICAAP 요건, 목표자본 수준 결정, 검증, 연차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감독당국 내부문서인 “보험회사 종합감독지침” 및 “보험검사 매뉴얼”에만 ORSA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 지침과 매뉴얼은 IAIS 및 EU와 달리 감독자 및 평가자 관점에서 기술하였기 때문에 ERM 및 ORSA를 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친다. 따라서 IAIS의 “보험핵심원칙 16” 및 EU의 “ORSA 가이드라인(안)”등과의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정합성 및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해 ORSA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감독당국은 ORSA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2014년 1월 ORSA 가이드라인 시안과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2단계 시범운영이 실시되었으며, 이 기간에 파일럿 테스트와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감독당국은 총칙, 통제구조, 리스크 평가, 지급여력 자체 평가, 감시 및 보고 등으로 이루어진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결론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ORSA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기 위해 다른 보험 감독제도와의 관계 정립,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의사결정 능력 강화,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 관리 능력 강화, 보험회사의 불확실성 대응 능력 강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감독당국은 RAAS 제도와 ORSA 제도 간의 관계 정립을 통해 현행 제도

와 ORSA의 적절한 조화로 보험회사의 보고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의사결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에 의한 리스크 중심의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선진감독당국의 ORSA 제도 도입 취지임을 상기하고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ERM 모범사례와 ORSA 요건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유도하여 ORSA 요건 준수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선진보험그룹처럼 감독 관점, 신용평가 관점, 경영 관점 등을 충족시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감독당국은 불확실성 관리를 능동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들이 새로운 리스크를 능동적으로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장애 및 장기요양 인구 증가에 관한 연구

김석영(연구위원) · 김혜란(연구위원) | 연구용역

75

연구배경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인구에 대한 장기요양 대책이 필요하며 한편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제도 및 장애인 제도에 대한 정부의 복지 정책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분석했다.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198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현 장애인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급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장애인의 개별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새로운 장애판정제도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이러한 논의는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개편하자는 것이고 정부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 관련 복지정책을 확대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장애인구 출현율은 2011년 현재 5.0% 수준이며 현재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변경이 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부는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

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노인인구 중 인정자 비율 증가 없이도 전체 인정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서 지출규모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간병제도는 각 국가별 사회보장원리에 따라 접근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며, 장기간병인정자 범위와 서비스 제공도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장기요양 인정자의 범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더 이상 대상자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현재 개인의 의료적 상태 이외에 환경적인 측면, 개인의 다양한 욕구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것이다. 장애인제도 변경은 매우 오랜 시간을 가지고 논의될 것이며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방차원의 등급을 신설하는 대신 3등급을 2등급으로 나누고 경증치매자 관리를 위한 새로운 등급을 신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새로운 등급들을 보장하는 상품의 개발이 예상되고 치매환자를 위한 등급 신설도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성과 제고에 관한 연구

조영현(연구위원) · 임준환(선임연구위원) · 전성주(연구위원) · 김혜란(연구위원) | 연구용역

76

연구배경 국내 보험산업은 수익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규모면에서 포화상태에 접어들어 기존과 같은 신계약을 통한 보험영업이익 중심의 이익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예상되는 이익감소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영업이익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나 투자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회사는 기존의 자산운용전략을 평가하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자산운용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내용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원칙적으로 안정성, 공익성 및 유동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전략적 자산배분에 변화를 주되 보수적 운용방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배분과 위험조정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미국, 일본의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주식, 대출, 부동산 등 비전통적 자산의 비중이 높고, 해외투자 비중이 낮은 것이 특

징이다. 2000년 이후 한·미·일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은 일본이 가장 낮고, 미국과 한국이 유사한 수준이나 초과수익률로 비교할 경우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초과수익률이 가장 낮은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금리리스크 비중이 가장 높고, 신용·시장 리스크 비중은 가장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은 리스크배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리스크배분과 자산운용성과 간에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산운용성과(샤프비율)가 높은 보험회사일수록 지급여력 대비 금리리스크는 적게 부담하고, 신용·시장리스크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한된 지급여력을 신용·시장리스크에 보다 많이 배분한 보험회사가 더 높은 위험조정 성과를 달성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내 생명보험회사에서 관찰된 자산운용성과와 리스크 배분 간의 관계가 국제적으로도 유사하게 성립하여 신용·시장 리스크 비중이 가장 낮은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가장 낮은 자산운용성과를 달성하였다. 따라서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자산운용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시장리스크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제한된 지급여력하에서 신용·시장리스크 비중 증대가 쉽지 않으므로 우선 금리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 한·미·일 3개국 생명보험회사를 리스크 유형별로 비교한 결과 금리리스크 부문에서 국내 생명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미국과 일본의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금리리스크량이 절대적으로 커, 신용·시장리스크를 부담할 여력이 낮아 자산운용성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감독당국이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감소 및 신용·시장리스크를 적정수준으로 부담토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사할 것을 제안한다.

보험회사는 미국과 일본의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보유채권의 잔존만기가 짧으며, 금리파생상품의 활용이 부진했다. 신용리스크의 경우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미국에 비해 채권의 신용리스크 부담을 매우 적게 하는데, 이는 채권시장 환경 때문이라기보다는 보험회사의 신용위험회피 성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투자는 국내보험회사의 비중이 5% 내외로써 10%를 상회하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으며, 투자국가도 일부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주식리스크 부문에서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미국 생명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식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지 않지만,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유한 비계열사 주식(운용자산의 0.8%)의 배당수익률이 높다. 또한 미국 생명보험회사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일정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다.

수 있도록 위험회피회계 비적용 거래 시 회계상 손익변동성의 증가를 완화시키거나 리스크 평가 시 파생상품 활용을 고려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파생상품의 총 거래한도를 늘리거나 헤지 목적 거래의 한도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운용성과 제고를 위해 신용위험계수 세분화를 통한 회사채 신용리스크 인수 확대 유인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결론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미국과 일본의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금리리스크량이 절대적으로 크고, 이에 따라 신용·시장리스크를 부담할 여력이 낮아 자산운용성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자산운용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금리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신용·시장리스크를 적정수준으로 부담토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사할 것을 제안한다. 보험회사가 금리리스크를 감소시킬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석영(연구위원) · 장동식(수석연구원) · 김경환(수석연구원) · 이정환(선임연구원) | 연구용역

78

연구배경 연금저축의 수수료 체계 개선은 유사한 체계를 지닌 노란우산공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노란우산공제는 해약환급금 지급기준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연금저축 제도 개선 및 손익 실현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보험회사 연금저축보험의 판매방법을 결합한 상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공제금 지급사유(폐업, 사망, 퇴임, 노령) 발생 시에 납입기간에 따라 다른 기준이율을 적용하여 계상한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며 개인사정 및 부금연체로 공제계약을 해약한 경우 부금 납입기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한 일반해약환급금을 해약자에 지급한다.

2011년에 당기순익 11.5억 원을 처음으로 실현한 후 3년 연속 당기순익을 실현하고 있으나 감독당국의 수익률 관리 강화 및 수수료 체계 개선 권고 등은 노란우산공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저축성보험 세제 개편은 노란우산공제의 상품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보유계약

이 아닌 신계약만을 대상으로 손익을 기준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한 후 해약환급금 조정시나리오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결론 해약환급금 조정시나리오들은 손익분석 및 민감도 분석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모두 해약환급금 조정안으로 선택 가능하다. 다만, 해약환급금 지급기준 변경 후에는 사업 영속성을 위해 유지율, 납입부금, 최저보증이율과 해약환급금 가산율의 관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제고방안 연구

임준환(선임연구위원) · 김세중(연구위원) · 황인창(연구위원) · 김혜란(연구위원) | 연구용역

연구배경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기대수명은 사망률 개선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예상보다 긴 기대수명 증가는 노후 준비를 위해 적립된 자금이 실제 노후 지출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하거나 또는 연금제공자인 정부나 기업에게 예상보다 많은 연금지출에 직면할 가능성을 초래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장수리스크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조만간 장수리스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현황과 장수리스크 관리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우려되는 장수리스크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으로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에 대해 제시했다.

주요내용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는 종신연금 계약자의 실제 생존확률이 기대생존확률을 상회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할 위험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비중은 상승 추세에 있어 장수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는 종신연금 부채와 사망을 담보하는 종신보험 부채의 믹싱을 통해 자연적으로 장수리스크에 대응(natural hedge)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어느 정도 자연해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수리스크의 측정방법은 유럽 신감독제도 Solvency II 방식과 미국 RBC 방식이 있다. Solvency II 방식은 내부모형과 표준모형에 사용되는 VaR 방식과 시나리오 방식이며, RBC 방식은 연금보험 리스크 익스포저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계수 방식이다. 보유계약 건수와 가입금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적 사망률 모형인 Lee-Carter 모형을 이용하여 VaR 방식으로 산출한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전체규모는 약 1조 3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연금보험 준비금의 1% 미만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연금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부채적정성평가(LAT)를 실행하여 책임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족분을 추가 적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RBC 제도에서는 종신연금 부채의 리스크, 즉 장수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향후 장수리스크 요구자본 도입 시 현행 RBC 제도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리스크 익스포저인 연금관련 준비금에 위험계수를 곱하는 형태가 바람직해 보인다.

보험회사는 전통적으로 보험위험을 자연해지와 재보험거래기법으로 관리해왔으나 최근 장수리스크는 장수스왑, 장수채권 등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그 위험을 금융시장으로 이전시키고 있다. 장수스왑은 주로 연금사업자가 재보험사 또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현황과 장수리스크 관리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우려되는 장수리스크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으로 정부의 장수채권 발행에 대해 논의하였다. 장수채권의 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연금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은행과 고정현금흐름과 생존지수에 연동하는 변동현금흐름을 교환하는 스왑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2008년 JP Morgan과 영국의 Lucida간의 거래 이후 꾸준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수채권은 특정 집단의 생존율에 따라 이자 지급금이나 원금 반환금이 변화하는 채권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광범위 인구집단의 장수리스크에 대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거래가 가능하다. 장수채권은 공적기관의 주도로 발행을 검토한 사례는 있지만 실제 발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2010년 Swiss Re가 발행에 성공하였다.

우리나라는 장수리스크로 인해 발생될 사회적 비용이 크지만, 현재 장수리스크는 일반적으로 잘 인식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효율적인 연금 시장 형성 및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한 효율적 자본시장 형성을 위해 장수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

장수채권 최초 발행 시 시장형성 지원 차원에서 기존 국고채의 근거법령을 활용한 소규모 발행이 적합해 보이며, 장수채권의 구조는 시장참여자들의 장수리스크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해볼 때 최대한 간단한 형태이어야 한다.

장수채권의 구조는 장수지수(기초지수), 채권유형, 만기, 표시통화, 발행금액 등을 통해 결정된다. 정부가 장수채권을 국채로 발행할 때 특정 연금수급자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기초지수보다는 국가 전체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기초지수가 적합하다. 신뢰성 있는 고연령에 대한 사망률 자료가 부족하여 장수지수를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65세 남자의 생존율 같이 간단한 기초지수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장수채권은 발행목적과 민간 금융회사들의 선호도를 고려해 볼 때 원금연동형 장수채권보다 이자연동형 장수채권 발행이 바람직하다. 채권 만기는 20년에서 30년 사이로 표시통화는 원화로 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최대발행금액은 종신연금 책임준비금 수준인 약 15조 원으로 추정된다.

장수국채는 공모발행 중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장수채권의 잠재적 투자자는 주로 장수리스크의 헤저인 보험회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들의 장수채권 보유 유인은 요구자본 경감 인정 비율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장수채권 도입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장수채권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하다. 장수채권의 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연금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금융·보험 이슈 연구

- 보험금융연구
- CEO Report
- KiRi Weekly 이슈
- KiRi Weekly 포커스

보험금융연구

보험상품의 핵심상품설명서 개선효과 추정: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황진태(연구위원)·변혜원(연구위원)·김해식(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5권 제1호

그간 금융시장에서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가 진행되어 온 한편,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공시규제 강화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양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어도 금융소비자가 이들 정보에 기초하여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최근 금융상품 정보공시(상품공시)와 판매관행에 관한 소비자 중심의 감독원칙이 천명되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품공시와 판매관행 개선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상품설명서에 주목하면서 보험상품의 상품설명서가 소비자 친화적일수록 소비자의 이해도가 개선될 수 있음을 소비자 실험 결과에 대한 회귀분석과 성향점수 매칭분석을 통해 보이고 있다.

소비자 실험은 두 소비자 집단에 보험상품의 핵심설명서를 살펴보게 한 후 해당 상품의 소비자 이해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집단 A에는 현행 핵심설명서를, 집단 B에는 핵심설명서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여기서 핵심설명서 개선안은 저자들이 기존 핵심설명서의 표현방식을 굵은 글씨, 색상, 간결한 문장 등으로 바꾸고 질의응답 형식과 스토리텔링방식으로 내용 전개를 수정한 것이다.

두 소비자 집단의 핵심설명서 이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회귀분석과 더불어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분석이 추가로 시행되었다. 분석 결과, 연구진이 제시한 핵심설명서 개선안이 현행 핵심설명서보다 소비자의 보험상품 이해도를 약 18~23%p 정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핵심설명서 개선안을 직접 구성하고 소비자실험을 통해 개선안의 소비자 상품이해도 제고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존 국내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아울러 비록 소비자 이해도 평가 중 4개 항목에 한정된 분석이지만 회귀분석과 함께 성향점수 매칭법을 통해 집단 간 정당률 차이를 정확하게 추정하려고 시도한 것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RBC를 고려한 보험회사 포트폴리오 최적화

최창희(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5권 제2호

RBC는 보험위험, 금리와 신용 위험,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보험회사 자산에 미치는 영향, 보험회사의 운영상의 위험 등 보험회사가 영업상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악의 상황에서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험금)지급여력을 갖추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국내에는 2009년 도입되었다.

보험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는 다수의 보험계약자(소비자)에게 보험계약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받은 보험료를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창출하고 보험계약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때,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회사에 맡긴 기금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수차례의 금융위기 동안 일부 보험회사들은 사업상의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높은 투자수익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여 제때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²⁾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RBC이다.

RBC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에 대한 강력한 규

제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에 보험회사의 투자에 강한 제약 조건이 되어 지나친 수준의 RBC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을 수치상으로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먼저 RBC제도가 요구하는 조건하에서 보험회사의 평균-분산 효용을 최대화하는 포트폴리오를 찾는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이 문제의 최적해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시된 최적화 방법은 위험회피계수, RBC비율, 보험회사의 자본 규모 등 주요 변수들의 변화가 보험회사의 최적 포트폴리오와 보험회사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활용된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① RBC제도가 요구하는 RBC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수익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② 보험회사가 필요한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험회사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자본 운용의 효율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③ 보험회사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여 수익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2) 보험회사가 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할 경우 금융위기 시 보험금 청구 건수 증가와 자산가치의 감소로 보험회사가 도산할 확률이 커진다.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보험회사 전환 가능성 분석

전용식(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5권 제3호

본 연구는 국내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이 기존의 보험회사를 떠나 다른 자동차보험회사에 가입하고자 하는 전환의향을 분석한다.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의 효용이 보험료, 자동차보험 계약·유지·보상 관련 만족도, 계약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충성도 등 심리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다고 가정하고, 보험회사를 전환할 경우 보험료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을 고려하였다. 전환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현재의 보험료와 신규 보험료간의 차이는 관측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못한 보험료 변수의 추정치는 내생성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 차이는 보험계약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사회적 변수가 추정식에 포함될 경우 보험료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은 줄어들고 보험료 변수의 내생성도 약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생성을 고려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의 보험회사 전환의향을 추정한다. 추정결과 현재 보험료 수준이 낮을수록, 서비스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보험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수록 전환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구·사회적 변수를 포함하여 보험회사 전환의향확률을 추정한 결과 보험료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어진 반면, 거주 지역, 근로소득 여부, 나이 등이 전환의향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누리는 서비스 만족도가 크고 충성도가 높은, 혹은 관측되지 않는 보험회사와의 유대 관계가 강한 계약자들의 경우 새로운 보험회사를 탐색하고 전환하려는 의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에 전환비용(Switching Cost)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동차보험회사의 경쟁 및 마케팅 전략과 자동차보험산업의 시장구조에 상당한 함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이 입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이창우(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5권 제3호

민영의료보험은 불확실한 사고발생에 따른 과중한 의료비지출에 대비하여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재정적 위험을 전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의 특성상 보험가입자의 의료이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특히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이 의료이용량을 증대시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한가지 원인으로 계속 지목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는 민영의료보험이 가입자의 의료이용을 늘려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액이 증가한다는데 근거한다. 따라서 민영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영의료보험을 포함한 모든 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논리는 그 동안 이론적이나 실증적으로 많은 연구를 거쳤다.

최근에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정액형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당형 입원비를 보장하는 정액형 의료보험이 입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하여 정액형 민

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입원일수 이용형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의료패널에서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의 유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분석 결과는 정액형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입원 이후 퇴원을 할 확률이 시점별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정액형 의료보험은 소득보상 혹은 상병수당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복가입 등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의료이용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의 필요성과 정액형 민영의료보험과 의료이용량의 관계를 종합한다면 정액형 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정액형 의료보험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제점 개선은 의미가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방지와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정액형 보험을 개선하자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입원일당별 정액 지급 등은 실질적으로 실손형 보험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의료이용을 증가시킬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CEO Report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석영(연구위원)·김세중(연구위원) | CEO Report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자 연령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평균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현재 남자 77.6세, 여자 84.5세이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대수명 증가뿐만 아니라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항아리형에서 역삼각형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주로 20~50대 연령을 가입 대상으로 상품을 개발해 온 보험회사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신계약에서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30~40대가 주요 연령층이나 비중은 감소추세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상품계약 구성에 영향을 주어 주 고객층인 30~40대의 신계약 건수가 2012년에는 2007년 대비 남녀 각각 25.1%, 23.1%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신계약 건수는 2007년 대비 95.3%, 68.7% 급증하였다.

생명보험 가구가입률은 주 소비층인 30~40대 인구가 감소하는 2000년대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이를 벗어나려면 고령층에 대한 시장개척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고령층 대상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요율의 불안정성이 높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할증이 가능하지 않아 상품개발이 어렵다.

총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로 보험회사는 지속적인 신계약 창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30~40대 종목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2035년까지 일부 종목은 가입률이 상승하는 반면 일부 종목은 가입률이 하락하였다. 반면, 75세 이상 고연령대는 인구 증가에 반해 상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가입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생명보험회사들이 고연령층에 대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의 제도와 상품개발 전략으로는 보험가입자 구조는 30~40대 위주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이는 고연령층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고연령층을 위한 상품개발은 통계부족과 높은 리스크로 어려움이 많아 최근까지 보험회사들이 소극적이었으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고연령층 시장 확대는 필연적이다. 보험회사들은 고연령층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고연령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고연령층을 위한 상품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감독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태열(선임연구위원)·조재린(연구위원)
황진태(연구위원)·송윤아(연구위원) | CEO Report

2014년 7월 정책당국은 보험산업을 포함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른 보험산업의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험 관련 정책을 ① 가격자유화, ② 재무건전성, ③ 소비자 신뢰로 나누어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되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전통적 금융정책 방향의 틀에서 요약하고,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가격자유화와 관련하여 위험률 및 이율 결정에 대한 자유화는 확대되었으나,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여 보완대책도 강구되었다. 이에 따라 안전할증 확대, 예정이율 자율화,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20%까지) 및 표준이율 산출방식을 시장금리 추이가 반영되도록 변경하는 등 자유화가 추진되는 한편, 위험률 차익 정산제도 마련 및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인하 등 보완장치가 강구되었다.

둘째,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국제적 정합성 충족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보험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적응 가능하도록 지급여력 기준과 부채적정성 평가를 점진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위험 경감 수단을 제공하였다. 지급여력 기준을 2016년까지 상향하고, 2018년 IFRS 2단계에 따른 부채시가평가에 대해서는 부채적정성 평가(LAT)를 강화하여 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단순 위험관리 목적의 자산

운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손보사의 비상위험준비금 중 세금충당 목적의 일부금액을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셋째, 보험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당국의 의지가 반영되었으나 판매채널 다변화도 소비자 선택 기회 확대의 명분으로 지속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모집질서 확립 및 건전화를 위해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 도입, GA 관라감독 강화, 시장규율과 제재수준 강화 등을 추진하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불공정 보상행위 방지를 위해 불공정 보상행위의 정의 및 제재를 보험업법에 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하여 보험안내자료 간소화, 보험료 비교지수 개선, 보험상품 이해도 평가 확대와 단체보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판매채널 다변화를 위해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제품 및 서비스 연계보험 활성화 및 온라인 보험수퍼마켓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각 부문별 개혁방안 검토를 통하여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은 가격자유화의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가격자유화의 실효성 있는 시장 정착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의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채널 다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이와 관련한 관리부담의 증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판매채널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금융회사의 부담으로 남아있는 만큼 기존에 논의해왔던 판매자에 대한 1차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임준환(선임연구위원)·황인창(연구위원)
이혜은(연구위원) | CEO Report

올해 7월 24일 최경환 경제팀이 국내 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2012년 발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공공·사업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재정 정책,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성장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베노믹스의 두 축인 대규모 양적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부진에 빠져 있는 일본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재정건전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제시되지 않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아베노믹스가 장기적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고려한 일관적인 거시정책을 유지하고 구체적인 산업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아베노믹스와 최경환 새 경제팀의 정책의 공통 점은 경기부양을 초점으로 한 통화정책 및 재정 정책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개혁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경환 새 경제팀은 증세와 경기부양조치가 혼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거시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와 차

이를 보여준다. 예컨대, 아베노믹스는 향후 10년 이내에 3%의 명목 경제성장률 달성과 2%의 인플레이션 추구를 명시화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목표를 보다 구체화하여 정책의 투명성 및 확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투명성 및 확실성은 가계의 소비심리 및 기업의 투자심리를 안정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저물가가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실질 경제성장률보다는 명목 경제성장률을 정책타겟으로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적인 거시정책과 함께 규제완화와 구조조정 등의 산업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산업구조개혁정책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하다.

KiRi Weekly 이슈

싱가포르의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개편 논의와 시사점

김석영(연구위원)·김해식(연구위원)·조재린(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66호

국내 금융감독당국은 2012년 10월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서 위험기준자본금(RBC: Risk-based Capital, 이하 지급여력제도)의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싱가포르 금융감독당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도 현행 RBC제도를 개편하는 로드맵(RBC2)을 2012년 6월에 공표하였다. 싱가포르의 RBC2는 2013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ystem Assessment Program) 적용에 대비해 EU Solvency II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국내 보험산업 상황과 유사하다.

싱가포르는 RBC제도를 2004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인데 싱가포르의 RBC제도는 보험회사가 노출된 리스크를 보험리스크, 투자리스크, 집중리스크 등으로 나누어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있으며, RBC제도로 측정되지 않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성적 감독으로 규제하고 있다.

한편, MAS는 현행 RBC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는 있지만 글로벌 감독체계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개편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싱가포르의 국제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유지가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

MAS는 감독조치수준의 구분, 요구자본 산출 시 99.5%의 신뢰수준 적용과 리스크 상관관계 불허, 내부모형 도입, 6%의 요구자본비용을 적용한 리스크마진 산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RBC2 Review를 공표하였다. 이에 싱가포르 보험계리사회(Singapore Actuarial Society) 등은 싱가포르 보험시장이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큰 문제없이 견뎌냄으로써 현행 RBC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싱가포르 보험시장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개편(RBC2)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볼 때, MAS가 제시한 2014년 시행이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싱가포르의 RBC제도 개편은 싱가포르 지급여력제도가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을 대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RBC제도 개편작업과 유사하다.

한편, 싱가포르의 RBC제도의 개편 과정을 살펴볼 때,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보다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RBC 개편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와 Fragile 5의 외환위기 가능성

동향분석실 | KiRi Weekly 이슈

제271호

1990년 이후 멕시코, 아르헨티나, 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의 국가들은 취약한 경제 펀더멘털과 고평가된 환율, 그리고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 등의 영향으로 외환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가 시작됨에 따라 터키, 브라질, 남아공, 인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은 국가(Fragile 5)로 평가되고 있다. Fragile 5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과거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와 Fragile 5의 경제 펀더멘털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국가들의 외환위기가 미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한 시기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과거 외환위기 경험국과 Fragile 5 간의 경제 펀더멘털을 비교한 결과 총외채/외환보유액을 제외하고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국가의 금융 시장 불안은 경제 펀더멘털 취약에 근거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Fragile 5 외환위기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과거 외환위기 경험국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과거 외환위기 경험국의 경우 악화되고 있는 경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낮게(통화가치 고평가)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충격에 취약한 상황이었으나, Fragile 5의 경우 환율이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

는 등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과거와 달리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예측가능하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과거 외환위기 경험국과 Fragile 5에 비해 매우 양호한 상태이다. 상대적으로 단기외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수출 기업의 환위험 헤지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시기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 및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대비가 필요하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의 한계와 향후 고려사항

송윤아(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72호

보험사기의 심각성 및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대 국회에 접수된 보험업법안 20개 중 6개가 보험사기와 관련된 법률안이고, 보험사기죄와 보험사기 예비·음모죄를 신설한 형법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과 사기적 보험계약의 무효화와 사기성 클레임에 대한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하는 정부제안상법안(2014. 2. 20 대안반영 폐기)이 국회에 접수되었다. 그러나 상기 일련의 입법노력은 보험

사기 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 사후적 조치에 집중되어 있고, 보험사기 사전예방 및 보험회사의 책임과 무리한 보험사기 조사 및 지급 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배제되었다.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기를 중죄로 처벌하는 반면, 잠재적인 보험사기 위협으로부터 피보험자를 보호할 책임을 보험회사에 부과하고 사기조사 및 지급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불공정보상행위를 법률로서 정의·금지하였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률안들이 국민적 합의를 얻고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 사전예방과 보험회사의 책임, 그리고 무리한 조사로 인한 소비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입법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먼저, 보험사기에 취약한 보험계약 성립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안의 법제화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둘째, 인수심사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에 대한 평가 기준·절차·적용을 엄격히 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보험사기를 이유로 소비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제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금지 및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

보험계약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행시 영향

이기형(선임연구위원)·정인영(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273호

법무부가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한 보험계약법 개정안이 2014년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사위가 2012년에 의원발의 형태로 발의된 4번의 개정안과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하여 마련한 법률안으로 1991년 12월 상법 보험편 개정 이후 23년 만에 이루어진 개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개정사항은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 명시 및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등이다. 보험환경 변화 반영을 위한 개정사항은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신설, 보증보험·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다. 끝으로 장애인과 유족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일부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다수 수익자 존재시 생명보험회사의 책임범위 명확화, 피보험자의 생계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렇게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상품 개발, 판매방식, 언더라이팅을 비롯한 계약관리,

손해사정과 보험금 지급 등 보험경영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즉, 보험회사는 신규 보험 상품 개발시 변경된 계약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용성이 확대됨에 따라 역선택을 방지하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제고를 위한 언더라이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판매채널의 경우 변경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이행 및 새로 신설된 권한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관련 매뉴얼 변경이 필요하다.

책임준비금 시가평가 도입과 보험회사의 선제적 대응

김해식(연구위원)·조재린(연구위원)·김혜란(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77호

국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관한 평가기준은 일반회계와 지급여력평가 모두에서 수년 내에 국제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채택한 우리나라로서는 현재 논의 중인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 4 phase 2 ED)이 확정될 경우 빠르면 2018년부터 개정안이 담고 있는 보험부채 시가(時價)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보험감독에 대한 국제기준 준수 요구도 강화되고 있어 지급여력평가에서도 보험부채 시가평가 적용이 불가피하다. 2011년 전면 개정된 국제보험감독원칙(ICP: Insurance Core

Principles)은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 원칙을 담고 있고, 각국 금융시장에 대한 IMF의 금융시장안정성평가는 각국 금융감독이 ICP와 같은 국제감독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여력평가에도 보험부채 시가평가 요구가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IFRS와 ICP가 담고 있는 보험부채 시가평가는 기본적으로 상품개발 당시의 가정이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 시점 또는 지급여력평가 시점의 가정을 반영해야 하는 시가(時價)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위험률 등 계리적 가정과 시장금리와 같은 경제적 가정을 갱신하여 적용하게 된다. 결국 계리적 가정이나 경제적 가정의 변동이 크다면, 보험부채의 시가도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계약기간이 장기인 보험상품일수록 가정의 변화가 클 수 있기에 가정 변경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책임준비금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되는 할인율 수준에 따라서 책임준비금의 가치가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만기가 자산의 만기보다 길어 금리 하락 시 자산보다 부채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나고 저금리 환경에서는 지금보다 낮은 시장금리가 할인율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보험부채 시가평가가 자본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책임준비금 시가평가는 국내 보험산업에 익숙한 평가방법이 아니며, 시가평가와 관련하여 IFRS나 ICP 모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책임준비금의 시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보험회사의 운영위험 급증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산업 현장의 계량영향평가를 통해서 계리 및 회계 인력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회계 및 계리기준 등 시장 인프라로 구축하여 새로운 제도 시행에서 우려되는 운영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규제 대응 차원이 아니라 전사적 위험관리와 자본관리 차원에서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에 대한 보험회사의 능동적 대응이 절실한 이유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현황과 시사점

박선영(연구위원)·전용식(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78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는 은행들의 신용공급 여력이 크게 위축되면서 보험회사와 연기금의 자금중개기능 확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기업들의 자금조달에서 은행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보험회사의 신용공급 및 대출 확대를 장려하고 있고 보험회사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보험업권의 자금중개기능 확대는 보험업권의 실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신용위험을 확대시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기업대출을 줄이고 해외채권 및 해외유가증권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기업대출에 수반되는 신용평가와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고 신용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회수기간이 길다는 점이 일본 보험회사들이 기업대출을 줄여나간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대율 규제로 은행권의 기업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보험업권의 기업대출 증가세는 2008년 이후 연평균 12% 수준으로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1.7%에 비해 상당히 높다.

2013년 보험권의 민간 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은 41조 원이며 2008년 23조 원 수준에 비해 18조 원이 증가하였다.

손해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 대비 기업대출 비중이 2008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반해 생명보험회사들의 기업대출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산업의 기업대출 확대는 보험회사의 자금중개기능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기업대출, 인프라투자, 부동산 투자 등은 실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와 더불어 새로운 자산운용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기업의 부채수준이 높고 기업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어 보험업권의 기업대출 확대는 관련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부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유럽과는 달리 신용위험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수 있어 우리나라 보험업권의 자금중개기능 역할 제고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생활습관과 시사점

조용운(연구위원)·오승연(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80호

우리나라는 만성질환 유병률과 의료비 지출의 급속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흡연, 신체활동 부족, 불량한 식습관, 음주와 같은 건강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한 정책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건강생활습관 개선은 만성질환 유병률을 낮추어 의료비 절감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영의료보험은 가입 시에 계약적부심사를 통해 높은 건강위험도를 보유한 사람을 가입시키지 않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에게는 건강생활서비스의 건강증진 효과 혹은 의료비 증가추세 둔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단체계약의 경우는 계약적부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없으나, 개인계약의 경우는 제기될 수 있는 주장이다.

제 6차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동일 소득수준에서 민영의료보험 비가입자보다는 가입자가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건강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적부심사 효과와 가입자의 위험회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도 건강생활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약적부심사를 한 후 가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체활

동을 하지 않는 비율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비가입자보다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위험회피적인 성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건강생활서비스 활성화 정책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가 성공 여부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수요에 대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FY2013 생명보험 동향 및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81호

FY201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등 일반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로 인해 8.0% 감소하였으나 제도 개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2 세제개편에 따른 즉시연금 수입보험료 급증 이후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32.0% 감소하였으며,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세제개편 기저효과로 9.0% 감소하였다.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2 0.3% 감소한데 이어 FY2013에도 0.9% 감소하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반면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회사들이 암보험, 질병보험 신상품 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3.8%의 양호한 증가를 기록하였고,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27.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몇 가지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만한 신성장 동력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왔던 일반저축성보험 수요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며, 변액보험 또한 주가지수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수요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망보험의 성장성 회복이 나타나고 있으나 암보험, 질병보험의 경우 과거 생명보험회사들이 손실을 경험한 바 있어 고성장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신규시장인 고령시장의 경우 경험 데이터 부족과 높은 위험률 등으로 시장확대가 여의치 않다.

한편 향후 계획되어 있는 부채적정성평가(LAT) 개선, RBC제도 강화,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은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심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도 직면해 있으며, 보험상품의 주 소비층인 30~40대 인구 감소와 고령층 증가에 따른 리스크 증가도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 부각되지 않는 점은 성장성과 수익성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들은 신성장 동력 발굴에 힘쓰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한 보험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장수위험 및 건강위험에 대한 관심 증가와 고령층의 보험상품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분한 위험률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소셜 미디어의 확산, 스마트폰·태블릿PC 활용 증가 등 정보통신

(IT)기술 변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소비자의 신뢰도 약화는 보험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여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생명보험회사들도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보험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이미지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FY2013 손해보험산업 동향과 시사점

동향분석실 | KiRi Weekly 이슈

제282호

명목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며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던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세가 FY2013 들어 하락하였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장기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 등의 고성장세에 힘입어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고성장을 견인하였던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면서 FY2013에는 명목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과거와 같은 높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FY2013 종목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되고 다른 대부분 종목들도 모두 저성장을 나타냈으며,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하였다.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세제개편안에 대한 기저효과로 장기 저축성보험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여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5.6%로 둔화되었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할

인을 제공하는 상품 증가로 0.4%의 저성장을 기록하였다.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경기둔화로 화재, 해상, 보증보험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특종보험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어 전체 1.5% 증가에 그쳤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의 400만 원 상향조정 효과가 약화되어 3.1% 증가에 그쳤으나, 퇴직연금은 실적 개선에 힘입어 9.8% 증가하였다.

FY2013 손해보험산업 원수보험료 및 당기순이익과 관련한 특징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최근 몇 년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고성장을 견인하였던 장기손해보험과 개인연금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다른 종목들도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자동차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증가세 둔화와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 등으로 부진한 당기순이익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들의 내실을 장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 발굴 노력과 함께 손해보험회사들이 처하고 있는 최근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위험 대비 경영체제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동차보험 운영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영업 부문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 흑자가 민영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

이창우(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84호

2013년 국민건강보험의 흑자는 3조 6,446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3년간 계속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은 8조 2,2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건강보험 흑자 원인에 대한 분석결과, 최근의 국민건강보험 흑자는 의료량의 변화보다는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급여비 관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 지출은 건당 급여비와 급여건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급여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건당 급여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10년간 의료비지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와 비급여가 양의 상관관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시장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과 함께 지급보험금이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흑자와 흑자분을 통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을 확대시킬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국민건강보험의 건당 급여비 통제를 통한 흑자는 비급여부문으로 비용전가를 유발하여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손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흑자를 통한 보장성 강화정

책은 급여부문과 양의 상관관계로 발전해 온 비
급여 시장을 더욱 확대시켜 민영의료보험의 손
해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과 시사점

강성호(연구위원)·정원석(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85호

2013년 4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는 정년의
무화 조치가 법제화 되었다. 고령화로 인해 퇴
직급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므
로 정년의무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국가적으
로나 개인적으로나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년연장 조치가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와
근로자의 은퇴자산 증가라는 양면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분석대상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결과 도출
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
단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추정 조기퇴직자 비율과 분석
가정을 바탕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주의 퇴
직급여 추가부담을 추정하고 있다.

먼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
하여 분석한 결과, 54~59세 근로자들 중 약 12만
2,000명이 최대 6년에서 최소 1년의 정년연장 해
택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모두에게
정년연장을 적용할 경우, 54~59세 대상자에 소
요되는 추가적 퇴직급여액은 8,534억 원(연간
1,927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정년연장 대
상자 1인당 추가 퇴직급여로 환산하면, 54~59세

대상자 1인에 소요되는 추가적 퇴직급여액은
950만 원(연간 214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 분
석한 결과, 임금감소액을 최종 소득의 70~90%
로 한 경우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할 추정 퇴
직급여액은 5,974억 원~7,681억 원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이에 대해 연령대별로 임금감소율을
고려하게 되면 7,728억 원으로 산출된다.

이를 통해 볼 때, 기업부담 완화 및 고용안정 고
려시 퇴직급여 부담에 대한 추가적 세제혜택 및
정부지원금은 업종별,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제
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임금피크제 도입 시에는 업종별로(생산직,
관리직 등) 다를 수 있는 노동생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임금수준도
낮은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세제혜택이나 정부
지원금이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60세 이상으로의 정년연장의무화 조치는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의 추가적인 마련
이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해할 때, 기
업에 대한 일정 추가 부담은 기업의 사회적 책
임 혹은 사회안전망의 역할 차원에서 이해될 필
요가 있다.

장수리스크 관심 확대와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86호

최근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3년 11월 금융위원회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에서 장수채권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바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고령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와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확대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장수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편이지만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보험의 유지율과 종신연금 전환율이 높지 않으며, 연금부채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장성보험의 비중 또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은 장수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 핵가족화 진전, 경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종신연금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연금부채 비중은 확대가 예상되며 연금계약자의 행태 변화도 장수리스크를 심화시킬 수 있다.

장수리스크 관리방법으로 해외에서는 장수 스왑(longevity swap), 장수채권(longevity bond)과 같

은 장수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장수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상품거래가 전무하기 때문에 적절한 상품 포트폴리오 유지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하여 장수채권 도입 의견이 제기되는 등 장수 파생상품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생명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장수 파생상품이 도입될 경우 사망률 데이터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생존확률 예측 방법, 가격산출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장수지수의 개발,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법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명보험회사들은 장수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장수리스크 측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수리스크 측정을 위하여 확률적 사망률 모형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테스트나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하여 적절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장수 파생상품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명보험회사들이 장수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연헤지(natural hedge)를 위한 적절한 상품 포트폴리오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부 이혼 시 퇴직급여 재산분할제 도입 방안

이상우(수석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287호

대법원은 이혼 시 퇴직금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건을 공개변론재판으로 선정하여 2014년 6월 중에 재판을 개최할 예정이다. 동 대법원의 재판 결과는 향후 퇴직연금 및 특수직역연금과 관련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법원 재판의 쟁점은 부부 일방(재직 중)의 미래에 수령할 퇴직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인데 2심 재판에서는 1990년대의 판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에서 이미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미래에 수령할 퇴직금의 경우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퇴직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 대상 인정 기준을 이혼 당시 퇴직금 금액의 확정성 여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이며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이혼자들은 현재까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종전 대법원 입장은 이혼 시 분할 청구권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금분할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경우와 비교해서 형평성, 동일재

산에 대한 동일한 규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불공정성, 다양한 개선안 모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법원 인식, 퇴직(연)금제도의 근거법과 충돌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상존한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금액의 확정성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선진국 수준의 여성 권리 개선, 공정한 재산분할, 국민의 재산권 보호,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재산분할제 도입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먼저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퇴직급여에 대한 적극적인 재산분할제로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특수직역연금 관련법에서 법적 근거 마련하고 이혼 시 부부 일방이 재직 중인 경우에 대한 향후 퇴직급여 재산분할 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보험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소고

송윤아(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90호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제완화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타산업과 달리 금융산업은 시장참여자간 정보 및 교섭력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담보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재보험은 기업간·국경간·전문적 거래라는 이유로 재보험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적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실제로 규제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 특정 변수가 재보험산업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독당국이 재보험거래에 대해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일례로, 1980년대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연쇄도산과 관련하여, 미국은 재보험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보가 부족하여 (재)보험사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손해보험회사의 연쇄도산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이후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를 대폭 개선한 바 있다.

원보험수익자 보호라는 재보험 감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국경간·기업간 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규제적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보험거래 당사자의 업무보고는 가장 소극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감독수단이라 할 수 있다. 각국에서 재보험을 감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보험회사의 지급

불능위험으로부터 원보험 수익자(개인 및 기업)를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재보험은 계약의 유형 및 복잡성, 변동성, 거래의 지역적 범위, 현금흐름, 수재위험에 대한 정보의 질, 효율체계 측면에서 원보험과 다르고, 이러한 차이는 원보험과 재보험간 상이한 규제적 접근을 요한다. 감독당국 및 시장참여자가 재보험거래당사자의 재무상태는 물론 거래단계별 재보험시장의 규모·구조·행태·성과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거래상대방간 보고내용의 대조를 통한 보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내용의 구체성과 더불어 보고내용의 공개 범위 및 기준, 보고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통제방법 등이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는 지난 3월부터 모든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출재내용을 보고하고 있으나, 재보험거래당사자의 재무상태와 재보험시장의 규모·구조·행태·성과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호주 등 주요 재보험서비스 수요국의 경우 공개원칙 하에 거래상대방별로 재보험거래내용을 상세히 작성·보고할 뿐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재무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업무보고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지급관련 제도개선의 향후 논의방향

송윤아(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94호

2014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법규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보험업법에 보험금 청구·지급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정히 제재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이는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및 보험신뢰 제고 차원에서 제시된 정책으로, 보험회사의 불공정 보상행위를 엄격히 금하는 미국의 사례와 유사하다.

이와 비슷한 시기, 영국에서도 신속·공정한 보험금 지급의무와 동 의무 위반 시 제재를 법규정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영국의 경우, 불공정 보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가 이미 두텁게 형성된 가운데 보험회사의 ‘추가적인 손해’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논의를 시도하였다. 즉, 법률위원회는 2006년부터 8년 동안 보험금 지급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신속·공정한 보험금 지급의무와 위반 시 추가적 손해배상책임 부과를 규정한 보험계약법 초안을 2014년 7월 공개하였다. 회의 참여자의 80% 이상이 상기 안에 찬성하였으나, 소송납용과 보험회사의 무리한 초과비용 발생가능성을 우려한 반대 의견이 있어, 동 이슈는 7월 17일 영국정부가 발의한 보험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금 지급관련 법규의 한계와 주요국의 입법례 및 논의를 검토한 결과, 보험금 지급관련 법

개정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제재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되, 이로 인한 불필요하고 악의적인 민원 및 소송 납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금지 및 제재 대상 불공정 보상행위를 명료하게 정의함으로써 분쟁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험금 지급관련 불만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약정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은 신뢰제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미션이라는 인식하에,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법규정화와 별개로 보험회사의 자체노력이 필요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특징과 검토 방향

이상우(수석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97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외부에 연기금을 설치하여 연기금이 기업의 역할(금융회사 선정 및 급부지급 등)을 대신하게 하는 구조이다. 법적으로 독립된 연기금은 집행기구(이사장, 이사, 감사)와 노·사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기금위원회)를 통해 연기금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참여형 연금제도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복잡한 구조 때문에 현행 계약형제도보다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예상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여에 따

라 더 많은 이해상충과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호주는 퇴직연금제도가 성공한 사례이지만 기금형제도 자체가 성공한 사례로 평가하기 어렵다. 호주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성공(가입률 95%, 적립금 규모 세계 3위 등)한 것은 퇴직연금이 호주(우리나라와 같은 국민연금 부재)에 핵심적인 연금제도이고, 가입 강제화와 소득이 있는 전 국민(파트타임, 자영업)에게 적용을 확대하였으며, 가입자 편의를 위한 디폴트제도 도입과 정부 보조금 또는 강력한 세제혜택 등이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연기금의 부실 금융회사 선정, 금융회사의 연기금 적립금 불법 운용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AIJ운용사의 연기금 대규모 사기사건(2012년)’은 인해 기금형제도에서 수탁자 책임과 수급권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해상충과 대리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기금형제도 도입시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적용 가능한 기업규모를 검토하고 기금위원회 및 이사회, 집행기구(이사, 감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수탁자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소 적립규제, 적기시정 조치, 예금자 보호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등 수급권 보호 장치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연금계리사 및 외부감사가 제3자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검토 필요하다. 셋째, 선진국의 성숙된 금융산업 환

경과 달리 다양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 기금형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행 계약형제도보다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실패사례는 대리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는 일본의 부실한 대응이 결과적으로 일본 기금형제도의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선진국 수준의 수탁자 책임과 수급권 보호 등의 안전장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러한 안전장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추이를 보가며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외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의 시사점

최창희(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98호

사이버 리스크에 의한 전 세계 연간 최대 손해액은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액의 5배 규모이며 전산 시스템과 휴대용 전자기기 보급 확대로 손해액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리스크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정보 유출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천만에서 수억 건의 정보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 유출 사건 수와 유출된 정보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외국의 보험회사들은 사이버 리스크 관련 보험 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사이버 리스크 관련 보험사고는 발생 빈도가 높지 않으나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대재해와 유

사한 형태의 손해를 보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급속한 정보화의 진행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 부분의 시장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사이버 배상책임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의 보험회사들은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을 사이버 리스크 평가·관리 컨설팅,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과 함께 제공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국내의 사이버 배상책임 시장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책임이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의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은 IT와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종목이므로 보험회사들은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사이버 배상책임 보험 언더라이팅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컨설팅 및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T 시스템 관련 전문 지식, 사이버 리스크 관련 손해배상 소송 수행 능력, 사이버 리스크 관리 체계에 관한 이해, 다양한 CLI 담보에 대한 평가 능력 등을 갖추어 필요가 있다.

또한 손해보험회사들은 시장 성장에 대비하여 다양한 담보를 포함한 관련 상품 개발, 외국 회사의 사업모델을 벤치마킹한 사업 영역 확대,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대한 마케팅 활동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 MMF 규제 개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임준환(선임연구위원)·황인창(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99호

2014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국제 규제 권고안에 따라 Money Market Fund(이하 MMF) 규제 개혁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이에 앞서 2012년 10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MMF가 금융위기 전염 경로로 작용하고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하였다고 보고 금융위기 재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MMF 규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미국 MMF 규제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① 펀드의 순자산가치(NAV, Net Asset Value) 평가 방식을 현행의 고정(stable or fixed NAV) 방식에서 변동(floating NAV) 방식으로 전환, ② 금융 스트레스 상황 발생 시 환매 수수료(redemption fee) 부과 및 환매 유예(redemption gate)에 관한 재량권 부여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규제 권고안에 따라 MMF 규제 강화 조치를 2013년 10월에 단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 MMF 규제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 MMF의 가중평균잔존만기(또는 듀레이션) 한도 축소, ② 유동성 자산 비율 직접 규제 등이다.

최근 단행된 미국과 우리나라의 MMF 규제 개혁을 비교해보면, 양국 모두 MMF를 통한 금융위기 전염 방지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미국의 규제 개혁은 대량환매사

태(펀드런) 발생 유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은 대량환매사태가 있어났을 때를 대비한 유동성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MMF의 대량환매사태를 통해 금융위기가 전염되어 결과적으로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MMF 대량환매사태 유인을 완화 또는 제거하는 규제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MMF 대량환매사태 유인이 제한된 범위에서의 장부가격 보장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MMF 순자산가치 평가방식을 고정형에서 변동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복합점포 활성화의 득과 실

전용식(연구위원)·황진태(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300호

2014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판매채널 확대와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계열사 간 출입문 공동이용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계열사 간 복합점포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비이자 수익 제고를 통해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후생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나, 판매채널 관련 정책의 일관성, 금융산업의 경쟁, 그리고 소비자보호와 영업행위 리스크 측면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정책적 측면과 경쟁 측면에서 논란은 은행중심

금융그룹이 설립하는 복합점포에 계열 보험회사의 입점 영업이 허용될 경우에 제기될 수 있다. 계열 보험회사의 복합점포 입점 영업이 허용된다면 계열사 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상품에 대한 방카슈랑스 영업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방카슈랑스 제도는 소비자후생 제고를 목적으로 금융상품의 제판분리를 위한 정책 중 하나였으나,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반대로 제판결합으로 회귀하는 것이므로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은행 중심 금융그룹, 비은행 금융그룹, 중소형 증권·보험회사들 간에 고객 수, 점포 수, 그리고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교차판매(cross-selling)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복합점포 활성화가 금융그룹의 교차판매 확대로 이어질 경우 고객 편의와 금융그룹의 시너지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불완전판매가 늘어날 수 있고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 금융그룹의 교차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인 자문서비스 활성화, 영업점 임직원의 인센티브 제도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영국 금융위원회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따르면 비이자 수익 제고와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전략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경우, 교차판매 확대는 불완전판매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리스크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보험산업의 경우, 25% 방카를 규제 회피 가능성으로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속성 보험계약 및 판매자의 소속, 책임, 권한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 가중 등의

우려도 있다. 금번 금융위원회의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금융산업의 경쟁, 소비자 보호 및 영업행위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소비자에게 윈스탑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금번 복합점포의 긍정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불완전판매가 늘어나고 금융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보상원리에 대한 소고

가승도(수석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301호

자동차보험 보상원리는 크게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책임 원리”, “피보험이익 원리” 및 “실손보상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3가지 운영원리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보상 원리의 중심이 되어 왔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 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송을 선호하는 환경이 조성될수록 피해자가 제기하는 소송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으며, 이는 변호사비용 증가, 지급보험금 증가로 이어져 국민 부담 증가 원인이 될 것이다.

둘째, 과실비율결정이 법원판례 등을 근거로 작성된 과실상계도표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동 방식이 모든 사고 상황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고당사자들은 빈번하게 과실비율에 불

만을 표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과실여부에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차대차 충돌 사고로 과실비율이 100%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기신체사고담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사고당사자의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고가차 운전자와 저가차 운전자의 충돌사고에서 저가차 운전자가 고가차의 수리비가 과도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이는 수시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피해차량의 수리부품을 해당차량의 연식에 부합한 부품이 아닌 신차 부품을 제공하는 것, 대차를 하지 않는 피해차 운전자에게 대차료의 20%를 지급하는 규정과 고가 외제차에 동일차종으로 대차해 주도록 하는 규정은 피보험이익(또는 실손보상)원리 측면에서 검토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보상원리에 따는 현실 적용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은 방향에서 그 해소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행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책임 원리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원리로서 무과실책임원리가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물배상 요율체계를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안전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부품에 대해서는 피해차량의 연식에 해당하는 부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전자가 특약을 구입하는 경우에 신차 부품으로 수리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섯째, 대차료 지급기준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대차하지 않은 경우 대차료의 20%를 지급하는

규정의 효과를 점검한 후 그 제도의 존속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대물배상 대차료의 지급기준 중 동일차종 기준이 자동차보험에 대한 개념이 변화된 현재 시점에도 적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제3보험 상품동향 및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김혜란(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302호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악화됨에 따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보험회사의 고연령 보장 제3보험 시장 진입전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보험산업의 구조가 유사하고 인구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최근 생명보험산업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악화되는 가운데 뚜렷한 신성장 동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빠르게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연계한 신상품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 제3보험 상품은 보장내용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지만 위험률에 대한 안전할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입연령 및 보장기간, 배당유무 등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고연령까지 보장하는 경우 대부분 갱신형으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 시 보험료 상승 부담으로 실제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일본의 제3보험은 다양한 가입연령 및 보장기간으로

고연령층의 가입이 용이하고 고연령에서의 충분한 보장을 제공한다. 현재 일본은 안전할증 등 보험요율 산출과 관련한 감독규제가 거의 없으며, 감독당국은 보험료가 지나치게 낮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감독당국은 2006년 보험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제3보험 분야의 준비금 제도를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 산출시 상당히 보수적인 안전할증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제3보험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감독제도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명보험회사는 고연령층 가입이 가능하고 고연령까지 보장이 가능한 제3보험 상품을 확대함으로써 고령화에 대응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당국은 데이터가 적고 불확실성이 큰 제3보험 시장에서 생명보험회사가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 시 위험률에 대한 안전할증의 최대 한도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들은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고연령층이 가입 가능하고 고연령까지 보장 가능한 건강 및 질병 보험 등 제3보험상품에 대한 수요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3보험 상품 유형인 갱신형 상품보다는 비갱신형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고연령 도달 시에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보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보험회사의 제3보험 상품 확대는 공·사협력을 통한 보험회사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전성주(연구위원)·박선영(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306호

최근 정부는 현행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다주택자로 확대하고 민간 역모기지 상품가입자가 공적보증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교형 주택연금을 출시하는 등 내수보완과 노인인구 소득빈곤을 개선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김재천 신임 주택금융공사장은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인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역모지론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주택연금 시장의 대부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적보증을 통해 가입자에 대한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상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공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각 금융기관과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여 주택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최초 연금지급일에 주택가격의 2%를 초기보증료로 부과하고 이후 매월 보증잔액에 대해 연리 0.5%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2007년에 처음 출시된 공적보증은 2013년 말 현재 누적 가입건수 16,127건, 보증공급액 잔액 22조 278억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향후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공급액 증가로 인해 주택금융공사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불가, 일부 은행들에 집중된 주택연금 공급실적 등은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 공적보증 주택연금 제도의 벤치마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주택연금 상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HECM Standard** 상품 이외에 최대 대출가능금액을 줄이면서 초기보증료를 주택 가격의 0.01%로 크게 낮춘 **HECM Saver** 상품을 출시하여 낮은 대출비용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는 대신 공적보증의 최대 청구가능 한도를 US 62만 5,500달러로 제한함으로써 공적보증에 대한 큰 부담없이 고액의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소비자들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간금융시장에서 일찍부터 주택지분을 유동화 하는 주택지분 유동화 상품(Equity Release Product)이 발달된 영국에서는 주택연금 상품에 다양한 옵션을 연계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다양한 보장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 주택연금도 가입자의 주택가격 제한 완화, 초기보증료를 낮춘 별도의 주택연금 상품 출시, 보험회사와 연계한 다양한 주택연금 상품 개발 등 제도 개선을 꾀하고 대출금리 마진의 현실화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연금 시장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공제사업 현황 및 감독강화 필요

김경환(수석연구원)·박정희(선임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307호

최근 정부는 공제사업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권 신설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제업의 건전한 경영 등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공제의 소관 부처장 등에게 공제운영에 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 부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공제사업에 대한 금융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시도는 최근의 일만이 아니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던 사항이다. 그러나 그간 실제 규제체계의 변화는 크지 않았는데, 이는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 공제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해소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공제사업에 대한 현황과 규제·감독상 문제점 분석을 통해 공제사업 감독강화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찰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제사업은 92개이며, 공제사업을 관리하는 소관부처의 감독 여력이 극히 부족하고, 전문지식도 전무하다는 것이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공제사업의 경우 생·손보간 겸영뿐만 아니라 은행업무와도 겸영하고 있어 보험회사에 비해 리스크 관리에 취약성이 높고 위기 상황 시 리스크 전이가 쉬워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한편, 금융산업은 세계적인 환경변화 추세를 따라 감독에 있어서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보험산업도 보험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보험 기능을 갖는 사업은 그 영위주체에 관계없이 보험감독당국에서 일괄하여 민영 생보사와 동일하게 감독하는 등 감독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 사업허가, 모집활동, 재산운용, 책임준비금 등의 부문에 대한 사전·사후적인 감독이 민영 생보사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제사업에 대해 보험업과 동일한 규제·감독을 적용하는 것은 전세계에 공통된 모습이며, 우리나라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보험업 수준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제기관은 전체 현황조차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무허가 공제가 버젓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보호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태이다. 보험과 내용적으로 동일한 공제사업에 대해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동일한 경제현상에 대해 각기 다른 법률 및 감독기준이 적용되고, 감독비용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대부분의 공제기관이 금융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 보험회사와 같이 관리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감독기관인 소관 부처의 수수방관 자세로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더불어 EU 상공회의소, 美상공회의소 및 외국사 등이 공제사업의 불공정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도 상존한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타당성 검토

조용운(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307호

2013년 6월 보건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강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건강보험은 지속적으로 보장을 강화해 왔으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수년째 62.5% 수준에 머물러 있고 비급여진료비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결과적으로 비급여진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최근 4년간 누적적자가 1.4조 원에 이르렀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의료시장의 행동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년도의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의 비율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급여진료비 증가에 기인한다. 국민건강보험이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더라도 의료공급자의 이윤극대화 행동으로 인하여 총액 기준 비급여진료비는 변화하지 않을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강화는 규제되는 급여범위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보장강화 이후 의료공급자는 규제 없는 타 질환의 비급여진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의료

공급자는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항목을 신규
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독일, 미국 사례에서 부분적 규제가 해당 의료비를 낮출 수 있지만 의료공급자의 이윤극대화 행동 때문에 전체 의료비까지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료를 조정할 때 특정질병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기존과 같이 종합적 시장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특정질병의 보장강화에 따른 비급여 감소액을 산출하여 별도로 실손의료보험료에 반영하는 방법은 시장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보험회사 세제적격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최원(선임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311호

최근 개인연금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나 세제적 연금저축을 주로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세제적 연금저축 신규판매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 판매 권역인 보험업권의 세제적 연금저축상품 신규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손해보험의 초회보험료가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보험업권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적립금 비중은 75.6%로 매우 높으나 보험업권, 특히 손해보험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초회보험료는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설계사 수수

료 및 세제혜택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FY2011 이후 세제적격 연금저축 초회보험료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감소폭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설계사 수수료 제도 변화에 따른 설계사 판매 유인 감소와 세제혜택 확대와 같은 세제적격 연금저축 수요 확대요인 부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3년 1월 보험업권은 손해보험의 연금저축 예정신계약비를 생명보험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2013년 8월 금융위원회는 저축성보험의 설계사에 대한 분급 비중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편 세제적격 연금저축 수요는 세제혜택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2014년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세제적격 연금저축 수요 확대요인도 부재한 상황이다.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판매 감소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못하며, 이를 타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포함한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의 3대 축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심화에 대비하여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보험회사는 세제적격 연금저축 판매 확대를 위해 온라인 등 세제적격 연금저축 판매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신상품 개발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이 부족한 계층의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 제고와 투명한 정보 공시를 통해 기가입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유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KiRi Weekly 포커스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이상우(수석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67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2014. 1. 6)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의 미흡한 퇴직연금 가입(약 14%)으로 인하여 보편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행중인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우선 가입 관련규정에 대한 처벌조항을 조기에 신설하고, 퇴직연금 전환시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최소 적립비율의 차등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상임금으로 추가된 세수를 기업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게 퇴직연금 가입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연금보험료 합산세제를 분리하고, 개정 근퇴법 시행(2013. 7) 이후 표준형 규약제도와 공동가입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개발 및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거나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을 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보유현황 및 시사점

조영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68호

파생상품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은 저조한 상황이다. 미국 보험회사와 비교할 때, 국내 보험회사는 특히 금리리스크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전체리스크 중 금리리스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금리파생상품 이용이 저조하다. 금리파생상품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험회사의 관심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파생상품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이용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위험요인과 시사점

최 원(선임연구원)·채원영(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69호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Global Risks 2014’ 보고서는 31개의 글로벌 위험요인 가운데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소득불균형 심화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구조적 고실업 문제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발생 시 가장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요인으로 주요국 재정위기를 제시하였다. 유로존 경기회복세가 국가채무 규모 축소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였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양적완화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 이후 국가채무 규모의 축소 방안이 정책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균형 수준이 비교적 높아졌으며,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주요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선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글로벌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득불균형 개선과 재정효율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늘어나는 빈곤층 복지 수요 충족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공·사 부문의 효율적인 역할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유출 등 사이버리스크 관리 중요성과 관리방안

김진역(수석담당역)·전용식(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70호

최근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은 사이버리스크 관리의 실패사례로 볼 수 있는데, 기업·금융회사의 산업간 연계성이 커지고 리스크 복잡성이 심화되면서 사이버리스크관리 실패의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업·금융회사들의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이버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 영국 등에서는 사이버 배상책임보험(Cyber Liability Policy)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은 2014년 1월,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민·관 공동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의 제안은 사이버리스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규제 강화는 사회적 혼란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고 사이버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기업단위로도 최고경영자가 사이버리스크관리 프로그램을 전사적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통합해야 하며, 기업 및 금융회사의 구성원 모두의 일상 업무가 사이버리스크와 관련이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업·금융회사의 복잡한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보험산업의 역량제고가 필요하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행의 고려사항

정원석(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70호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와 간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포괄간호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서비스 대상을 2014년 2월부터 33개 병원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인구고령화 등으로 간병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적영역에서 제공하는 포괄간호 서비스 공급은 국민의 간병부담을 해소하고 아직 미미한 간병서비스 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어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시범사업만 총 186억, 한 병상 당 760여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사업확대를 위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환자의 중증정도에 따라 간호인력의 탄력적 투입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별로 상이한 간호 및 간병인력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간병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영보험회사의 역할 분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3년 4월~11월 자동차보험 손해를 분석과 시사점

기승도(수석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70호

2013년 4~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9%로 전년 동기보다 4.9%p 상승하였다. 손해율이 4.9%p 상승한 주요 원인은 크게 대당 보험료가 줄어 들고 사고발생률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담보별 손해율을 비교하여 보면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를 제외한 전체 담보의 손해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물배상담보 및 차량담보 손해를 악화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물배상담보의 사고발생률 및 보험금원가 증가,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사고발생률 증가 등도 손해를 상승에 큰 영향을 준 것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과 사고발생률 감소를 위해 사고예방캠페인, 교통법규위반 단속강화, 할인할증제도를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 및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제도 강화 등의 노력이 있어야 악화되는 손해율이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세액공제 확대에 관한 소고

정원석(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72호

기획재정부는 2014년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 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항목 확대³⁾를 검토하고 있다.⁴⁾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항목은 장애인, 경로자우대, 부녀자 6세 이하 어린이 그리고 출산 및 입양 등 추가인적 공제 항목이다. 인적공제 변경의 경우 납세자가 세제변경에 따라 경제적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사회전체 후생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로운 세액 공제전환 항목의 세액공제율이 여타 항목의 세액공제율과 같은 12%선에서 결정된다면,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계산된 전체 납세자의 유효세율이 13.4% 수준인 것을 감안 할 때 증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목적의 세액공제 확대라면 실질적 증세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합의를 얻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3) 2013년에는 특별공제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등)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음.

4) 연합뉴스(2014. 2. 11).

펀드슈퍼마켓 도입과 금융상품 판매채널 진화 전망

박선영(연구위원)·황진태(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73호

국내에서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출범을 앞두고 이의 성공 여부와 금융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펀드슈퍼마켓의 경우 고객들이 직접 다양한 펀드의 수수료와 수익률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원스톱 온라인 쇼핑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초기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길고 수수료 분배, 금융상품 공급자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이 성공적인 판매채널로 정착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보험업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보험 에그리게이터(agggregators)가 영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신채널로서 부상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펀드슈퍼마켓, 보험 에그리게이터 등이 통합 자문서비스와 결합해 펀드, 보험, 주식 등 개인의 투자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온라인 랩 플랫폼(Online Wrap Platform) 형식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내 보험 회사들이 이같은 신채널 도입을 고려할 경우 보험 상품의 특징과 구조를 반영한 선별적 도입전략이 필요하다. 상품설계가 쉽고 단순비교가 가능한 보험상품의 경우 에그리게이터식 채널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복잡한 재무설계가 요구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에그리게이터식 채널을 고객과의 접점 확대 수단으로 활용해 전통적인 대면채널을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의 배경과 영향

박선영(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74호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가계대출 부실 등 금융권의 구조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전·월세 제도의 구조적 개편과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구조개편에 나선 배경으로는 주택가격 추가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매매심리를 위축시키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등 임대차 시장의 수급 및 가격구조의 왜곡 현상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임대주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품귀현상마저 일고 있는 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임대차 시장 선진화 대책을 발표하고 월세의 세액공제 전환과 공공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및 세제혜택 지원 등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임대주들이 월세소득 노출로 인해 늘어난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경우 오히려 월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관투자가 입장에서 보험회사들은 정부가 민간 투자자들의 공공임대 주택시장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 시장 진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단, 가계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임대차 시장의 잠재부실 가능성에 대한 위험관리는 반드시 수반되어야한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보상한도 확대 필요

기승도(수석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74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동차보유자가 대인배상 I(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교통법에서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대인배상 II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대인배상 II에 해당하는 사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대인배상 I 단독가입자가 존재하는 점을 볼 때 현 대인배상 I 보상한도로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보인다.

따라서 현 대인배상 I 보상한도(사망/부상/후유장애 각각 1억 원/ 2천만 원/ 1억 원)의 확대를 통해 대인배상 I 단독가입자의 배상자력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자 보호 문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운전자의 모럴해저드⁵⁾ 방지를 위해 교통법을 개선함으로써 자동차사고율을 낮추는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자동차사고인데 11대 중대교통법규위반을 제외한 사고에서 대인배상 I 단독가입자와 대인배상 II 무한담보가입자의 형사상 처벌에 있어서 불평등이 발생한다.

그리고 손기식(1986)⁶⁾에 따르면, 특례법상 업무

5) 운전자의 처벌이 가벼워짐으로써 운전자가 함부로 운전하여 사고발생률이 늘어나는 것을 운전자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라고 함.

6) 손기식(1985), 교통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교

상 과실치상의 경우 제3조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더라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었음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도로교통 운전자가 형사처벌에 대한 해방감으로 사고가 급증하거나 인명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교통질서의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교통법상 중대교통법규위반 항목의 확대 등의 제도정비를 통해 운전자의 모럴해저드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

윤성훈(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75호

금, 은 등 귀금속이 화폐로 사용되던 시기에는 이들을 평소에 보관하고 또 거래에 직접 들고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해 금의 가치에 연동된 화폐가 발행되고 거래에 사용되었는데, 이를 금본위제도 또는 금태환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를 금 공급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고, 화폐와 금의 교환이 어려워지게 되자 금본위제도가 포기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불태환 통화제도로 이행하게 되었다.

금본위제도하에서 화폐 가치는 기본적으로 금 공급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불태환 통화제도에서 화폐 가치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조세권(재정건전성)에 의해 결정된다.

통행법의 체계정립을 위한 시론,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가상화폐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 화폐 가치를 지지할 수 있는 자산이 없으며, 온라인 거래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신뢰에 기반하여 화폐 가치가 지지되기 때문에 금과 같은 실물 화폐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즉, 비트코인은 금본위제도하에서 나타난 문제점(통화가치 변동성 확대, 디플레이션 가능성 등)을 그대로 갖고 있으며, 더욱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경우 IT버블 붕괴와 같은 문제도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Paul Krugman은 비트코인은 Evil이라며 화폐의 3대 기능 중 가치저장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화폐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며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

국내 금융업권간 인수합병 추진현황과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최원(선임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76호

최근 국내 금융산업에 인수·합병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교보생명의 우리은행 인수 검토,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 참여 등은 은행과 보험업 간의 업권간 인수합병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같은 업권간 인수합병은 시너지 제고, 수익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업과 보험업의 분리 추세에 비춰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과 트레블러스보험의 합병과 분리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은행과 보험점점의 미미한 시너지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영국의 Royal Bank of Scotland 그룹은 자회사인 손해보업사업 Direct Line Insurance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 사례이다. 은행업과 보험업 겸영 등 금융산업의 다각화(Diversification)는 경기순환에 따라 강화와 약화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사업구조 단순화, Back to Basic 등이 확산되고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 금융업 다각화 추세가 둔화되었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북미와 서유럽에서 금융그룹의 Back to Basic 움직임이 있었다. 업권간 인수합병은 업권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을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기회가 되어 금융산업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3보험 손해사정사제도 再考

정봉은(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79호

1993년 『손해사정인관리규정』 제정에 따라 상해보험을 포함한 특종보험이 제1종 손해사정사업무영역으로 규정됨에 따라 일반상해보험에도 손해사정이 이루어져 왔다. 이후, 2003년 생·손보사 간 제3보험 자유화로 그동안 손보사에서 하고 있던 일반상해보험의 손해사정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2011년 정액형 제3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도 손해사정사를 상시 고용하도록 손해사정의무화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손해사정사의 임무 및 핵심업무는 손해액 평가 및 보험금의 사정이나, 정액형 제3보험은 질병 발생시 실제 발생손해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의 사정을 할 여지가 없고, 실손의료보험은 전체의료비 중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의 일정비율을 자동적으로 보상할 뿐 특단의 손해사정 여지가 없다. 외국에서는 제3보험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법제화하는 나라가 없으며 또한 유자격 손해사정사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는 제3보험이 손해액의 크기를 조사하고 평가·사정할 부분이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보험사들은 많은 심사인력을 확보하여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유자격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야 하는 문제는 없다. 결론적으로, 국제적 정합성이 결여되고 필요성이 의문시되는 제3보험의 손해사정의무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제고가 필요하다.

국가간 개인정보 이동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필요성

이아름(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80호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한-미 FTA와 한-EU FTA의 유예기간 종료로 우리나라에 진출한 미국, 유럽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고객정보 공유와 해외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객정보의 해외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감독당국의 감독과 고객정보 유출 시 대응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3년 4월 FTA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에 대비하여 ‘금융회사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예고하였고, 수정된 규정이 2013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규제를 통하여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고객 주민번호의 해외 이전 자체를 금지하였고, 민감한 사항이 포함된 고객정보에 대한 처리를 위탁할 경우 정보 주체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하도록 규정하였다.

향후 국가간 정보이전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들은 개인범죄 차원을 넘어 국가간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당사국들 간의 사고방지를 위한 사전 대책 마련과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양국간 협력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논의에 관한 소고

김경환(수석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81호

2014년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이후 국회와 정부는 신용정보 집중 및 공유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써 신용정보관리 공기관을 설립하는 문제를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민간성격을 갖는 금융권 각 협회가 금융기관 신용정보를 관리·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모인 개인 신용정보가 신용정보회사 등을 거쳐 대부업체나 카드사 등으로 무분별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용정보 관리체계의 공적기능 부여를 위해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실효성의 측면에서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들은 신용정보법의 근거하에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관리 공기관을 설립한다고 해서 해킹 등 정보유출로부터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신용정보 관리체계의 골격을 유지하거나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해 나가되, 현시점에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취급정보 최소화나 CB로의 정보제공 금지 등을 통해 신용정보 관리에 공적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보험회사 치매보험상품

김석영(연구위원)·김혜란(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82호

최근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여 중증치매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경증치매환자들은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치매특별등급을 만들었다. 국내 보험회사들은 이미 90년대부터 치매로 인해서 발생하는 치료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치매 판정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여 왔으나 정부에서 치매특별등급을 운영하게 되면 상이한 치매 판정기준 및 보장범위에 따라 민영보험회사의 치매상품 개발 및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리는데 한계가 있으며 향후 제도 운영 결과에 따라 치매 판정등급의 기준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치매특별등급이 향후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판정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회사들은 공적장기간병의 치매등급에 대한 공적 정의를 준용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공적 치매특별등급체계의 도입은 치매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공문화합으로써 민영보험회사의 치매상품 개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치매상품 개발 시 치매 판정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현재 LTC상품에서 생긴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정원석(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83호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관리소홀 및 불법행위 예방장치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직·간접적 손해를 복구시키는 수준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전보배상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원칙 하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보상된다 해도 이는 피해자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것을 돌려받은 것일 뿐 가해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표적인 해외사례로는 1989년 알래스카에 대규모 원유를 유출하여 연방법원으로부터 25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엑슨 발데즈(Exxon Valdez)호 사고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2007년 태안반도의 유조선 원유유출사고의 경우 벌금총액은 6,000만 원에 불과 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사고 발생 시 해당기업의 책임을 경제적으로 엄중하게 물음으로써 최고경영층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 도입이 어려울 경우 생명 혹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부터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도입의 의미와 시사점

이경아(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85호

소비자가 광고성 전화를 원치 않을 경우 온라인 상으로 수신거부의사 표시를 일괄 등록할 수 있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은 보다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통해 원치 않은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거부의사표시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행사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고 용이해질 수 있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궁극적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수신거부의사체계는 향후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편익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익과 공급자 편익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 논란

정원석(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86호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가입 가능여부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보험가입으로 인한 징벌효과 무력화와 보험료전가의 가능성이다.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는 각 주별로 상이하나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주들은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로서 기업이 지불해야 할 돈인데, 보험가입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 면이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논의가 이제 시작된 지금 보험가입허용에 대한 논의는 다소 이른 감이 있으므로 보험가입 허용여부는 제도가 충분히 정착된 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사적연금의 연금화 필요성과 과제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87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개인의 장수리스크관리와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역할분담을 위해 사적연금의 연금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럼에도 은퇴자의 98%가 은퇴자금을 연금보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연금구매자가 일시금보다 연금을 더 선호할 수 있도록 연금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연금상품에 의해 헤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수리스크 헤지연금상품이 개발되고 연금전환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시금 수령시보다 연금수령시 세제혜택을 더욱 부여하여 연금전환을 유도하고,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중도인출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연금해지를 통한 일시금 수령이 없도록 제도적 검토가 요구된다.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는 사적연금 가입위주의 경영에서 적립된 연금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경영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퇴직자산의 연금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전략과 시사점

박선영(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88호

골드만 삭스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보험회사 CFO·CIO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울들어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대체투자 중에서도 부동산 펀드, 부동산담보대출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투자패턴의 변화는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저금리 시대에 안전자산 위주의 투자만으로는 고수익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비유동성 프리미엄(Illiquidity Premium)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자수익률 면에서도 미국 오피스 시장의 경우 10% 내외로 선전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오피스 시장 투자수익률도 5% 내외로 타 금융상품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들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회사 계열 부동산 자회사는 독립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와는 상이한 투자패턴을 보여야한다는 점, 둘째 해외 부동산 관련 노하우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직접투자 보다는 간접투자를 통한 단계적인 투자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내 투자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는 최근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임대주택 리츠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국내 부동산 간접투자에 대한 관심 확대가 요구된다.

잠재성장률 제고와 금융의 역할

채원영(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89호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추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잠재성장률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나 계획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정부·기업의 협력 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들의 1980년 이후 경제성장률 추세를 살펴본 결과,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 추세가 하락하지 않은 국가는 독일, 이스라엘, 스위스, 칠레, 터키 다섯 나라에 불과하였다. 특히 미국과 핀란드는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독일과 이스라엘의 경우 금융산업의 실물경제 성장 지원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발전 초기의 기술모방, 규모확대 위주의 투자전략을 버리고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 노인 삶의 질과 노인복지에 관한 소고

류건식(선임연구위원)·김동겸(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91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속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고령층 노인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하는 노인복지문제가 최대의 사회적 현안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일본은 연금제도성숙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세대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96.4%에 이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34.8%에 불과하다. 또한 일본 고령자세대의 소득원 중 약 74%가 연금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본의 고령자세대는 연금제도에 의해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 고령자 대부분은 노후소득보장체계 미흡 등으로 생계를 위한 일용단순직,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다. 게다가 노인들이 편안하게 소일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공간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고령자의 국민연금 수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취약계층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사회환경조성차원에서 일본동경의 스가모거리를 벤치마킹하여 “고령층 노인들을 위한 한국형 스가모거리”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결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소득보장, 사회환경 등 노인복지체계 개선에 정부, 지자체,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금융정책 변화와 시사점

이태열(선임연구위원)·이성은(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92호

2014년 7월 정부는 금융산업 전체에 대한 『금융 규제 개혁방안』을 공개하였으며, 보험부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금융산업의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어 금년에 발표된 정책은 현정부의 두 번째 금융관련 종합정책으로 볼 수 있다.

두 정책을 비교해보면 각각 ‘창조경제’와 ‘규제 개혁’이라는 다른 화두에서 출발하였지만 정책 목표에 있어서는 ‘실물경제 지원’과 ‘경쟁력 강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두 정책은 모두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보험 부문 정책의 경우 2013년 정책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신성장 영역의 발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반면, 2014년 정책은 주로 규제완화와 모집질서 건전화 분야로 논의의 중심이 이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험산업은 최근 금융정책의 흐름 속에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채널 통합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과 관련한 채널 활성화, 특히 채널 통합화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경제 장기부진 시사점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윤성훈(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93호

일본 경제 장기부진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수요 측면에서 거시정책 실패와 공급측면에서 구조 조정 미흡 등을 장기부진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시사점은 경제의 장기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이 모두 중요하며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① 내수 활성화, ② 민생 안정, ③ 경제 혁신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거시정책을 확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선순환을 통한 소비 및 투자여건 개선, 주택시장 정상화, 리스크 관리 강화 정책을 제시하였다. 민생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등 처우 개선,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 노사정 대화 복원 추진, 소상공인 지원, 서민생활 안정 등을 제안하였다. 경제 혁신을 위해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 규제 개혁, 유망 서비스업 육성,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경제 민주화 추진 등을 열거하였다. 이는 일본 경제 장기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제안된 정책들이 대부분 반영된 종합적인 정책으로 평가되며 방향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위험수위에 달한 상황에서의 경제정책은 지도에 없는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향후 나타날 정책 효과가 예상과 부합하는 지를 예의주시하며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고령층 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판매채널의 역할

박정희(선임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93호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층 보험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고령층의 보험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이러한 추세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의 계약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2012년 생명보험 전체 계약건수는 전년대비 1.2% 감소하였으나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전년대비 12.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층의 낮은 금융이해력으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보험소비자설문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계층의 63.6%가 본인의 금융 이해력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불합리한 관행을 경험한 금융상품 중 보험상품이 46.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리한 관행 유형으로는 상품설명 불충분 40.6%, 약관내용 어려움 35.4%, 각종 수수료 설명 불충분 2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보험시장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고령층의 보험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고령층에 차별화된 보험모집 지침을 제정·시행하여 고령층의 보험상품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보험모집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한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전략과 감독당국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이자율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94호

지난 7월 28일 대법원은 이자율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피고)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명령을 취소해 달라면서 한화생명 등 9개 보험회사(원고)가 낸 소송에서 보험회사 이자율에 관한 단순한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원고의 승소를 확정하였다. 앞서 고등법원은 2013년 7월, 보험회사 간의 단순 정보교환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볼 수 없고 교환된 정보를 참고하여 각 사가 이자율을 결정하였으며, 각 사의 이자율에도 뚜렷한 외형적 일치가 없어 담합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이자율에 대한 보험회사들 간의 정보교환과 같은 사업자 간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s)를 부당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향후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따른 보험회사 법규리스크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보험회사는 상호 정보교환을 상품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특히 각자 보험가격 결정을 독자적으로 하였다는 근거를 확실하게 남겨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비하고 법규리스크를 낮출 필요가 있다.

해외 장수스왑(Longevity Swap) 거래 증가와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95호

2014년 7월 영국 통신회사 BT Group은 자사 퇴직연금(Pension Scheme)의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해 미국 푸르덴셜보험(PICA,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과 사상최대 규모의 장수스왑(Longevity Swap)계약을 체결하였다. 장수 파생상품 중 하나인 장수스왑은 2008년부터 거래되어 왔으며 2012년 이후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과 재보험회사 간의 장수스왑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한 기업들의 수요가 확대되고 장수스왑의 주요 거래상대방인 재보험사가 장수리스크 보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회사가 장수스왑을 통해 종신연금부채의 장수리스크를 전가한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2012년 AEGON이 장수스왑을 거래한 바 있다. 장수스왑 거래 증가는 장수리스크 거래 가격의 투명성 제고와 장수리스크 관리 수단 다양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에서의 활발한 장수리스크 거래는 감독당국과 생명보험회사 모두에게 고무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슬람 금융과 금융회사 해외사업

전용식(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96호

국내 금융시장의 시장 포화와 수익성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높은 경제성장률, 인구 규모 등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이 미주, 유럽 지역보다 해외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해외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화가 중요한데, 동남아시아 지역은 최대 종교가 이슬람이고 가장 많은 이슬람 인구를 가진 지역이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이슬람 금융이 활성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 서비스 제공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의 경우 현지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험서비스를 현지 보험회사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제공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해외사업의 성공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어, 현지화를 위한 이슬람 금융·보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행정지도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와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98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포함)가 같은 행정목적
을 실현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보험회사를 대
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미리 공정거래위원
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8월 13일 발의되었다. 보험시장
에서는 그 동안 금융당국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
회사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
합 혐의로 제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원적 규제
의 상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규제상충으로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가 증가하
고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담합 혐의를 벗어나도
담합혐의에 대한 언론보도는 보험업에 대한 신
뢰를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보험업의 기반을 약
화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통과
시 금융당국의 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보
험업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행정지도 시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적 협의를 법적으로 강
제하여 이원적 규제상충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적 협의는 양 기관 사이의 업무협약 활성화
로 이어져 금융시장 전반의 법규리스크를 낮추
어 금융시장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일본의 정성적 위험관리체계 강화와 시사점

이경애(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98호

2014년 4월 일본 금융청은 보험회사의 정성적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보험회사 종합감독
지침」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정성평가 강화는
지급여력제도를 통한 정량적 위험관리만으로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지침에는
특히 전사적 위험관리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제도
(ORSA,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는 일본의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정성적 정보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될 것이며 정성평가 수단 역시 내부통
제에서 전사적 위험관리를 유인하는 ORSA로
강화될 것임을 뜻한다. 보험회사 자체적 위험관
리의 중요성과 정성적 위험관리 강화의 움직임
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보험감독정책의
주요한 흐름이다. 이번 종합감독지침의 발표는
전사적 위험관리가 일본 보험산업의 자본적정
성의 한 부분으로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는 점
에 의의가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합리화 필요

최창희(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99호

최근 들어 발생한 대형 사고의 재발과 안전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서 금융위원회는 전사고 관련 민간보험의 역할 강화 방침을 발표(2014. 10. 13)⁷⁾하였으며 국회는 세월호3법을 가결(2014. 11. 7)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외국과 같이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손해배상책임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 사례를 비교해 볼 때 국내 손해배상 산정 방법에서 가장 불합리한 부분은 비경제활동인구(주부, 학생, 미취학아동)의 일일이익 산정 시 소득 기준을 일용노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용노임이 소득기준으로 사용되고 연 5%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등 불합리한 손해액 산정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기준인 일용노임은 해외에서 사용되는 급여노동자 평균임금에 비하여 낮은 기준이며 피

해자에게 지급되는 배상액이 실제 손해의 기대 값보다 낮게 정해지도록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배상 책임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시사점

황인창(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300호

올해 국내 주요 모바일 IT 기업들은 지급결제와 송금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내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제도적 한계, 금융거래의 제약, 보안사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그 파급효과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향후 국내 금융소비자의 성향 변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 규제 완화 가능성 등을 살펴볼 때, 장기적으로 이러한 IT 기업들의 국내 금융업계 영향력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은 비금융회사의 금융시장 진입이라는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자금융시장 활성화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 관련 보험 시장 성장에 대비해 관련 상품 개발 및 판매 역량 강화 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7) 재난관련 의무보험 확대 및 미비점 개선(의무보험 보상한도 및 미가입 벌칙조항 법령에 명시), 재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포괄적 재난보험 도입, 보험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 강화(방재 컨설팅, 재난시설 안전점검, 위험관리 서비스 등 부수업무 활성화).
- 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유병언법): 피해자 보상을 위하여 사고의 가해자가 제3자에게 은닉한 재산을 추정정부조직법: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신설,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논의와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검토

전용식(연구위원)·이혜은(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303호

128

지난 해부터 제기되었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금리 인상 찬성 주장과 고용회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금리 인상 반대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9월 17일 미 연준은 현재의 초저금리 수준을 상당기간 유지할 것으로 표명하였으나 경기부진, 고용시장 회복 지연 등 미국의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준금리 인상은 2015년 중반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시장금리 상승으로 금융회사의 투자수익률은 개선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경제 회복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국내 금융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작년에 비해 확대될 수 있다. 국내경기 회복이 가시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2015년 중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과거와 달리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고 엔화 약세의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되고 있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신중한 자산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 저금리 장기화와 보험산업

전용식(연구위원)·이혜은(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304호

10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8월에 이어 0.25% 인하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 기준금리는 2.0% 수준으로 인하되었는데, 이는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지속되었던 수준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금융수요 증가를 통해 금융산업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산업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가 중장기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자산운용수익률 둔화, 이차역마진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표준이율이 시중금리 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의 잠재적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기준금리 조정이 중장기 국채금리 조정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보여 기준금리 인하가 중장기 국채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크기는 작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내 중장기 금리가 미국 국채금리의 추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국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감 확산으로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실물경제 회복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은 일시적일 수 있고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비한 경영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손해사정의 외부위탁 강제법안에 대한 검토

송윤아(연구위원)·이성은(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304호

9월 30일 이종걸 의원은 보험금 지급 및 산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안은 전반적으로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법안 내용 중 보험 회사의 내부 또는 자회사 위탁 손해사정 비율을 50% 이하로 강제한 조항은 핵심역량의 외부위탁을 강제하는 것으로,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보험소비자의 만족도 저하가 우려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손해사정능력을 보험사업의 핵심역량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손해사정의 외부위탁 여부 및 수준은 온전히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또한 손해사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보비대칭이 완화되면 손해사정의 공정성은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 회복가능한 부분이다. 더불어 손해사정사제도는 보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써, 이외에도 시장왜곡을 줄이면서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손해사정의 외부위탁 여부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의 결정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4분기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소고

윤성훈(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305호

3/4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2012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 3.2%(속보치) 성장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부채조정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부채조정이 시작되면 경제성장률이 더욱 하락하고 이는 추가적인 부채조정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채조정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서는 안 되며, 디플레이션 발생을 방지하고, 가계부채 등 민간부채의 증가속도를 명목경제성장률 이하로 억제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경제성장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선결과제이자 필요조건이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지고 있어 재정정책만이 유일한 경기부양 수단으로 보이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경기부양은 어렵다.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 경제성장률 수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의 투명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이를 시장참여자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정된 재정지출을 재정여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부

문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인구고령화 등을 감안하여 증세 등 장기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하락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판매채널 다변화에 따른 온라인채널 활성화 방안 필요

박정희(선임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305호

최근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온라인채널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생보사의 경우에도 온라인자회사를 출범시키는 등 온라인 채널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고 있다. 2013년 온라인을 이용한 보험마케팅 현황을 살펴보면 TM,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보험계약 건수가 전년대비 16.7% 증가한 3,723만 건을 기록하였다. 특히,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고 자동차보험 등과 같은 의무보험의 경우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 온라인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온라인 채널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동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오프라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판매방식에 자구적 관리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험회사는 특약위주의 복잡한 상품보다는 단순한 상품으로 판매가 이뤄져야 하며, 판매방식에 있어서도 관련 지침 등을 통해 온라인 채널을 건전화 할 필요가 있다. 보험소비자는 온라인 특성상 저렴한 보험료

로 가입할 뿐이지 보험상품은 동일한 구조임을 인식하고 사전에 자가설계나 정보 검색 등을 통한 selffinance족의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선택에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대면채널의 일원화된 감독지침 보다는 세분화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의 의의와 시사점

이승준(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308호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 만연한 숨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지도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지도 방식과 절차에 있어서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발표하였다.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며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금융감독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에도 행정지도의 실제 운영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관행적인 구두지도 등으로 남용되어 왔다. 특히 포괄적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행정지도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고 금융시장에 대한 숨은 규제로 작용하여 왔으며 이원적 규제 상충의 원인도 제공한 측면이 있어 왔다.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은 행정지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아 금융시장에 만연한 숨은 규제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법규리스크 및 법규준수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향후 금융감독 목적에서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행정지도의 금융회사에 대한 실질적 구속력도 이원적 경쟁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사이의 업무협의 및 정보공유 과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중 FTA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이아름(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309호

2014년 11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상품, 서비스, 농업에 관한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우선 개방한 후 FTA 발효 후 2년 내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반면, 금융분야에 관한 한-중 FTA 협상은 1단계만을 마쳤으며, 상대방 국가의 금융회사들이 각국에 진출하여 발생하는 영업시 애로사항 등을 보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4년 말까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및 무역수지 흑자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으로, 한-중 FTA 타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한-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 서비스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산업의 경우 한-중 FTA 체결과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로 우리나라 은행들은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한-중 FTA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중 FTA를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가 증진될 경우 양국 경제의 동조화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의무보험 제도 개선 방향

최창희(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309호

최근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피해자 보상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무보험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피해자 보상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업무상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들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화하는 현행 의무보험 제도는 가입대상자 관리 시스템 부재,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 기준 미비, 낮은 보상한도, 보상한도의 일관성 결여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대상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더라도 피해자가 최소한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무보험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① 사업자 등록 시 또는 재산 취득 시 의무보험 가입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가입대상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입 대상자 관리 시스템 구축, ② 신규 의무보험 도입 시 가입대

상자 관리 시스템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강화, ③ 미가입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는 의무보험 법규 정비(가입을 강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도 개선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의무 가입 조항을 삭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입 촉진을 위해 처벌 조항 신설), ④ 정해진 규정이 없거나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천차만별인 보상한도를 가지고 있는 의무보험들의 최소 보장한도를 손해배상책임 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 자동차 의무보험 한도로 준용하는 방안 검토, ⑤ 중장기적으로 의무보험의 관리 효율을 높이고 피해자 보상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보험 관리 업무를 의무보험관리 기구 또는 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변액보험 보증수수료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310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31일 변액보험 보증수수료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명령을 취소해 달라면서 신한생명이 낸 소송에서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교환한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금융감독원 지도에 따라 만들어진 작업반 등에서 이루어진 보험회사의 정보교환 및 의사연락 등을 합의로 인정하지 않은 점과 일부 공동행위 가담 보험회사가 조사협조를 통해 합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담합 증거로 인정 않은 점 등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적법한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른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해 합의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라는데 이 판결의 의미가 크며,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이원적 규제의 상충에 따른 보험회사 법규리스크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남아 있으므로 이번 판결이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자체로도 금융감독당국과 공정거래당국의 이원적 규제 상충 완화 측면에서 보험산업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을 통한 다른 손해보험 상품 판매가능성 분석

기승도(수석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310호

자동차보험 상품 권유와 동시에 다른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손해보험채널들의 유용한 소비자 접근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은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법률에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보인다. 이러한 자동차보험과 다른 손해보험 상품과의 관계는 통계를 통한 확인을 거친 후에 비로소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손해보험 가입자⁹⁾를 대상으로 Association Rule mining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일부 장기보험상품(장기 건강보험 또는 장기 상해보험) 또는 일부 장기보

9) 본 연구는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보험연구원)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것임.

협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자동차보험 상품을 권유하면 그 상품의 판매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표 1> 참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Association Rule 분석결과

구분	lhs	rhs	support	confidence	lift
1	{auto, lggang}	⇒ {lsang}	0.1840629	0.6307692	1.5148663
2	{lsang}	⇒ {auto}	0.3625140	0.8706199	1.3490824
3	{auto}	⇒ {lsang}	0.3625140	0.5617391	1.3490824
4	{lggang, lsang}	⇒ {auto}	0.1840629	0.8200000	1.2706435

- 1) 주 : 1. "auto"는 '자동차보험', "lggang"는 '장기간강보험', "lsang"는 '장기상해보험'을 의미함.
 2. 본 분석결과는 lift값이 큰 순서대로 나열한 후 그 값이 1 이하인 경우는 제외시킨 것임.
 3. 용어의 의미
 가. support : 각 basket에 해당하는 조합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
 나. confidence : lhs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rhs 상품을 구매한 비율
 다. lift : 일반적 소비자에게 rhs 상품을 권유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 대비 lhs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rhs 상품을 권유했을 때 그 상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의 비율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들은 각 판매채널 단위에서 손해보험상품(자동차보험 또는 일부 장기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할 때 추가 판매가 가능한 상품위주로 권유하는 방식을 취하는 등, 세부적인 판매전술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CDA(Contingent Deferred Annuity)상품 판매 논의와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311호

133

미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연금상품인 CDA (Contingent Deferred Annuity)가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뮤추얼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CDA를 구매할 경우 은퇴 이후 약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인출함으로써 은퇴자산이 고갈되더라도 보험회사가 종신까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 CDA 상품은 2008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변액연금의 GLWB 옵션에 비해 비용 상의 이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현재 판매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CDA상품이 대안적인 연금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부진한 이유는 CDA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 준비금 및 요구자본 규정 등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규제상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CDA상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될지는 미지수이며 우리나라 연금시장 도입 가능성도 불확실하지만 노후 소득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II.

FY2014 주관 행사

정책·경영세미나

국제세미나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Global Insurance Forum

금융정책포럼

고령화포럼

기타 행사

Chapter

정책·경영세미나

-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 방안
- 보험회사의 자본강화전략과 정책과제
-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
- 201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
- 판매채널제도 개선 연구용역 설명회
-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제도개선 세미나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행사명 : 보험회사 CEO 초청 조찬회 | 주관행사

138

행사개요

- 일시 : 2014. 6. 19(목) 07:30 ~ 09:00
- 장소 : 조선포텔(소공동) 2층 오키드룸
- 주제 :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발표
 - 환 영 사 : 강 호 보험연구원장
 - 사 회 : 안철경 부원장(보험연구원)
 - 발 표 : 김석영 연구위원(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

개최배경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룩하여 현재 세계 10위권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2000년 이후 보험산업은 저금리로 인한 이차역마진에 직면하였으며, 현재와 같은 사업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였다. 사업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는 현재의 상품요율 체계하에서 이차역마진으로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수익 특히 사업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는 일반대중과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고,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우리 원은 보험회사 수익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추

구해야 할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업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는 현 규제하에서 보험회사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향후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률차 중심의 수익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보험회사가 위험률차 중심의 수익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주제발표

보험회사 수익구조가 위험률차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위험률차익이 보험회사의 본질적 역할인 위험의 인수 및 관리를 통한 이익이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는 불확실성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다양한 위험 보장 및 관리 노력은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로 인해 형성된 보험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해소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 개선은 보험회사의 기본역량 향상, 다양한 상품 개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위험률차익 향상을 위해서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 지급심사, 그리고 상품개발 능력과 같은 보험회사의 기본역량 향상이 요구되며 이

보험회사 수익구조가 위험률차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위험률차익이 보험회사의 본질적 역할인 위험의 인수 및 관리를 통한 이익이기 때문이다. 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로 인해 형성된 보험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해소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 개선은 보험회사의 기본역량 향상, 다양한 상품 개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는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둘째, 위험률차익을 위한 충분한 안전할증은 장기보장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충분한 안전할증에 기인한 것이다. 불충분한 안전할증으로 갱신형 상품을 개발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입원, 수술과 같은 상품도 종신으로 보장하고 있다.

셋째, 고연령층에 대한 상품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로 35~44세 인구가 줄어들어 보험상품의 주요 고객층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금까지 보험상품 주 판매대상이 아니었던 고연령층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인구구조와 전혀 다른 보험계약자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위한 충분한 안전할증 허용은 보험회사가 고연령층에 대한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상품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위험률 산출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위험률 산출 시 통계적 변동성에 대한 안전할증뿐만이 아니라 추세 변화에 따른 안전할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험률차익 중심으로 수익구조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적정 이익의 확보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자본유입이 없다는 가정하에 2012년 기준 RBC비율 150%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당기순이익 규모가 약 3조~4조 5,000억 원임을 고려할 때 2012년 생명보험 산업 전체 당기순이익 3조 2,000억 원으로는 최소 재무건전성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보험시장의 효율성이 보다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그림자 규제가 해소되는 등 보험산업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재무건전성 규제와 함께 영업행위 규제도 개선하여 보험산업 자율성 확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 방안

행사명 : 재무건전성 규제 관련 정책세미나 | 주관행사

140

행사개요

- 일시 : 2014. 9. 2(화) 14:00 ~ 16:3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관(여의도) 2층
- 주제 : 보험부채의 시가평가 영향과 RBC
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 발표 및 토론
 - 개 회 사 : 강 호 보험연구원장
 - 기조연설 :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 사 회 : 류근옥 교수(서울과학기술대)
 - 주제발표 : 조재린 연구위원(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
 - 토 론 : 김진홍 과장(금융위 보험과)
안용운 이사(롯데손보)
오익환 전무(한화생명)
이항석 교수(성균관대)

개최배경

현재 국내 보험회사는 지속적인 금리 하락과 경제성장률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수익률이 하락하는데 신계약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금리 계약 비중은 과거만큼 크게 줄지 않고 있어 이차역마진 규모를 줄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보험회사가 보험영업과 자산 운용에서 위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수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보험영업의 경쟁력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개선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험산업의 생존은 보험소비자의 신뢰에 기초하고 있고, 신뢰를 지탱하는 기둥 중의 하나가 건전성 유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재무건전성에 대한 요구 수준은 더 높아지고 있고, 국제기준과의 동조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런 때에 금융감독당국이 내놓은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로드맵’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규제 변화의 역사에서 재무건전성 규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시장경쟁 촉진과 더불어 강화되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보다 많은 준비금과 자본을 요구하는 규제의 변화가 시장경쟁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제 간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보험회사가 변화를 수용할 만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데다 대응 기간도 충분하지 않은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면밀한 이행전략과 비상계획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제발표

2013년 현재 생명보험회사는 보유계약에서 35조 원의 장래결손과 64조 원의 장래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IFRS 전면 채택 이후 매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보험부



4년 앞으로 다가 온 보험부채의 시가평가(IFRS)를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RBC)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화두이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조재린 연구위원은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 4 phase 2) 최초 적용 시의 장래결손의 인식 문제와 할인율 급락에 따른 보험부채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여 IFRS와 RBC 연계전략이 필요함”을 주장, 이에 장래결손을 보전할 재원인 장래이익도 RBC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변동 등에 따른 할인율 급락으로 보험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한 감독조정 수단 필요성을 언급했다.

채 적정성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에서는 보유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보험회사가 장래 29조 원의 순이익을 얻을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보험회사는 유배당보험을 포함한 금리확정형계약 등에서 35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금리연동형계약 등에서 64조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 4 phase 2)은 손실계약을 즉시 인식하여 재무상태표의 자본이 35조 원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한편, 보험회사의 장래이익을 반영하여 기업가치가 29조 원 늘어났음도 보여줄 것이다.

현재의 LAT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IFRS 4 phase 2에 따라 장부상 자본은 35조 원만큼 감소하고, 64조 원의 이익은 보험부채에 표시되었다가 여러 기간에 나누어 자본에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IFRS의 장부상 자본만을 보험회사 RBC 비율에 반영할 경우 동 RBC비율이 장기계약을 다루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지급여력평가 관점에서 보면, 장래결손은 장래이익으로 보전될 수 있으나, 2018년 IFRS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결국 장부상 자본만을 RBC에 반영할 경우 RBC비율 급락이 예상되고, 이는 보험회사 지급여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장래이익이 장래결손을 보전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장래이익을 포함하여 RBC비율을 산출할 것을 제안했다.

보험부채 시가평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할인율인데, 2018년경에는 현재보다 낮은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며, LAT 강화가 적절한 대안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지속될 경우 장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금리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래이익을 포함하여 RBC비율을 산출한다 하더라도 할인율이 하락하면 지금보다 장래결손은 더 커지고 장래이익은 지금보다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어 RBC비율의 악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할인율 하락에 따른 RBC비율 악화에 대비하여 새 제도 시행 전까지 LAT를 강화하여 보험회사가 준비금을 충분하게 적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할인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대다수 보험회사의 RBC비율 급락이 불가피하므로 지급여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할인율 급등락을 조정할 감독수단 도입을 제안했다.

LAT 강화만으로는 할인율 급락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감독수단이 필요하다.

보험회사의 자본강화전략과 정책과제

행사명 : 재무건전성 규제 관련 정책세미나 | 주관행사

142

행사개요

- 일시 : 2014. 9. 24(수) 14:00 ~ 16:3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대연회실
- 주제 : 보험회사의 자본강화전략과 정책과제
- 발표 및 토론
 - 개 회 사 : 강 호 보험연구원장
 - 사 회 : 오창수 교수(한양대학교)
 - 주제발표 : 조영현 연구위원(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
 - 토 론 : 김 범 교수(숭실대학교)
박홍찬 국장(금융감독원)
송민규 박사(한국금융연구원)
신상만 상무(교보생명보험)
이준섭 이사(보험개발원)

개최배경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러한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의 긍정적 기대효과는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을 최적의 방법으로 강화시킬 때 극대화될 수 있다. 만약 보험회사가 규제로 인해 재무건전성을 최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결국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규제 강화는 보험회사의 준비금과 요구자본을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보험회사가 최적의 방법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유도 혹은 허용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최적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및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제발표

RBC규제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와 IFRS 4 phase 2 시행에 의한 가용자본 감소로 인하여 생보사 RBC비율은 2018년까지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는 우선적으로 감독당국의 자본규제를 충족해야 하므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자본비용을 최소화하는 자본확충과 자본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조영현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제도 강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자본확충 전략과 위험경감전략을 실행해야 하며,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효과적인 자본관리를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에 보험회사에게는 자본확충 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하여 자본비용을 낮추고 금리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금리리스크를 경감시킬 것을 제안하고, 감독당국에게는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상시 발행 허용과 RBC제도의 금리파생상품이용 효과 반영을 제안했다.

위험경감 전략으로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본관리 방법이다.

보험회사가 자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타인자본 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우량 보험회사와 국내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가용자본 중 후순위채 비중이 10~20% 가량인데, 이는 적절한 규모의 부채(타인자본) 발행이 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자본구조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하여 우량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이 불가하여 자본확충 시 자본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150%에 근접하였을 때만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후순위채 상시발행 허용을 통하여 보험회사가 최소의 비용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후순위채의 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후순위채 상시발행 금지는 해외 보험규제나 국내 타금융업 규제와 비교하더라도 엄격한 규제이다. 대형 생보사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산과 부채를 조정하여 금리리스크를 경감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국내 생보사는 그동안 금리확정형 부채 비중을 줄이고 자산을 대출채권 중심으로 채권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금리리스크를 경감시켜 왔다. 이에 중소형 생보사는 금리리스크와

금리역마진율이 급감했으나, 대형 생보사는 여전히 금리리스크와 금리역마진율이 큰 상태이다. 대형사의 경우 금리리스크 축소를 위해 국채 듀레이션을 늘릴 필요가 있으나 장기 국채 공급량이 충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형 생보사는 금리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새로운 위험경감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생명보험회사들은 금리파생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금리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파생상품 이용으로 회계상 손익이나 자본 변동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금리리스크가 헤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감독당국도 RBC제도에 금리파생상품이용 효과를 반영함으로써 파생상품을 이용한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

행사명 : 노후보장 강화 관련 연금정책세미나 | 주관행사

144

행사개요

- 일시 : 2014. 9. 30(화) 09:3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 주제 :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 방향
- 발표 및 토론
 - 환 영 사 : 김영주 의원(한노위 위원장)
김용태 의원(정무위 간사)
 - 개 회 사 : 강 호 보험연구원장
 - 사 회 : 이봉주 교수(경희대학교)
 - 주제발표 : 류건식 실장(보험연구원 고령화 연구실)
 - 토 론 : 손필훈 과장(고용노동부)
오영수 고문(김앤장 법률사무소)
윤석명 박사(보건사회연구원)
이석란 팀장(금융위 연금팀)

개최배경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의 증대로 정부 중심의 사회안전망 역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적안전망 역할 확대를 통해 전체 사회안전망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금정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소득 양극화의 심화로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

서 한정된 복지재정을 고려하면서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적연금 활성화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 유도를 통한 사적안전망의 역할 제고 논의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사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주제발표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저소득계층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어 공·사협력을 통한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저소득계층은 1990년 7.1%에서 2013년 11.8%로 확대되고 있으며 저소득계층인 소득 1, 2분위의 사적연금 보유율은 각각 1.5%, 13.3%에 불과하다. 특히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

소득의 양극화심화 등으로 저소득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사적안전망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사적연금 활성화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가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투자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계층을 위해 투자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실질적 수급권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연금지급보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 도입률(2014년 6월 기준)은 11.1%, 2,000만 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가입률(세제적격)은 1.2%로 사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 반면,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공적 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의 활성화 과정에서 사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사적안전망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수수료를 보조해 주거나 저소득계층이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노후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소득계층 중심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먼저 가입여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최소한

의 운용수익률을 보증하고 재정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2015년 7월 도입 예정인 제도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도입시 퇴직연금적립금 및 운용수수료의 일부분을 한시(3년)적으로 지원하여 주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노후대비와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녀 교육비 재원 마련을 위한 교육 IRA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한편 저소득 베이비부머의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는 추가기여제도(Catch Up Plan)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투자지식이 부족한 저소득 계층에 대한 투자교육(가입자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연금수급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계층에 부합한 맞춤형 연금상품개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종신연금 수령시에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행사명 : 제39회 보험경영인 조찬회 | 주관행사

146

행사개요

- 일시 : 2013. 10. 7(화) 07:30
- 장소 : 조선히텔 2층 오키드룸
- 주제 : 201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발표 및 토론
 - 환영사 : 강호 보험연구원장
 - 발표 1 : 윤성훈 동향분석실장(보험연구원)
 - 발표 2 : 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금융위원회)



개최배경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와 EU와 일본의 양적완화정책 확대가 병행됨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 투자 등 내수와 수출 개선세가 크지 않아 경기 회복이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며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보험산업의 경우 지속적인 저금리와 성장률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재무건전성 감독이 강화되어가고 있고 소비자 신뢰회복이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내년도 경영환경은 금년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경제 및 보험산업 동향과 전망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하였다.

발표 1

2015년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국의 경제성장세 확대로 수출이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 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이 어려워 2014년보다 0.1%p 상승에 그친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5년 경기가 개선되고 원화강세 추세가 완화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4년 1.6% 대비 0.4%p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고채(3년) 금리의 경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하반기 예상됨에 따라 上底下高의 모습으로 연간 평균으로는 2014년 평균인 2.6%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 상승과 이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감소, 신흥국 통화불안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연간 평균 2014년 1,049원과 유사한 수준인 1,040원으로 추정하였다.

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는 해외경제의 경우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중국의 경제성장

보험산업의 경우 2015년 들어 2012년 세계개편 영향의 기저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고 가계의 자금 잉여가 연금과 보험으로 저축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저축성보험 중심으로 성장세를 회복하여 수입보험료는 2014년보다 1.7%p 높은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둔화 우려, 지정학적 불안 확대 등을 꼽았으며, 국내경제의 경우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리고 엔화 약세를 언급하였다.



보험산업의 경우 2015년 들어 2012년 세계개편 영향의 기저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고 가계의 자금 잉여가 연금과 보험으로 저축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저축성보험 중심으로 성장세를 회복하여 수입보험료는 2014년보다 1.7%p 높은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2015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2년 세계개편 영향의 기저효과가 남아있던 2014년 보다 3.0%p 상승한 5.4%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저축성보험 회복에 더해 보장성보험도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단체보험이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손해보험은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아짐에 따라 손해보험의 고성장을 이끌었던 성장동력

이 약해지고 있어 2015년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등의 저성장으로 2014년보다 0.5%p 낮은 4.8%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보험산업을 둘러싼 가장 큰 환경 변화로 첫째, 저성장·저금리·인구고령화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 정착, 둘째, 보험산업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를 포함한 보험산업 규제 변화를 거론하였고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경영 및 정책과제로 ① 뉴 노멀 시대의 경영전략 모색, 이의 연장선에서 ② 신성장 동력 발굴노력 지속과 ③ 비용관리 효율화, 그리고 ④ 보험산업 규제 변화 대응 등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금의 경제·금융상황이 경기 순환상 Recession이 아니라 인구고령화, 투자 부진, 소득분배구조 악화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장기화될 현상(뉴 노멀)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금융 상황에 맞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체질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기둔화에 따른 저성장 시기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저성장 시기의 경영전략은 분명하게 달라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새로운 경제·금융상황에서 보험산업이 지속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수익원 발굴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해외사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가 되었으며, 인구고령화 및

금융위 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은 2015년 기본적인 보험정책과 추진과제로 보험 신뢰 제고, 보험산업의 혁신 유도, 부작용 차단을 위한 시장규율 강화 등 세 가지를 설명했다. 또한 향후 새로운 정책 이슈 사항으로 보험점포 도입방안, GA 혁신방안, CAT Bond 도입방안, 보험슈퍼마켓 도입방안, 보험사 역마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했다.

안전의식 제고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는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과 배상책임보험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셋째, 새로운 경제·금융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수익성을 유지하고 성장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비용관리가 중요함도 역설하였다. 초회보험료보다는 계속보험료 위주의 성장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비용구조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등 인력, 상품, 프로세스 전반의 비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넷째, 한편, 단기적인 시계에서는 효율 선진화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소비자 신뢰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는 정부의 보험산업 규제 변화에 대해 효과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보험업계는 가격 결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규제가 변화됨에 따라 가격결정능력 향상과 더불어 경쟁심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이러한 자율성 강화가 모집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보험산업 규제 변화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정책 및 감독당국에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무건전성 강화에 대비하여 위험 및 자본관리뿐만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 개선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발표 2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조찬회에 참석하여 「2015년 보험정책 및 감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시대변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역할과 환경적 요구를 통해 기회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회요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2015년 기본적인 보험정책과 추진과제로 보험 신뢰 제고, 보험산업의 혁신 유도, 부작용 차단을 위한 시장규율 강화 등 세 가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보험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모집질서 확립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보험금 지급관련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보험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건전성에 기반을 둔 보험상품 경쟁을 촉진하고 자산운용 대상 및 여력 확대, 해외진출 여건 조성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것과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정

상화, 검증 의무화 및 보험사의 지급여력 강화, 공시이율 범위 확대, 국제회계기준(IFRS) 대응,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강화를 통해 보험사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부작용 차단을 목표로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권익침해 제재근거 마련, 보험광고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속 반복적 위법행위 제재 강화, 대형 보험대리점 규율 강화, 퇴출 대리점 우회 진입 방지 등을 통해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장질서를 정상화할 것을 설명했다. 또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체계를 정비하고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침을 설명했다.

향후 새로운 정책 이슈 사항으로 보험점포 도입 방안, GA 혁신방안, CAT Bond 도입방안, 보험 슈퍼마켓 도입방안, 보험사 역마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했다.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

행사명 : 보험소비자 신뢰도 제고 정책세미나 | 주관행사

150

행사개요

- 일시 : 2014. 11. 11(화) 14:00 ~ 16:3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연회실
- 주제 :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
- 발표 및 토론
 - 개 회 사 : 강 호 보험연구원장
 - 사 회 : 김종창 회장(청소년금융교육 협의회, (전)금융감독원 원장)
 - 주제발표 : 이태열 실장(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
 - 토 론 : 남상욱 교수(서원대학교)
박종화 상무(손해보험협회)
성대규 국장((전)공자위 사무국장)
정 양 상무(생명보험협회)
최현자 교수(서울대학교)

개최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 신뢰는 금융산업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중에서도 보험은 기본적으로 신뢰에 기반한 산업인 만큼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산업 신뢰도와 관련한 각종 통계지표나 설문조사들이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어 신뢰 개선을 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산업에 있어서 신뢰의 중요성과 개선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나 부

정적인 세간의 평판을 겹쳐히 받아들이되, 보다 정확한 문제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험의 사회적, 산업적 특징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험산업의 신뢰도 문제는 영업력 외에는 차별화가 어려운 경영 환경을 스스로 극복하고 소비자 보호와 영업 경쟁 사이에 균형을 잡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지만, 보험의 특성에 따른 본질적인 한계와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설명의무, 판매자 책임 등과 관련한 공공규제의 구체화가 필요하겠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자율 규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발표

보험산업의 신뢰도 문제는 계약의 내용이 복잡하고 Push-marketing



보험산업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소비자 신뢰도 문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보험산업의 고유한 요인과 경영, 규제 등 내생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원인 분석을 하고 효과적 신뢰 제고를 위한 공공규제 강화 및 자율규제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불가피한 보험산업의 고유 성격에 크게 기인한다. 25개국을 대상으로 한 32개 직업군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저조하다(31위(한국, 독일, 네덜란드) 30위(캐나다, 호주) 29위(영국, 스위스) 28위(미국, 일본), GFK Verein, Trust in Professions 2014).

조사 대상 25개국 대부분에서 Push-marketing 관련 직업(보험설계사, 광고마케터, TV호스트, 소매업자)과 권력 관련 직업(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 경찰관, 공무원)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소비자 중시 정도에 대한 평가에 비해 기업의 윤리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낮아 보험산업에 불리한 사회적 신뢰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기업의 소비자 중시 정도와 기업의 윤리성에 대한 평가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우리나라는 윤리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낮다(① World Economic Forum : 기업의 소비자 중심주의(13위/144개국), 기업의 윤리성(95/144), ② IMD : 경영에서 고객 만족의 중요도(22위/60개국), 기업 관행의 윤리성(54/60)).

또한 보험산업 신뢰도 결정의 핵심 변수인 정직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기반이 총체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영업 중심 경쟁의 관행을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정책 당국이 나서지 않으면 스스

로 노력하지 않는 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보험산업에서 저축기관이었던 과거 이력과 영업력 외에는 차별화가 어려운 경영 환경으로부터 파생된 뿌리 깊은 영업 중심의 경영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가격과 상품에서의 비차별성 지속, 영업 채널에 대한 의존도 심화, 산업 내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산업 자체적으로 영업 위주의 경쟁 관행을 극복하는데에도 실패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등의 정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규제 사각 지대가 확대되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설명의무 강화, 적합성 원칙 도입, 판매수수료 체제 개선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선단 행정식 소비자 보호 정책으로 시장의 자율성과 현장에서의 현실성에는 한계가 있다.

제판 분리, 비전속 채널의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일련의 정책은 채널을 다양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였으나 스스로 영세 채널에 의한 규제 사각 지대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규제를 구체화하고 자율규제의 보완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설명의무의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 대한 설명의무를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보험회사의 상품설명

서와 영업관련 자료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영세 독립 채널 확대에 따른 규제 사각 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향후 구축 예정인 모집이력시스템상의 위축 기준과 판매 채널의 배상 자력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장 자율의 자정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의 경우 복잡한 현장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자율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자율 규제 기능의 경우 감독당국의 위임에 의존하여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에서 규제 업무에 대한 지배구조 개방, 문서 주의에 의한 투명화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판매채널제도 개선 연구용역 설명회

행사명 : 연구용역 설명회 | 주관 : 김현수 · 정세창 · 김은경, 후원 : 금융위원회 · 보험연구원

153

행사개요

- 일시 : 2014. 11. 20(목) 14:00 ~ 16:3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연회실
- 주제 : 판매채널제도 개선
- 발표 및 토론
 - 인 사 말 : 강 호 보험연구원장
 - 사 회 : 정호열 교수(성균관대학교)
 - 주제발표 :
 - 제1주제 : 부당승환계약 방지 방안
김현수 교수(순천향대)
 - 제2주제 : 판매자 책임 강화 방안
김은경 교수(한국외국어대)
 - 제3주제 : 판매자의 전문성 강화 방안
정세창 교수(홍익대)
 - 토 론 : 김재현 교수(상명대)
김진홍 과장(금융위 보험과)
남태민 본부장(보험대리점협회)
박종화 상무(손해보험협회)
한기정 교수(서울대학교)

개최배경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가 전세계에 걸쳐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보험산업에 있어서도 소비자보호의 일환으

로 불완전판매, 부당모집질서, 판매채널의 전문성 및 윤리성, 독립대리점의 급성장, 제판분리에 따른 책임소재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보험산업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하며, 판매채널의 경우에도 그 역할과 권한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법적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외부 전문연구진을 구성하여 “판매채널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1 주 제

부당승환계약 방지 방안으로서 제일 먼저 보험업계 전반적인 승환계약(신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중요내용을 변경하는 것) 관행 및 부당승환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승환계약을 관리하고 부당승환계약을 적발·방지할 수 있는 보험사 자체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독당국의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부당승환계약 방지에 대한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해지로 인한 손해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부당승환계약으로 간주하고 판매자가 해지를 조장하는 것을 막는 ‘조력금지제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보험자 스스로 다른 보험사로 옮기려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유를 반드시 알리게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는 승환된 모든 계약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승환을 시키는 행위만 금지시키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부당승환계약뿐만 아니라 부당 판매관점에서 접근하는 형태로 판매자 책임 강화, 전문성 및 윤리성 강화 등 포괄적인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승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정해진 문서에 표시해 판매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승환이 있었다는 보험가입자의 진술이 있으면 판매자는 청약한 계약을 추천한 이유 등 ‘정상적인’ 승환계약임을 증명해야 한다. 호주의 경우는 부당승환계약이 생명보험 신규 계약의 1/6~1/3 정도로 심각한 문제임을 제시하고 부당승환계약 근절을 위해서 보다 실효성 있

고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 사례를 참고로 했을 때 부당 승환 관련 법제 개선 방안으로 승환계약에 대한 관리 및 보고의무 부과, 해지계약의 피승환보험사 통지 및 부당승환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것을 제시했다.



2 주 제 보험사와 보험판매조직의 책임 관계에 있어 대리법리에 따라 제조자(보험사)가 소비자(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판매자 책임 강화 방안으로 먼저, 현재의 대리법리에 따른 책임체계하에서 판매자에게 설명의무에 앞서 상담의무를 부과하고 설명의무와 상담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매자가 증명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상담의무란 보험계약체결 전에 보험상

이번 용역설명회는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연구용역의 결과 보고회의 성격이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김현수 교수, 김은경 교수, 정세창 교수는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판매채널제도 개선방안”을 부당 승환계약 방지 방안, 판매자 책임 강화 방안, 판매자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나누어 우리나라와 선진 제국의 현황을 분석한 후, 각 주제별 개선방안과 장기 발전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품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상담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또한 불완전판매와 직결되는 설명의무위반에 대해서는 판매자(일정규모 이상)에게 1차 손해배상책임(자기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부과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구매단계에서 구매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장기 방안으로서,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의 판매책임을 분리하고, 비전속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중개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3 주 제 GA의 시장지배력이 증대하면서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이에 부합되는 전문성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전문성 강화방안으로 진입 및 사업수행 중 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했다.

먼저, 진입 관련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는 GA를 실제 운영하는 임원에 대한 등록제한 사유를 두는 인적요건 강화와 일정규모 이상의 GA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 보전을 위해 자본금 요건을 신설하는 재무적 요건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사업수행 중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는 고급 자격증제도 신설,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집합교육 실시, 면허의 갱신을 보수교육과 연계시키는 갱신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GA 자체에 대한 평가가 없어 구매자와 판매자 간 정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GA 평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제도개선 세미나

행사명 :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 공동주관행사

156

행사개요

- 일시 : 2014. 12. 1(월) 10:00 ~ 12: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박대동
- 주관 : 보험연구원, 금융법학회
- 주제 :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제도 개선
- 발표 및 토론
 - 개 회 사 : 박대동 국회의원
 - 환 영 사 : 강 호 보험연구원장
정경영 금융법학회장
 - 사 회 : 유주선 교수(금융법학회, 강남대)
 - 주제발표 :
 - 제1주제 :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에 관한 연구(박영준 단국대 교수)
 - 제2주제 : 국내외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시장 현황(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좌 장 : 정경영 학회장(금융법학회)
 - 토 론 : 김은경 교수(한국외대),
박병호 정책관(안전행정부),
손병두 국장(금융위),
신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오남석 국장(방송통신위원회),
조남희 대표(금융소비자원)

개최배경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에 대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정부, 업계, 학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1 주 제

2014년 1월, 3개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그 배상방법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개인정보유출시의 배상에 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들이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어 있다.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은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보상, 기업의 위험 분산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기준, 보상범위, 보상한도 등은 향후 시행령에서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의에 의한 사고의 경우는 현행 법률과의 균형 및 보험의 선의성 유지를 위한 고의사고 면책 방안, 정보주체 보호라는 제도 취지 제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제재수단 도입 방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이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정보유출 사고의 경우 발생 빈도는 낮으나 사고 발생 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기업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으므로 피해자 구제와 기업 재정 보호를 위해 기업들이 보험 가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주 제 미국에서는 매년 500건 내외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

며 이러한 사고에 의한 정보유출 건수는 최대 2억 건에 이른다. 사이버 보안 업체인 맥아피(McAfee)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발생하는 연간 사이버 범죄에 의한 손해액은 300조 원에서 1,000조 원 규모로 대재해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의 5배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유출 건수가 최대 1억 건이 넘는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으나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정보유출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2013년 기준으로 미국의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는 13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 GDP의 0.00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는 43억 원으로 GDP의 0.00031% 수준이다.

정보유출 사고는 발생 빈도가 낮으나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규모를 미리 가늠하는 것이 어렵다. 타 위험의 경우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나 정보유출 사고의 경우 끊임없이 새로운 해킹기법 또는 사기 유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최신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적용이 필수적이다.

동 업종 내의 기업 간에도 정보유출에 노출된 위험 수준이 달라 각 기업의 정보유출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위험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 전산화의 가속화로 피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과 같이 위험관리 경험이 많은 보험회사들이 기업에 맞춤형 정보유출 위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한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본 제도개선에 의한 관련 시장의 활성화는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담보를 포함하는 경쟁력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기업에 정보유출 관리 컨설팅과 같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유출 사고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Chapter 2

국제세미나

-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종합적 위험관리(ERM)
- 효율적 의료비 관리를 위한 공·사 협력 방안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종합적 위험관리(ERM)

행사명 : 보험연구원-와세다 대학교 공동세미나(제22회 와세다대 産研학술포럼) | 공동주관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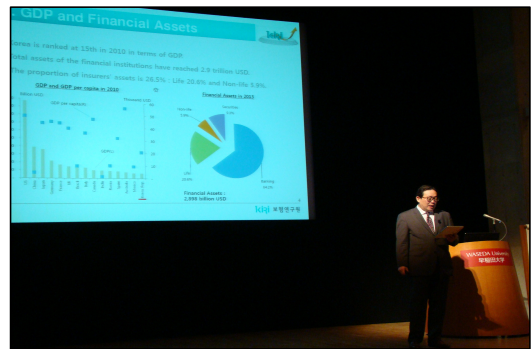
160

행사개요

- 일시 : 2014. 6. 27(금) 13:00 ~ 17:00
- 장소 : 와세다대학교 국제회의장 이부카 마사루(井深 大(まさる)) 기념홀
- 주제 :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종합적 위험관리(ERM)
- 발표
 - 사회 : 나카무라 노부오(中村信男, 와세다대)
 - 개회사 : 쿠보(久保)소장보좌
 - 인사말 1 : 온조(恩藏)상임이사(와세다대)
 - 인사말 2 : 하나이(花井)소장(와세다 산학 연구소)
 - 주제발표 :
 - 제1주제 : 한국 보험시장의 환경 변화와 보험회사의 위험관리(강호, 보험연구원 원장)
 - 제2주제 : 대재해 파생상품과 보험회사 위험관리 (모리다이라 소우이치로(森平爽一郎), 와세다대)
 - 제3주제 : 보험모집제도의 변형과 보험업계의 대응 (쿠리야마 야스시(栗山 泰史), 일본손해보험협회 고문)
 - 제4주제 :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ERM 규제 (이흥무, 와세다대)
 - 토론 : 강호, 모리다이라 소우이치로(森平爽一郎), 쿠리야마 야스시(栗山泰史), 나카이테 사토시(中出哲), 이흥무

개최배경

보험연구원, 와세다대학 산업경영연구소, 와세다대학 보험연구소는 양국의 보험산업 발전과 상호 연구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한국보험시장의 환경 변화는 크게 인구고령화, 저금리-저성장,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인구고령화가 근본적인 변화라면, 이에 따른 저금리와 저성장은 보험산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 보다 가시적인 환경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는 규제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한국 보험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회사는 금리역마진과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위험 등 금리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보장과 소득보장 수요 증가에 따라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



강호 원장은 한국 보험시장의 환경 변화를 인구조령화, 저금리-저성장,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한국 보험회사는 금리위험과 보험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에 한국 보험산업에서 위험 및 자본 관리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한국 보험회사는 위험관리를 주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다. 여기에 보험회사는 국제적인 규제강화의 흐름에도 직면해있다.

따라서 보험산업에서 위험 및 자본 관리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장래의 시장 불확실성뿐 아니라 규제의 변화까지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회사는 우선 금리위험에 대비하여 자산과 부채의 경제적 불일치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 또한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옵션이나 금리연동형 상품의 최저보증이율도 중요한 위험관리 대상이며,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장수 위험 관리 및 건강보험시장의 인프라도 필요하다. 나아가 보험회사는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경영진이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위험관리를 주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더불어 보험 감독 당국은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제2주제 대재해의 정의를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사망률의 급격한 변동을 가져오는 재해를 말하며, 손해보험의 경우는 대형 자연재해 또는 인재를 의미한다. 한편 대재해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대재해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그 예로는 팬데믹(pandemic) 리스크 대상 대재해 채권, 지진을 대상으로 하는 대재해 채권, 기상이변 및 태풍 리스크 대상 파생상품 등이 있다.

실제로 일본 JA공제는 대재해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팬데믹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 손해보험사들은 지진과 기상이변을 대상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손해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최근 파생상품에 대한 판매자격 강화로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어서 향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3주제 일본 금융당국은 모집형태의 다양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새로운 수요, 민원의 증가에 따라 판매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오랜 검토 끝에 2014년 5월 23일 모집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내용 중 전체 모집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정보의 제공, 고객 의향 파악, 업무운영에 관한 조치(체제정비 의무 등), 현장검사(외부위탁자

모리다이라 소우이치로(森平 爽一郎) 와세다대 교수는 팬데믹(pandemic) 리스크 대상 대재해 채권, 지진을 대상으로 하는 대재해 채권, 기상이변 및 태풍 리스크 대상 파생상품 등 대재해 파생상품을 소개하고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쿠리야마 야스시(栗山 泰史) 일본손해보험협회 선임위원은 모집형태의 다양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새로운 수요, 민원의 증가에 따라 2014년 5월 모집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보험업법을 소개했다. 끝으로 이홍무(李洪茂)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의 보험회사 ERM 관련 규제를 소개하고 강화된 내부통제 요구에 따른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을 논하였다.



로부터의 현장검사 등) 등이며, 특정 보험모집인(그 규모가 커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모집인) 또는 보험중개인에 적용되는 사항은 장부서류의 비치, 사업보고서 제출 등 이다.

새로운 모집체계하에서의 대리점 경영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우선 제1선에서의 모집실무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는 모집원에 대한 교육, 지도, 관리가 더욱 철저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비교판매를 하는 승합대리점은 체제정비가 필요하고, 특정 보험모집인의 경우에는 감독과 검사에 대한 대응 준비 및 경영비용 증대가 예상된다. 한편 보험회사로부터의 구상도 강화될 것이다.

제4주제 일본의 보험회사에 대한 ERM 관련 규제는 회사법, 금융상품거래법, 보험감독규제, 지급여력(solvency margin) 규제 등이 있다.

2006년 6월 제정하고 2008년 4월부터 적용된 금융상품거래법은 이사회에 의한 내부통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명시한 일본판 SOX(Sarbanes-Oxley Act)법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5월 시행한 회사법은 내부통제를 운영 이사회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 금융당국은 2014년 4월 보험회사 감독지침(감독규정)에 “지급여력의 자기평가”와 “업무연속체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

는 보험검사 규정에 통합적 위험관리 태세에 대한 검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EU의 ORSA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러한 규제의 변화 속에서 일본 보험산업은 위험계수가 ERM에 미치는 영향, 계량화의 문제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관계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 의료비 관리를 위한 공·사 협력 방안

행사명 : 제7회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 공동주관행사

163

행사개요

- 일시 : 2014. 10. 22(수) 09:00 ~ 15:30
- 장소 : 조선포털 1층 그랜드볼룸
- 주관 : 보험연구원, 파이낸셜뉴스
- 주제 : 효율적 의료비 관리를 위한 공·사 협력 방안
- 발표 및 토론
 - 개 막 사 : 권성철 파이낸셜뉴스 사장
 - 축 사 : 강 호 보험연구원장
 - 기조연설 :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
 - <세션 1> 국내 의료비 관리실태 평가 및 정책 방향
 - 사 회 : 이기효 교수(인제대 보건대학원)
 - 제1주제 : 국내 의료비 증가 추이와 과제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 제2주제 :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관리 정책 (윤석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
 - 제3주제 : 의료보장체계 확립을 위한 공·사 협력(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주제발제자 3인 + 김진홍 과장 (금융위원회 보험과)
 - <세션 2> 주요 국가의 의료비 관리 경험과 공·사 협력
 - 사 회 : 정우진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
 - 제1주제 : 주요국의 의료비 관리 경험과 정책 비교(제롬 마트론돌라 RGA재보험

사 홍콩·동남아시아 전략기획국장)

- 제2주제 : 주요국 의료비 관리와 공·사 협력 현황(안정훈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연구기획실장)

- 제3주제 : 호주의 의료비 투명성 제고 정책 (임혜선 스위스재보험 이사)

- 토 론 : 주제발제자 3인 + 오영수 박사(김안장법률사무소) + 아담 미첼스키 (BNP파리바카디프 부사장)



개최배경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사 건강보험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다가 민영부문이 범국민적인 보험으로 성장하여 공·사 건강보험의 협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벌어지고 의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 건강보험의 협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 의료비 관리와 의료보장체계를 재정하여 비용이 과다 혹은 다소 부담되는 자동차보험이나 소액 실손의료보험 등 의료비 부실청구 가능성이 있는 보험의 지급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건실한 의료비 보장체계 확립 및 의료비 증가세 둔화를 위한 공·사 건강보험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공·사 건강보험의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1세션

제1세션에서는 의료비 증가세 둔화 및 보장체계 확립 두 가지 목표의 동시달성을 위한 공·사 건강보험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민영의료보험이 공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 건강보험 제도의 연계발전이 필요하며, 또한 공·사 협력을 통한 소비자권의 증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제1주제 발표에 나선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 요인 및 추세를 파악하고 관리 정책 등을 다각도로 진단했다.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제도정비 미흡 등에 대한 공·사 건강보험의 협력적 대응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결론적으로 의료비 관리가 건강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주장했다.

제2주제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윤석준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의료비 증가 위험요인의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평가 DB구축과 관리서비스 제공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급여코드 표준화, 의료비 비교

공시, 진료수가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한 비급여 의료비 심사평가 정책과 각각의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제시했다.

제3주제 발표에서는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 조용운 연구위원이 건강생활서비스 등을 통한 의료비 상승 위험요인 관리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비급여 코드 표준화 등을 통한 의료비 투명성 정책, 비급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의료비 심사 평가 방법 등을 설명했다.



제2세션

제2세션에서는 주요국의 구체적인 공·사 건강보험 연계 상품 및 제도를 파악하고 의료비 증가세 둔화 대책(의료비 투명성 제고 정책, 건강위험요인 관리정책, 상품정책)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별로 매우 다양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상황과 유사



주요국의 구체적인 공·사 건강보험 연계 상품 및 제도를 파악하고 의료비 증가세 둔화 대책(의료비 투명성 제고 정책, 건강 위험요인 관리정책, 상품정책)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국가별로 매우 다양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상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해외사례에 집중하여 우리나라에 현실적 시사점을 주었다.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공·사 건강보험에 대한 평가 및 협력적 정책방향을 파악하여 정부 정책과 보조를 같이 할 수 있기를 제안했다.

한 성격을 가진 해외사례에 집중하여 우리나라에 현실적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제롬 마트룬돌라 RGA재보험사 홍콩-동남아시아 전략기획국장은 미국에서 게이트키퍼(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대신해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은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보험사들이 질병과 상해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개인 정보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정보를 보유한 보험사들은 의료기관과 보험가입자 사이의 서비스와 보험금 등을 조절하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선진국 보험사들은 모두 데이터 업체라고 해도 될 만큼 고객 개인에 대한 정보가 많은데 한국 보험사들도 풍부한 데이터 확보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트룬돌라 국장은 한국에서는 보험가입자들을 위해 보험사가 병원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는 게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보험사가 병원 등 의료제공기관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없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이 결과로 대부분의 한국 보험사들은 다양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상품을 내놓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료비 관리에 대한 공·사 협력이 가장 잘 되고 있는 나라로는 호주가 있다. 호주 보험제도는 공공보험인 메디케어와 사적보험(PHI)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혜선 스위스재보험 한

국지사 이사는 호주도 한국처럼 공공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민간보험의 영역이라면 서 환자가 공공의료기관으로 갔을 때 스스로 ‘공공환자’와 ‘사적환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고 했다.

호주의 경우 더 많은 국민들이 공공환자 대신 사적의료환자를 선택하게 될 경우 메디케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감소한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 공적비용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적보험의 실손보험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비용은 줄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가입으로 국가건강보험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다는 주장이고 오히려 환자 부담비용의 감소로 더 오래 더 많은 치료를 받는 현상이 있어 국가건강보험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늘어나는 의료보험료를 통제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로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 건강기술평가)도 거론됐다. HTA는 병원 등 의료기관과 협업해 효과적인 의료 기술을 검증하는 기관이다. HTA보고서는 보험 약관에 쓰인 의료 기술이나 약가격 재협상의 근거로도 쓰이고 있다. 다음으로 안정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최근 한국의 신의료기술을 평가하기 위



한 제도 도입에 대해 거론하고 현존하는 수술법 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술법도 신HTA에 의해 인정받으면 보험 약관에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HTA는 과학적 근거가 담보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반발이 적을 수 있는 부분이며 HTA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보험 보장 영역에 있어 사적보험과 공공보험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각국 HTA 현황도 소개했다. 영국에서는 HTA 결과를 이용해서 효율적 영역은 공공보험이, 나머지 영역은 사적보험이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캐나다는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이 지불가능(affordable)한가, 대체가능한 기술이 있는가, 인종·법적·사회적인 요소를 모두 반영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적절한 의료비를 책정한다. 태국은 형식적으로는 전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3개 공적보험군으로 나뉘어 있다. HTA는 이 3개군의 보험 급여 수준을 책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Chapter

3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Reinsurance and Systemic Risk: The Impact of Reinsurer Downgrading on Property-Casualty Insurers
- Financial Crisis and Capital Management
- 글로벌 금융위기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
- 한국경제 & 금융시장 전망 Stagnation vs Reflation

Reinsurance and Systemic Risk: The Impact of Reinsurer Downgrading on Property-Casualty Insurers

행사명 : 제11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168

행사개요

- 일시 : 2014. 2. 18(화) 15: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Reinsurance and Systemic Risk: The Impact of Reinsurer Downgrading on Property-Casualty Insurers
- 발표 및 토론
 - 발표 : 박소정 교수(서울대학교)
 - 토론 : 임준환 실장(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

개최배경

본 포럼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이슈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위해 개최되었다.

주제발표

최근 미국 보험회사들의 신용등급 자료를 이용하여 재보험회사와 손해보험(property-casualty) 회사의 상호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은 그 재보험사와 거래하고 있는 원수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원수보험회사의 주가는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하락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이는 위험이 보험회사의 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재보험 거래로 인한 시스템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지어 세계 3대 재보험사 중 한 회사가 완전히 파산하는 경우를 가정한 경우에도 단지 2%의 보험회사만이 신용등급이 하락하며, 1%의 보험회사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분석한 기간 동안 실제로 재보험사가 파산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재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지에 대해 강한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이번 연구는 재보험회사로부터 기인할 수 있는 시스템위험에 대한 연구의 시작점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확실한 결론에 다다르기까지에는 아직 많은 다른 요인들에 대한 고려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한 보험회사의 지급불능이 같은 그룹 내에 있는 다른 보험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흥미 있는 주제가 될 것이다.

Financial Crisis and Capital Management

행사명 : 제12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169

행사개요

- 일시 : 2014. 4. 17(목) 14: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Financial Crisis and Capital Management
- 발표 및 토론
 - 발표 : 오익환 전무(한화생명)
 - 토론 : 임준환 실장(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

개최배경

본 포럼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이슈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주제발표

미국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노출된 시장위험액 전체에 대해 헤지하는 방법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금융위기 당시 시장급변 상황에서 이러한 완전 헤지는 기업 운영 입장에서 비용이 너무 크다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회사 적립금에 여유가 있을 시에는 자본운용에 어느 정도의 재량이 허용되는 것이 고려되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 당시 극단적인 시장 상황에서 **basis risk**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서 완전 헤지 원칙이 회사 전체의 전략적 자본운용에 있어서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100% 헤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30년짜리 장기 상품을 단기 관점에서 운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여러 보험회사들이 **under hedging**과 **over hedging**에 대한 고려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과거 40~50년간 높은 수익을 누려왔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많이 팔면 팔수록 이익이 증가했으며 이 때문에 위험관리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시장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위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위험평가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미래에 대한 위험평가를 결정론적 방법이 아니라 확률론적 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위험 계수를 기반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들이 잘 반영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위험평가 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

행사명 : 제13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170

행사개요

- 일시 : 2014. 9. 26(금) 14: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글로벌 금융위기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
- 발표 및 토론
 - 발표 : 김종창 자문위원(보험연구원)
 - 토론 : 임준환 실장(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

개최배경

본 포럼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이슈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주제발표

20세기 글로벌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금융회사의 방만한 경영과 감독당국의 감독소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저에 깔려있는 원인은 제어하기 어려운 인간의 탐욕과 이를 제도적으로 막지 못한 리스크관리의 실패이다.

금융위기 이후 개별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와 시스템리스크관리의 조화가 강조되고 있다. 바젤 3은 자본의 질과 양 강화, 레버리지규제, SIB(Systemically Important Bank) 규제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금융안정감시위원회(FOS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를 신설하였다.

금융위기 당시 산 자와 죽은 자의 위기대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산 자는 영업과 위험관리를 대등하게 보고 분권적이며 수평적인 조직체계를 갖추었으며 위험에 민감한 문화를 가진데 반해 죽은 자는 영업을 우위에 두고 경직된 조직체계와 위험을 경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Goldman Sachs는 CDO 평가방법의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였고 이에 CFO는 2006년 12월 시장악화에 대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07년 4월 말에는 CDO 전액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에도 적극적 위험관리를 위해 2008년 위험 노출액의 69%를 축소하였고 레버리지 비율을 2007년 26.2%에서 13.7%로 낮추었다. 또한 다양한 교육과 강의를 통해 직원들에게 위험관리를 교육하고 있다.

반면 Lehman Brothers는 무모한 낙관론을 바탕으로 과욕의 전략을 구사하였다.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위험관리를 왜곡함으로써 영업전략과 위험관리 간의 균형을 상실하였고, 유동성 위험 관리를 외면하고 위험관리 지배구조를 왜곡하였으며 감독당국과 이사회에 보고를 고의로 누락하였다.

한국경제 & 금융시장 전망

Stagnation vs Reflation

행사명 : 제14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171

행사개요

- 일시 : 2014.12.4.(금) 14: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한국경제 & 금융시장 전망
Stagnation vs Reflation
- 발표 및 토론
 - 발표 : 신동석 리서치센터장(삼성증권)
 - 토론 : 황인창 연구위원(보험연구원)

개최배경

본 포럼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이슈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주제발표

한국경제는 노동가능 인구가 점점에 도달하고 중국 고정자산투자 붐이 일단락됨에 따라 저성장 저물가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또한 후행적이고 소극적인 정책대응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금융시장의 미래는 원화강세, 부동산가격 정체, 금융과 기업의 좀비화로 이어지는 Deflation 경로와 원화약세, 부동산가격 상승,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Reflation 경로의 기로에 있다.

한국 노동가능 인구는 2014년을 정점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0.4%씩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

서 노동력 요인만 고려하면, 한국의 장기 추세 성장률은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볼 때 1.3%로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대 중국 수출성장이 2000년대 한국 성장의 35%를 설명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붐이 일단락되고 있다는 것도 한국 경제성장이 추세적으로 둔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반면 한국 정책당국은 1990년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 지나친 낙관론, 수출 지상주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해 적절한 정책대응에 실패했고 중앙은행의 경직적인 통화정책 운용으로 시장의 신뢰마저 상실하여 정책의 무기력을 자초하고 있다.

금융시장 또한 구조적인 경상흑자로 인한 원화초강세, Fed(미국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디플레 위험 확산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경제의 Reflation을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과 환율이라는 두 가지 중요 변수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전세수요를 매입수요로 유도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여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한편 원화약세를 유도하고 수입물가 하락을 저지함으로써 국내 기대인플레이를 부양하여 한국 경제의 Reflation이 가능할 것이다.

Chapter 4

Global Insurance Forum

- 터키 보험시장의 현황과 국내 보험회사의 진출 가능성
- 중국 금융산업 동향과 금융회사의 중국 사업
- 인도네시아 금융산업 현황과 우리은행의 진출 사례
- Actuarial Professions around the World:
General Comparison and Personal Experiences

터키 보험시장의 현황과 국내 보험회사의 진출 가능성

행사명 : 제4회 Global Insurance Forum | 주관행사

174

행사개요

- 일시 : 2014. 1. 22(수) 14: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터키 보험시장의 현황과 국내 보험회사의 진출 가능성
- 발표 : Hülya Catpınar Balci(Economic Counsellor, 주한 터키대사관)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보험산업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보축적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며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감독 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국내 보험산업 국제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주제발표

최근 세계경제 상황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상반기 터키 경제는 3.7% 상승하였다. 민간소비와 공공부문 소비 및 정부 고정투자가 성장에 기여하였다. 2013년 수출 증가율은 7.3%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 비해 3.0%p 증가하였다. 상품 및 시장 다양화를 위한 정책추진과 터키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EU의 경제회복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10년간 터키 경제는 건실한 재정구조 및 금융시스템, 사기업의 역할 증진,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개선, 사회통합 개선 등의 요인으로 성

공적인 개혁을 할 수 있었다. 2002년 터키 인플레이션은 29.8%를 기록하였지만 2012년 6.2%를 기록하였다. 또한 1인당 GDP는 3,492달러에서 10,514달러로 증가하였다. 정부 부채는 GDP의 74.0%에서 36.2%로 감소하였고 예산적자는 GDP의 11.5%에서 2.1%로 감소하였다.

2012년 세계 총보험료는 4.6조 달러를 기록하였고 그 중 터키는 108억 달러를 기록하며 38위를 기록하였다. 터키의 1인당 보험료는 146달러로 세계에서 62위를 기록하였다.

터키 보험시장에는 손해보험회사 36개사, 생명보험회사 6개사, 연금회사 18개, 재보험사 1개사가 있다.

터키 보험시장의 낮은 침투도와 성장잠재력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외국계 보험회사의 지분매입이 증가하고 있다.



터키 보험시장은 중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고 있음.

중국 금융산업 동향과 금융회사의 중국 사업

행사명 : 제5회 Global Insurance Forum | 주관행사

175

행사개요

- 일시 : 2014. 4. 3(목) 14: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중국 금융산업 동향과 금융회사의 중국 사업
- 발표 : 안유화 박사(자본시장연구원)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보험산업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보축적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며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감독 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국내 보험산업 국제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주제발표

중국 보험회사의 자산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10월 기준 중국 보험업계 자산총액은 7조 9,86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6.9% 증가하였다. 2012년 말 보험회사 130개사 중 중국계는 79개사, 외자보험회사는 51개사이나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현저하게 낮다. 구체적으로,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총액에서 외국계 보험회사의 비중은 약 1.2% 정도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외국계 보험회사 비중은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20년간 한·중 양국간 무역,

투자, 민간 교류는 급성장하였으나 한·중 금융협력은 실물경제 통합에 비해 미흡하다. 국내 중국계 금융기관은 국유 상업은행 5개사, 증권사 2개로 제한적인 형태로 진출하였다.

중국의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외자 생명보험회사 보유지분을 50% 한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어시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지점설치 요건이 있으며 외자계 보험중개채널에 대한 지분소유가 24.9%로 제한되어 있다.

한·중 금융협력을 위해 감독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금융관련 법규 제정 및 개선, 건전성 및 회계기준의 제정, 신용평가, 자금조달 공동시장 구축과 선진 리스크 관리기법 공유 등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중국 보험시장은 외국계 보험회사에 대한 높은 진입제한으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현저하게 낮음.

인도네시아 금융산업 현황과 우리은행의 진출 사례

행사명 : 제6회 Global Insurance Forum | 주관행사

176

행사개요

- 일시 : 2014. 7. 15(목) 16: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인도네시아 금융산업 현황과
우리은행의 진출 사례
- 발표 : 장우균 차장(우리금융지주)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보험산업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보축적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며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감독 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국내 보험산업 국제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주제발표

우리은행은 2011년 효율적인 해외사업 추진을 위해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글로벌 타겟 시장을 선정하였다. 10대 타겟 시장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러시아, 미국, 일본, 인도, 중국, 호주, 베트남 등의 국가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타겟 시장별 특성에 따라 신규점포 개설, 현지법인 전환, 전략적 제휴 체결 등을 추진하였다.

우리은행은 진출모델 다각화, 단계적 M&A 추진, 전략적 제휴 강화,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IT역량 제고 등 5개의 추진전략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였다. 첫 번째, 진출모델 다각

화를 위해 목표시장 특성에 따라 기존 한국계 고객 중심의 진출모델과 더불어 현지고객 중심의 진출모델을 확대 적용하였다. 두 번째, 해외 M&A 추진 시, 소형 M&A 우선 추진을 통한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중대형 M&A를 추진하였다. 세 번째, 미래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직접 진출에 따른 영업 위험 또는 법률적 제한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략적 업무제휴를 추진하였다. 네 번째, 현지법인, 지점 설립 및 M&A 등 신규진출 지역 증가 및 현지화 전략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글로벌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M&A, 법인/지점 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및 현지 영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IT부문 글로벌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우리은행은 5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글로벌 타겟 시장에 진출하였음.

Actuarial Professions around the World : General Comparison and Personal Experiences

행사명 : 제7회 Global Insurance Forum | 주관행사

177

행사개요

- 일시 : 2014. 11. 21(금) 16: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Actuarial Professions around the World: General Comparison and Personal Experiences
- 발표 : Jason Zhang, Chief Pricing Actuary (RGA)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보험산업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보축적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며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감독 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국내 보험산업 국제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주제발표

계리사는 일반적으로 수학이나 통계 전공을 하며, 여러 번의 시험을 통과해야한다. 전통적으로 계리사들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 연금 및 근로자 보험금 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하였다. 최근 계리사들은 규제기관, 사회보장, 노동 기관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은행, 자산관리, 투자 등의 금융기관 및 위험관리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계리사는 법적, 기능적, 관리자 등의 3가지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첫 번째, 법적인 역할의 경우 공식 계리사는 책임준비금 및 자산 적정성에 대한 평가, 상품 기록 등을 담당하고 있다. 두 번째, 상품 개발과 가격 책정, 평가와 재정 보고, 영업과 마케팅, 투자와 ALM, 위험관리, 재보험,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 세 번째, 계리사 경험을 바탕으로 CEO, CFO, CRO 등 전반적인 관리자 임무를 수행한다.



계리사 실무는 각 국별로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문화와 규제 환경에 따라 다름.

Chapter

5

금융정책포럼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글로벌 보험그룹 자기자본규제 논의
- 우리나라 보험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글로벌 보험그룹 자기자본규제 논의

행사명 : 제11차 IAIS 한국포럼 | 주관행사

180

행사개요

- 일시 : 2014. 8. 29(금)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보험회사 지급능력과 시스템위협 대응방안 관련 IAIS 주요 현안
- 발표
 - 격려사 : 박흥찬 IAIS 집행위원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 주제발표 :
 - 제1주제 : IAIS 정례회의 결과 브리핑
(은호익 금융감독원 ISIA 팀장)
 - 제2주제 : 국제 자기자본 규제 최근 논의동향
(강수원 금융감독원 조사역)
 - 제3주제 : ComFrame 브리핑 및 국내 규정과의 차이 분석
(목진영 보험개발원 팀장)
 - 제4주제 : 향후 의제 및 일정 논의
(은호익 금융감독원 ISIA 팀장)

개최배경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보험감독의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로 그 활동이 보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고 글로벌 금융그룹 규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글로벌 보험그룹 감독을 위한 국제적

기준 제정이 주요 이슈화 되고 향후 보험감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과 금융감독원은 국제적 보험감독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보험산업의 국제화와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보험업계 및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IAIS 한국포럼”을 2012년 2월 7일 창설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며 올해 제11차 포럼을 개최하였다.

발표내용

IAIS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부각된 주요 글로벌 금융그룹 감독방안의 보험그룹 적용을 위한 주요 글로벌 보험그룹 식별방안 및 감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들 보험그룹에 추가적 자본(HLA; Higher Loss Absorbency)을 부과하는 기준이 될 국제적인 자기자본 규제방안(BCR; Basic Capital Requirement)을 논의 중에 있다. 또한 글로벌 보험그룹에 대한 공통감독체계(ComFrame)의 정량적 감독기준인 국제적 보험자본기준(ICS; Insurance Capital Standard)도 개발 중에 있다. 이번 IAIS 한국포럼에서는 IAIS의 정례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에서 이러한 국제적 보험자본규제의 논의 경과가 발표되고 이에 따른 국내 보험감독에 대한 향후 영향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공통감독체계상의 전사적위험관리(ERM) 내용과 국내 규정과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우리나라 보험정책 평가와 과제

행사명 : 금융정책포럼 | 주관행사

181

행사개요

- 일시 : 2014. 9. 30(목)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우리나라 보험정책 평가와 과제
- 발표 : 성대규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개최배경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인식되는 보험업 전반에 보험정책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금번 금융정책포럼은 보험과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보험정책 수립과 집행에 오랜 기간 관여하다 퇴직한 전임 당국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보험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발표내용

보험정책의 정의와 목적을 간략히 설명하고 우리나라 보험정책을 보험규제 완화, 보험소비자보호 강화, 보험판매채널 개편, 자동차 보험제도 및 보험회사준법체계 확립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그리고 보험정책 과제로 그림자규제 혁파, 보험소비자보호 강화, 보험산업의 지속성장기반 구축, 보험판매채널 정책, 보험상품개발 혁신 정책 및 보험업법 개정 관련 잔여 쟁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특히 정책 입안자로서의 오랜 경험과 통찰을 가미하여 보험 규제 및 감독과 관련된 정책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였다.

Chapter

6

고령화포럼

- 공·사연금의 유기적 연계방안과 연금정보 시스템의 구축 방안
- 국민이전계정의 개념과 활용
- 의료자원의 수급 현황과 문제점

공·사연금의 유기적 연계방안과 연금정보 시스템의 구축 방안

행사명 : 제2회 고령화포럼 | 주관행사

184

행사개요

- 일시 : 2014. 2. 11(수) 16:0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공·사연금의 유기적 연계방안과 연금정보 시스템의 구축방안
- 발표 : 김원섭 교수(고려대학교)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2014년 상반기에 고령화연구실 주관으로 추진된 고령화포럼에서 연금포털 해외사례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견해를 청취하고 공·사연금포털 구축을 위한 의견을 듣고자 기획되었다.

주제발표

공·사연금포털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강화로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적부분의 연금포털이 추진되고 있지만, 공·사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정보공유 및 활용에 따른 장점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사연금포털 구축 시 고려할 수 있는 형태로 스웨덴, 영국 모형을 혼합하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모형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즉, 영국형은

정보제공대상의 포괄성이 높지만 제공정보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는 빠른 정보의 접근성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성, 나아가 정보이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제한적인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웨덴형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끝으로 성공적인 공·사연금포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금체계 내적 및 외적 요인 모두가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연금체계 내적 접근으로는 거시적 및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성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성 강화가 우선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금체계 외적 접근 방법으로는 운영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 촉진, 영세사업장 등의 공동실사체계 구축, 국민연금의 통합연금정보서비스인 내연금의 개선, 노후소득보장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체로서 ‘공·사연금협회’(가칭)의 구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이전계정의 개념과 활용

행사명 : 제3회 고령화포럼 | 주관행사

185

행사개요

- 일시 : 2014. 3. 19(수) 16:30
- 장소 : 보험연구원 8층 소회의실
- 주제 : 국민이전계정의 개념과 활용
- 발표 : 황남희 박사(보건사회연구원)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고령화에 따른 노후 부양 체계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주는 국민이전계정을 이해하고자 기획되었다.

주제발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비중 증가는 자녀세대의 부양부담 확대로 이어져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공적 및 사적 소득이전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어, 세대 간 경계를 이해하려는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공적이전 측면의 노후부양부담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사적이전의 부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국민이전계정은 이를 가능하게 해준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계정에 연령을 도입하여,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세대간 생애부양체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분석 틀이다. 국민이전계정은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또한 전 생애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는지 측정하여, 이들 소비와 생산의 차이(소비-생산=생애적자)가 전

생애에 걸쳐 어떻게 재배분 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고령화 시대에 유용한 정책적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이전계정에서 은퇴한 노년층의 주요 소득 재원은 자산재배분과 공적이전, 사적이전의 세 가지 형태가 된다. 국가별로 노후부양체계를 비교해본 결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 유럽, 남미 지역보다 사적이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국민이전계정을 통해 노후소득원천(자기 준비, 사적이전, 공적이전)과 현 근로세대의 부양 부담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세대의 자기 노후준비 여력, 생애 주기에서 순 부양자로 지내는 기간에 대한 국가별 특성 비교가 가능하다.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해 근로세대의 보험가입 여력을 국가간 비교하여 장기적인 보험산업 전망에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료자원의 수급 현황과 문제점

행사명 : 제4회 고령화포럼 | 주관행사

186

행사개요

- ☐ 일시 : 2014. 11. 26(수) 16:00
-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 주제 : 의료자원의 수급현황과 문제점
- ☐ 발표 : 오영호 박사(보건사회연구원)

개최배경

최근 OECD Health data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병원의 병상과 MRI 등 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OECD 평균 보다 많은 편인 반면, 의료 인력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은 편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시설이나 의료장비에 대한 과도한 투자 경쟁은 비급여 의료비를 높이는 공급 측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세미나는 의료자원 배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개최되었다.

주제발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기관들의 종별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초래되고 있는 보건의료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의료기관 간 역할과 기능이 정립되지 않아, 의료기관 간 시설의 대형화와 고급화 경쟁으로 병상과 고가의료장비 보유경쟁이 심화되는 문제이다. 고가의료장비의 총량적인 공급 과잉도 문제지만,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특

히, 100병상 미만의 병원급이나 의원급 등에서 큰 폭으로 고가의료장비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의료자원 공급과잉과 과당경쟁으로 비효율적인 진료현상이 심화되는 문제이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서 의원은 외래중심의 1차 의료와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고, 병원급은 입원 위주의 진료,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은 고도의 전문적 의료서비스와 연구를 담당하도록 분업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의원에서도 병상을 설치하여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도 경증 환자에 대한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등 비효율적인 진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의료자원 편중으로 인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고, 의료이용 적정화를 위한 체계적 의료이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Chapter 7

기타 행사

- 한국연금 어디로 갈 것인가?
- 건전한 사회와 보험 - 보험사기와 소비자 보호 -
- 고령화시대, 건강 및 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 파트너십 구축
- 2014년 기자간담회 - 핵심연구과제 설명회 -

한국연금 어디로 갈 것인가?

행사명 : 한국연금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 | 공동주관행사

188

행사개요

- 일시 : 2014. 4. 25(금) 14:00
- 장소 : 충주 청풍리조트 힐호텔 회의실
- 주최 : 보험연구원, 한국연금학회, 국민연금연구원
- 주제 : 한국연금제도의 미래와 진로
- 발표 및 토론
 - 개 회 사 : 김용하 한국연금학회회장
 - 환 영 사 : 강 호 보험연구원장
 - 사 회 : 김원식 교수(건국대)
 - 주제발표 :
 - 제1주제 : 공적연금의 현안과제와 발전방안
(석재은 한림대 교수)
 - 제2주제 : 사적연금제도의 사회안전망 역할과
개선방안(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
연구실장)
 - 토 론 : 박동석 대표(뉴스토마토)
손성동 실장(미래에셋은퇴연구소)
오영수 박사(김&장 법률사무소)
이용하 박사(국민연금연구원)
임웅재 논설위원(서울경제신문)

개최배경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보험과 사
보험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
라 한국연금학회와 보험연구원은 소득복지환경

을 감안하여 공적 안전망 중심의 복지체계를 재
검토하고 사적연금 제도개선을 통해 사적안전망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외형적
으로 선진국의 연금제도 틀을 갖
추고 있으나 공적연금은 공적연금대로 사적연
금은 사적연금제도 아직은 제자리를 잡지 못하
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노년부양비 급증으로 2009년 재정안정화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
간의 형평성,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2014년 한림대에서 한국 공적연
금 진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1,214
명 대상), 설문조사대상의 39.5%가 국민연금보
험료를 더 내더라도 국민연금을 현재보다 더 받
아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
한 경우는 21.1%에 불과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
상을 통한 연금제도 개선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대상의 53.4%
가 공무원, 군인, 사학교원 등이 일반국민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
하고 있어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제도가입 단계의 경우 별도의 퇴직연금세제체계를 마련하고 속성별 연금세제 차등화, 다양한 확정기여형 제도 도입을 통해 사적연금가입을 적극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0인 이하 영세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근로자 등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국가차원에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도운영단계의 경우 근로자의 투자선택폭 확대를 위해 적립금 규제방식을 질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연금수급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미국식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 할 때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을 통한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특수직역 연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확대, 연금크레딧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수급권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2주제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악화로 사적안전망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미흡으로 사적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12월 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전체사업장 대비 16.0%, 개인연금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의 17.2%에 불과하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6%, 1200만 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8.3%로 이들의 경우 사적보장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사적보장을 강화하고 중위소득계층의 안정적 노후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적안전망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 프로세스별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도가입 단계의 경우 별도의 퇴직연금세제체계를 마련하고 속성별 연금세제 차등화, 다양한 확정기여형 제도 도입을 통해 사적연금가입을 적극 유인할 필요가 있다. 즉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개인연금 보조금 제도와 퇴직연금의 매

칭기여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10인 이하 영세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근로자 등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국가차원에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사적연금제도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퇴직급여제도가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5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는 공제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추가기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제도운영단계의 경우 근로자의 투자선택폭 확대를 위해 적립금 규제방식을 질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연금수급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미국식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직금부제도 간의 통산성 제고를 통해 사적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을 법정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급부단계의 경우, 55세 이상 퇴직자의 93.8%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복지권 차원에서 일부는 일시금 수령을 인정하되, 나머지 부분은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는 부분 연금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엄격한 연금수령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종신연금 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사회와 보험 - 보험사기와 소비자 보호 -

행사명 : 2014년 보험 관련 연합학술대회 | 공동주관행사

190

행사개요

- 일시 : 2014. 8. 20(수) 14:00
- 장소 : 오크밸리 대연회장
- 주최 : 보험연구원, 보험학회, 리스크관리학회, 연금학회, 보험법학회
- 주제 : 건전한 사회와 보험 - 보험사기와 소비자 보호 -
- 발표 및 토론
 - 개 회 사 : 이근창 한국보험학회장
 - 환 영 사 : 강 호 보험연구원장
 - 사 회 : 성주호 교수(경희대)
 - 주제발표 :
 - 제1주제 : 보험사기 : 연구성과, 현황 및 쟁점 (김현수 순천향대 교수)
 - 제2주제 : 모럴해저드와 보험사기와의 관련성에 대해(오쿠라 마히토 나가사키대학 교수)
 - 제3주제 : 보험사기청구에 대한 보험계약법상의 입법논의 -한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장경환 경희대 교수)
 - 제4주제 : 보험금의 사기적 청구를 둘러싼 문제점 (후쿠다 야스오 일본대학 교수)
 - 토 론 : 박기억 변호사
 - 송윤아 연구위원(보험연구원)
 - 이득로 상무(손해보험협회)
 - 이준호 국장(금융감독원)
 - 장덕조 교수(서강대)
 - 한기정 교수(서울대)

개최배경

우리나라 민영보험산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8위의 규모에 이르렀고,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 사적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사적분야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보험산업이 사적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사적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적안전망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사적안전망과 더불어 보험산업의 중차대한 과제 중 하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험사기를 꼽을 수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보험산업 발전의 심각한 저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산업이 사적안전망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보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세미나의 주제를 보험사기로 정하고, 보험산업과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보험문화 조성 and 이를 통해 보험산업의 사회적 역할 증대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한국보험학회,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한국연금학회와 공동으로, 보험관련 연합학술대회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보험산업 발전의 심각한 저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산업이 사적안전망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보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1주제 1990년대 말부터 보험사기에 의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보험사 및 감독당국의 노력으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증가했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범죄형에서 일상형으로 전방위적으로 파급되고, 연구분야는 도덕적 해이 및 최적계약에 대한 이론 및 선행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에 그동안의 보험사기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보험사기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며 보험사기 관련 쟁점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보험사기의 규모는 민영보험 3.4조 원, 국민건강보험이 5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서울대, 보험연구원, 2013). 각종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보험사기 조사인력 확충 및 조사인력의 전문화, 보험사기 억제에 위한 보험정보 조사 권한의 법제화, 보험 연대성의 회복을 위한 민영보험 역할의 정립, 불완전판매 근절을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 등이 있다.

또한 향후 연구과제로는 사회적 연대성 측면에서 보험사기 분석, 혐의자(일반인)를 직접 조사하는 질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 경성사기자에 대한 최적 제재 연구, 경성사기자의 재범률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교화방안, 연성사기 억제를 위해 내적 인센티브 작동을 위한 자기통제 방안, 억제이론과 사회학적, 심리학적 및 민속학적 접근의 융합 등을 제시했다.

제2주제 오쿠라 마히토 나가사키대학 교수는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모델 해저드 또는 보험금 사기 중 어느 한쪽만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발표를 통해 모델 해저드와 보험금 사기와의 연관성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사기를 억제하기 위한 투자를 늘렸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노력 수준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발표자는 보험계약자의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 수준은 보험금 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 보험회사의 투자수준에 대해 약한 의미에서 단조감소 함수가 된다. 기존 모델 해저드 모델과는 달리, 보험계약자는 무사고시에 사기 청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전부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엄밀하게 올바른 노력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금 사기 억제를 위한 투자수준은 보험회사

김헌수 교수는 향후 연구과제로 사회적 연대성 측면에서 보험 사기 분석, 혐의자(일반인)를 직접 조사하는 질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 경성사기자에 대한 최적 제재 연구, 경성사기자의 재범률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교화방안, 연성사기 억제를 위해 내적 인센티브 작동을 위한 자기통제 방안, 억제이론과 사회학적, 심리학적 및 민속학적 접근의 융합 등을 제시했다

가 보험금 사기 발생 가능성의 실현을 대신하여 보험계약자의 노력에 대한 추가적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제3주제 제3주제 발표자로 나선 장경환 교수는 발표를 통해 사기청구조항의 입법방향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 번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의 사기에 의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그 청구액 전부에 대해 면책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두 번째 사기청구된 부분이 경미하거나 다른 보험의 목적에 속하는 경우 등보험자의 면책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면책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세 번째 보험자는 사기청구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사기청구시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네 번째 보험자는 전부허위청구자에 대해 사기청구사실

을 안 날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3자의 사기청구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그 사기 청구의 사실을 확인하는 때에 지체없이 지급거절 및 그 사유를 해당 피보험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의 해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보험자가 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에게 배상을 한 선의의 피보험자에 대해 제3자의 사기청구로 인한 면책으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다.



보험은 다수의 가입자가 각자의 위험률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로 이루어지는 보험기금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악용의 염려를 이유로 보험기금의 확보, 유지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의 입법을 미룰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거래현실이 방지된다면 다수의 선의의 가입자마저 부당이익의 유혹을 받게 되고 이는 보험제도의 준립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손해보험협회는 2014년 1월에 '보험금 부정청구 대책실'을 마련하고 보험금 부정청구 신고창구 '보험금 부정청구 핫라인'을 설치했다. 보험금 부정청구 대책실이 집적한 데이터는 사고관련 사항, 보험관련 사항, 행위자 관련 사항, 부정 청구 내용, 보험금 부정청구 행위 사실 또는 그 우려가 인정되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정보, 상기 사실 내용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 참고가 되는 정보 등이다.

제4주제 일본의 보험사기 현황을 보면

2012년 전국 경찰이 적합한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사건이 177건에 피해액은 5억 2,613만 엔에 이른다. 보험금 청구소송건수는 2008년 민사행정사건 약 225만 건에서 2012년 약 170만 건으로 건수만으로는 감소세로 보인다. 사기적 청구는 가장한 사고, 고의사고(복수의 공모자 존재), 실제로 발생한 사고를 악용(보험금 과대 청구, 과잉 진료) 등이 있다.

일본 손해보험협회는 2014년 1월에 '보험금 부정청구 대책실'을 마련하고 보험금 부정청구 신고창구 '보험금 부정청구 핫라인'을 설치했다. 보험금 부정청구 대책실이 집적한 데이터는 사고관련 사항, 보험관련 사항, 행위자 관련 사항, 부정 청구 내용, 보험금 부정청구 행위 사실 또는 그 우려가 인정되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정보, 상기 사실 내용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 참고가 되는 정보 등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은 2단계로 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업계 내의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보험사기죄는 설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설정의 현실성은 없다고 보았다. 발표자는 부실 신고를 제한하기 위해 부실신고면책조항을 인정해야 하고 영국과 같은 그레이의 보험금청구사례 등록제도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화시대, 건강 및 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 파트너십 구축

행사명 : 국회 퓨처라이프포럼 정례세미나 | 주관 : (재)한국미래연구원

194

행사개요

- 일시 : 2014. 9. 11(목) 07:30 ~ 08:5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제 : 고령화 시대, 건강 및 소득보장을 위한 공·사 파트너십 구축
- 발표 및 토론
 - 환 영 사 : 김무성 의원(새누리당 대표최고의원)
심상정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원혜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사 회 : 김용하 교수(순천향대)
 - 주제발표 : 강 호 보험연구원장
 - 토 론 : 김원식 교수(건국대)
이동욱 국장(보건복지부)
정기택 원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개최배경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 및 소득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공·사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보험연구원 강호 원장은 복지 환경을 감안하여 공적 안전망 중심 복지체계를 재검토하고 사적안전망 역할이 강화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주제발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재원확보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지출측면에서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질병예방 등에 대한 관리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급여의료비는 의료수가 통제 등을 통해 일정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급여의료비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총의료비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먼저 비급여 의료행위를 체계화하는 비급여코드 표준화와 비급여 의료비 청구를 급여의료비처럼 심사평가원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제3자 보험금 청구제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더불어 의료비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공·사적연금을 포함한 총소득대체율이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 및 소득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공·사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복지 환경을 감안하여 공적 안전망 중심 복지체계를 재검토하고 사적안전망 역할이 강화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사적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때는 먼저 중위소득층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OECD 국가의 평균은 70%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50% 수준에 불과해 사적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확보가 중요하다.

사적연금 확대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높여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노후소득이 불안정하여 중위소득층 이하가 빈곤화될 우려가 있는 점이다.

먼저 중위소득층에 대해서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주의 자금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퇴직연금가입의 의무화 추진이 이루어지고 사적연금 세액공제를 확대를 통해 중소득층 이하의 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 제도적으로 연금지급을 완전히 보장하는 연금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적연금 가입지원을 통해 연금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고 개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연금가입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14년 기자간담회 - 핵심연구과제 설명회 -

행사명 : 2014년 기자간담회 | 주관행사

196

행사개요

- 일시 : 2014. 6. 17(화), 6. 24(화), 6. 25(수)
11:00 ~ 13:30
- 장소 : 달개비(중구), 홍보석(여의도)
- 주제 : 보험연구원 핵심연구과제 설명회
- 발표
 - 환영사 : 강 호 보험연구원장
 - 발표자 : 윤성훈 연구조정실장(보험연구원)
 - 참석자 : 일간지, 경제전문지, 방송사 기자,
전문지 기자단, 기타매체 기자 등
53명

개최배경

우리 원은 경제·금융·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현안 이슈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험산업 지속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실질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핵심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심도있게 연구된 핵심연구과제 결과가 세미나, 공청회, 보고서, 포럼 등을 통해 정책·경영전략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제발표

2013년에는 인구구조 고령화, 저성장·저금리, 재무건전성 강화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보험산업 발전의 실질적 대안 제시를 위해 ① 재무건전성 강화 로드맵 제시, ② 공·사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③ 보험산업 환경 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제시, ④ 보험산업 경쟁정책 합리화 방안, 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 및 운영구조 재정립 방안 등 「5대 핵심연구과제」를 수행했다.

2014년에는 2013년도에 수행했던 핵심과제 중 재무건전성, 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정책수립에 내실을 기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① 재무건전성 규제 로드맵에 대한 연구, ②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보험사 대응전략, ③ 고령화시대의 사적 안전망 역할 제고 방안 등을 후속 핵심연구과제로 선정하였고, 추가과제로 ① 보험회사의 수익구조 개선, ② 소비자 신뢰도 제고, ②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신성장 동력 발굴 등과 같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함을 설명했다. 또한 이와 같은 핵심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각종 정책세미나, 경영전략세미나, 국제세미나, 기고, 보고서 발간 등의 연구활동이 준비되어 있음을 홍보했다.



III.

2015년 주요 연구 계획

뉴 노멀 시대 경영전략 모색

보험산업 규제변화 대응

신성장 동력 발굴

노후보장 강화

뉴 노멀 시대 경영전략 모색

19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및 보험회사 경영에 대한 시사점

임준현(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저성장 및 저금리의 장기화 가능성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및 소비자 권익 증시, 인구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및 장수위험 증대, 기후 변화 및 사회적 안전의식 제고 등으로 보험상품 수요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는 향후 보험산업의 구조적 환경변화 요인을 파악하고 환경변화가 향후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험회사의 효율적 비용관리

김해식(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산업은 저성장 지속을 전제로 고성장·저효율 경영에서 저성장·고효율 경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력감축을 통한 비용절감은 향후 성장역량 확보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비용구조를 재검토하여 비용절감 기회

를 모색하고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비용관리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익성 유지와 향후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상품, 프로세스 전반의 비용효율성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비용구조(인건비, 판매비, 간접비, 자산운용, IT)를 분석하고 인력, 상품, 업무절차 측면에서의 비용효율성을 평가하는 한편, 보험회사 그룹별 비용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보험산업의 빅 데이터 활용 현황 및 과제

임 준(연구위원) | 보고서

최근 빅 데이터가 글로벌 경제의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빅 데이터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험산업 경쟁력이 보험계리사의 수리분석 역량으로부터 신규 외부 데이터 활용이나 새로운 언더라이팅 분석 도구 개발 등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국내 보험산업의 빅 데이터 활용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빅 데이터 시대 보험산업 및 감독당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손해보험 언더라이팅 능력 제고 방안

김석영(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스스로 언더라이팅 하여야 하나, 많은 일반손해보험 보험요율들이 재보험사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제도적 측면과 보험회사 측면에서 일반손해보험 언더라이팅 능력 제고 방안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보험요율 산출 및 재보험 수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손해사정 정책 및 경영전략 연구

송윤애(연구위원) | 보고서

최근 손해사정의 공정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한 입법활동이 활발하다. 이중·과잉규제 가능성을 감안하여, 손해사정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손해사정과 관련하여 외부적으로는 공정성 제고에 대한 요구와 내부적으로는 비용절감에 대한 압박이 심화됨에 따라, 경영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손해사정의 의의, 규제, 시장, 경영전략에 대해 분석·평가한 후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험산업 규제변화 대응

200

IFRS 4 phase 2가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조재린(연구위원) | 보고서

2018년 도입예정인 IFRS 4 phase 2(개정보험회계기준)는 보험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정보험회계기준은 위험을 고려한 경제적 자본 산출을 요구하고 있어 위험중심경영을 더욱 유인할 것이다.

이는 보험료 산출, 상품 구성, 자본배분, 성과 평가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IFRS 4 phase 2가 보험회사 가치평가 및 수익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보험회사 경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금융·보험업 세제 연구

정원석(연구위원) | 보고서

세제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업권간 특수성 차이 등을 충분히 고려한 세제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관련 세제는 위험보장을 통한 복지수준 향상에, 은행·증권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관련 세제는 저축 활성화 등 금융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어 금융업권간 세제의 목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금융업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제체계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금융·보험업에 관련된 세제체계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 후 세제의 정합성 제고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험회사의 신채널 활용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한 연구

황진태(연구위원) | 보고서

시장이 성숙해지고 IT기술 및 통계학적 분석 방법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마케팅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의 금융업 진출, 중국 알리바바의 온라인 소셜펀딩서비스, 바이두와 텐센트 등 IT기업의 금융업 제휴 등 고객에 대한 플랫폼이 다양화되고 있다.

보험시장이 성숙해질수록 신규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는 만큼 고객창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해외사례 분석을 활용하여 다양한 융합 및 신채널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채널모형을 보험회사에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predictive modeling과 관련한 해외활용 사례를 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신채널과 마케팅 전략에 따른 금융소비자 편익, 보험회사 수익성, 틈새시장 개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신성장 동력 발굴

201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저성장 극복 사례 연구

전용식(연구위원) | 보고서

저성장·저금리와 보험산업 성장정체를 일찍 경험한 주요국 보험회사들의 성장정체 극복 전략과 성과를 분석한다.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 주요국 보험회사들의 보험산업 성장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등의 추진 과정과 성공·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내 보험산업의 역량에 기반하여 성장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보험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전략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동차보험 국제 경쟁력 비교 및 해외진출에 대한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 | 보고서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경쟁력을 분석한다. 시장점유율, 성장성, 수익성 등을 중심으로 현지에서 경쟁하는 해외 보험회사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한다. 본 연구는 국내 자동차보험의 국제 경쟁력 비교를 통해 손해보험의 해외사업 활성화 방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신흥시장(Emerging Market) 현황 및 보험회사 진출 전략

변혜원(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도 중장기 진출전략 수립 유도, 해외진출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2013년 11월). 본 연구는 신흥시장의 경제 및 보험시장 현황, 해외 보험회사의 진출 사례 등을 분석한 후, 신흥 보험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성장 전략

이태열(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진입하고 타업권 및 산업 내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소형 보험회사의 지속 성장 여건이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지배력, 판매 채널 활용, 브랜드 이미지 등에서 대형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데다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중소형 보험회사들의 다양한 성공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중소형 보험회사들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규제 환경 및 경영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노후보장 강화

202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제고 방안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고령화시대의 신성장 동력인 퇴직연금시장에서 은행 등 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회사의 역할이 미흡하다.

은행의 퇴직연금시장점유율(2014년 6월 기준)은 52.1%에 이른 반면, 보험회사는 30.7%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정부의 퇴직연금중심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시장 판도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등 퇴직연금시장 환경 변화와 해외 보험회사의 운용전략 등을 감안하여 보험회사의 시장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년연장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 및 대응

강성호(연구위원) | 보고서

60세 이상으로의 정년의무화 조치는 노동비용 증가와 은퇴자산 증가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주에게는 퇴직급여 및 사

회보험 부담 증가가 초래될 수 있으나, 피용자에게는 연금자산 증가 등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급여 추정(임금피크 고려) 및 개인소득 증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년연장에 따른 이해관계 분석을 통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퇴직급여(퇴직연금) 및 개인소득 증대에 따른 약관대출 활성화 및 50대를 겨냥한 다양한 건강 및 연금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및 제도 개선 방안

전성주(연구위원) | 보고서

근로자 선택폭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기금형 제도 도입 방향을 발표하였으나, 세부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기금형제도 정착을 위한 수탁자 책임, 수급권 보호, 감시기능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선진국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기금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가입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V.

FY2014 연구 관련 활동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제공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고령화리뷰

각종 대외 연구 활동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보험·금융 도서 정보제공

1.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보험금융연구』는 1990년 8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월에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 학술지’로, 2006년 1월부터는 ‘등재학술지’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 학술지는 보험 및 금융학계 교수 및 전문가들에게 학술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데 발간 목적을 두고 있으며, 순수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관련 연구논문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발간 초기에는 민영보험 분야에 국한된 학술지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2005년부터는 금융 및 사회보험 분야로 게재 범위를 넓혔으며, 2008년 보험연구원 출범 이후에는 공·사보험과 금융전반을 아우르는 보험금융 분야 전문학술지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보험금융연구』는 2008년 6월 20일부터 ‘연구윤리 기준’을 시행함으로써 논문의 작성 및 심사과정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투고편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는 연간 발간 횟수를 3회(3월, 7월, 11월)에서 4회(2월, 5월, 8월, 11월)로 조정하였다. 『보험금융연구』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국내외의 보험·금융 전공 교수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연구원에서 편집간사를 맡고 있다. 2014년에 게재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보험금융연구 제25권 제1호 (2014년 2월)	제 목	저 자
	보험상품의 핵심상품설명서 개선효과 추정: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황진태, 변혜원, 김해식
	주택연금의 장수리스크 감소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종신형 즉시연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양재환, 여운경, 김혜경
	인덱스연금 판매를 통한 변액연금 최저보증리스크의 자연헤징 효과에 대한 연구	송창길, 이창수, 허연
	국제주식시장 수익률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김순호
보험금융연구 제25권 제2호 (2014년 5월)	제 목	저 자
	RBC를 고려한 보험회사 포트폴리오 최적화	최창희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정책공조 효과 평가	주동헌
	A Method of Hedging Mortality Rate Risks in Endowment Product Development	김창기, 최양호
보험금융연구 제25권 제3호 (2014년 8월)	다단계 확률론적 방법론을 이용한 변액보험의 수익성 분석	심현우
	제 목	저 자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보험회사 전환 가능성 분석	전용식
	생명보험회사 보험설계사의 조직동일시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귀자, 김종인, 정세창
보험금융연구 제25권 제4호 (2014년 11월)	기업 업력과 정부소유 은행과의 관계	이상욱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이 입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이창우
	제 목	저 자
	국민연금 연금자산이 개인의 예상소득대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추정 방법론을 중심으로	김현수, 최기홍
보험금융연구 제25권 제4호 (2014년 11월)	암 위험인식과 암보험 가입: 역선택 가능성	김대환
	Hidden Effect of Monetary Surprises on US Unemployment	유재인
	사회적 책임 활동, 배당정책과 기업가치	이지혜, 변희섭

2.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제공

동향분석실은 경제·금융·보험과 관련한 환경변화 및 동향을 파악하고 현안 이슈 발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KiRi Weekly』, 『보험동향』,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Korean Insurance Industry』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주간 웹저널인 『KiRi Weekly』는 매주 보험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으며, 2009년 4월부터 2014년 11월 말까지 총 309호가 발표되었다. 경제·금융·보험 전반의 주요 이슈 등을 검토 및 분석하여 이슈, 포커스, 글로벌 이슈, 금융시장 주요지표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슈는 경제와 금융 및 보험 산업의 변화를 시의 적절하게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거나 실물경제와 보험에 관한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결과 등을 제공한다. 포커스는 경제·금융·보험 일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배경, 진행과정, 전망 및 시사점 등으로 구성하여 작성된다. 글로벌 이슈는 국제적인 경제, 금융,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연구소재 발굴 및 새로운 경영전략 도입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고 있다. 국내외 금융시장 주요지표는 금융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내외 금리·환율·주가·국채유가 및 금 시세의 추이를 표와 그래프로 제공한다.

『보험동향』은 연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발간되며, 테마진단, 경제금융 동향, 국내보험시장 동향, 해외보험시장 동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테마진단은 보험산업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경제금융 동향은 우리나라 보험시장 변화 요인 검토를 위해 보험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경제·금융환경 변화를 모니터링 한다. 국내보험시장 동향은 보험회사들의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집계하여 종목별 보험료, 종목별 구성비,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판매채널, 경영수지 등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변화 원인 등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해외보험시장 동향은 데이터 집적이 가능한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보험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 게재된 보험동향 테마진단은 다음과 같다.

	호 수	제 목
2014년 보험동향 테마진단	봄호	·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 동향과 시사점 · 세계 100대 은행과 국내 은행의 수익성 비교와 시사점
	여름호	· 간편심사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 · 보험회사의 GA 채널 활용에 대한 소고: 자회사 형태를 중심으로
	가을호	· 위안화 활용도 제고 합의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와 시사점
	겨울호	(2015년 2월 발간 예정)

한편, 동향분석실은 보험시장을 둘러싼 금융·경제 환경변화 및 보험시장의 변화 등을 영문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와 『Korean Insurance Industry』를 제공하고 있다.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는 보험회사들의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경영수지, 보험료,

종목별 구성비,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투자수익률, 판매채널 등을 간략히 분석하여 분기별 1회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Korean Insurance Industry』는 보험산업과 관련한 1년 동안의 국내외 경제·금융환경 변화 및 보험산업 관련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보험산업의 재무상태, 보험료, 수익·비용, 판매채널 등에 대한 검토 및 분석결과를 연 1회 영문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3.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은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 행태와 보험수요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연 1회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01부터 2014년까지 총 14권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보험가입 실태 및 소비자 수요파악을 목적으로 하여 매년 동일하게 시행되는 기본조사와 해당 연도에 보험업계의 이슈가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이슈별 조사로 구분된다. 설문조사 결과는 상품개발, 영업정책, 채널활용 등 보험회사들의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감독 당국의 정책수립 시 요구되는 자료를 집적·분석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와 통계치 등은 보험회사 영업기획 및 판매실무 분석 자료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연구를 위하여 제공되고 있다.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적절한 현안 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보험연구원 내 T/F를 구성하여 추진되었으며, 2014년 5월 조사대행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하여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2014년 설문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일반인(세대주 포함) 총 1,200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고, 표본추출방법은 인구통계변수인 연령·성별·지역·수입규모·결혼유무 등을 기준으로 전국 비례별로 층화표본 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기본조사 항목으로 보험가입률, 가입건수, 가입경로, 가입이유, 가입상품 만족도, 향후 상품 및 채널별 가입 의향, 선호 가입채널 및 이유, 금융기관 선호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슈별 설문으로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금융역량 및 보험 이해도, LTCI(Long-term Care Insurance)의 가입성향과 한계 요인, 은퇴자산 선택행위에 관한 분석,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변화 인지 여부, 은퇴 이후 소득원에 대한 정보, 은퇴 이후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시 위탁의향, 해약/효력상실 해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었다.

이슈별
설문내용
(2001~2014)

연 도	주요 이슈
2001년	금융겸업화,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외국계 보험회사 선호도
2002년	자동차보험 갱신, 건강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2003년	주5일 근무제도에 따른 보험상품 선호도, 금융겸업화,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외국계 보험회사 선호도
2004년	자동차보험 선호도, 종신보험, 민영건강보험, 연금보험상품
2005년	건강 및 간병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선택 방법, 채널만족 및 방카슈랑스 관련, 자산관리서비스
2006년	민영건강보험, 고령화 및 연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보험회사 브랜드, 교차모집, 보험사기
2007년	보험회사 이미지 및 영향 매체,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요인, 보험소비자지수 관련
2008년	보험회사 및 판매자 신뢰도와 만족도,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대비, 보험광고
2009년	자동차보험제도, 금융상품판매전문업, 가계위험, 보험사기
2010년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대비, 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 관련), 자동차보험 가입실태, 농협보험, TV 홈쇼핑 보험가입 의향, 금융소외(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서비스 및 대출 관련)
2011년	연금, 고령화, 건강보험, 보험금 지급방법, 보험회사 및 설계사 이미지
2012년	경제환경에 따른 보험상품 선택 추세 변화,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 및 충성도 문제, 가격경쟁 방식, 판매채널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금, 소비자보호
2013년	방카슈랑스 채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실태, 보험에 대한 이해, 보험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 노후생활 및 연금, 금융자산
2014년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금융역량 및 보험 이해도, LTCI(Long-term Care Insurance)의 가입성향과 한계 요인, 은퇴자산 선택행위에 관한 분석,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변화 인지 여부, 은퇴 이후 소득원에 대한 정보, 은퇴 이후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시 위탁의향, 해약/효력상실 해지, 개인정보 보호

4. 고령화리뷰

고령화연구실이 주관하여 발간하고 있는 『고령화 리뷰: International Ageing Trend』는 인구고령화와 관련한 통계, 정책 및 현안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보다 심층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시하는 인구고령화 동향지다. 특정 주제에만 한정되어 집적되고 있는 여타 연구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모든 정책 변화와 통계들을 집적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7월 발간된 고령화리뷰 3호 목차는 I. 테마진단, II. 이슈와 정책 동향, III. 통계 동향, IV. 부록(통계표)으로 구성되어 있다. 테마진단은 인구고령화와 관련한 중요한 현안 혹은 심층분석이 필요한 이슈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구, 복지 및 재정, 노후소득, 건강, 노동 및 빈곤의 전 분야에서 고령화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통계, 연구결과, 이슈들을 조사한 후,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이슈와 정책 동향 그리고 통계 동향에 포함되도록 분류하였다. 올해의 이슈와 정책 동향에서는 주로 새로 도입된 정책이나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각 이슈마다 보다 심화된 관련 자료와 연구결과 및 분석들을 소개하여 시사점을 찾고 있다. 올해의 통계 동향에서는 정부 기관에서 발표되거나 기사화된 주목할 만한 통계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주요 통계변수들을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중심으로 실고 있다. 올해 발간된 고령화 리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	제목	저자	
I. 테마진단	미래 여성노인의 노후준비 실태와 시사점	오승연	
II. 이슈와 정책 동향	1. 인구	고령층의 민영보험 가입현황 및 시사점	김동겸
	2. 복지 및 재정	2014년 복지에산의 주요 내용과 평가	김유미
	3. 노후소득	일본의 연금분할제도 도입 이후 이혼율 변화	이상우
	4. 건강	Well dying 기획 Ⅰ- 우리나라와 미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황과 시사점 고령화의 그늘: 노인 고독사	김미화 김미화
	5. 노동 및 빈곤	시간선택제 실시가 여성 및 고령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근로자 고용	김미화 김유미
III. 통계 동향			
IV. 부록 (통계표)		김미화, 김유미	

5. 각종 대외 연구 활동

5.1 세미나 주제 발표 및 토론

선진 보험·금융 시장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금융 및 보험산업 종사자들과의 교류를 증진 시키고자 각종 금융관련 세미나에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

행사 내용

- 주최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 일시 및 장소 : 2014년 8/13(수) 14: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발표 : 강동수 박사(KDI 금융연구부장)
- 사회 : 김재현 교수(상명대)
- 토론 : 박영석 교수(서강대), 성주호 교수(경희대), 이인열 차장(조선일보), 류건식 실장(보험연구원), 어기구 박사(한국노총중앙연구원), 최문석 책임전문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 토론자로 나선 류건식 실장은 한국 퇴직연금은 단기상품 위주로 투자돼 수익률이 낮다면서 장기상품 위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약형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 사업자인 금융기관을 금융감독원에서 감독할 수 있지만, 기금형 연금은 어떤 근거로 누가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부실한 운용으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 기금을 일일이 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감독을 한다면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금융산업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세미나

행사 내용

- 주최 : 정우택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15(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제1주제 : 금융법과 경쟁법의 조화방안(법무법인 율촌 박성범 변호사)
- 제2주제 : 행정지도로 인한 금융회사 법규리스크 완화방안 (보험연구원 이승준 연구위원)
- 사회 : 정호열 교수(성균관대)
- 토론 : 김용범 국장(금융위), 김성하 국장(공정위), 민성기 상무(은행연합회), 홍대식 교수(서강대), 강지원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이승준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금융회사 입장에서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른 결과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제기관 간 행정지도에 따른 협조절차를 정비하고, 금융관련 법령상 행정지도 근거를 명확히 해 '공정거래법' 제58조 상 적용제외의 근거로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령상 명확한 근거없이 이루어지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에게 맡겨야 하나 - 국내보험회사 유치허용 방안 모색(안) -

행사 내용

- 주최 : 국회의원 정희수, 국회의원 이명수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11(화) 14:00,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제 : 보험회사의 바람직한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방안
- 발표 1 : 해외환자유치 현황 소개 (보건산업진흥원 한동우 실장)
- 발표 2 : 보험사 해외환자유치 허용 필요성 (보험연구원 이창우 박사)
- 토론 : 황승현 과장(보건복지부), 김진홍 과장(금융위), 김양균 교수(경희대), 이제경 전무(라이나생명), 신현희 박사(한국병원경영연구원)



- 이창우 박사는 보험사를 통한 해외환자 유치는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보험사가 가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으로까지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을 주장했다. 국내보험사들의 해외환자 유치사업 모델로는 ▲외국현지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외국인들이 사고발생시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의료기관 해외진출시 이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담보로 보험상품을 개발해 함께 해외진출을 꾀하는 방법 ▲또 이렇게 만들어낸 보험상품에 기존 유치업자들의 모집능력을 결합해 3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소비자권의 증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행사 내용

- 주최 : 금융소비자연맹, 국회의원 이종걸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13(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1주제 : 손해사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협성대 조규성 교수)
- 2주제 :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
방향(국회 금융공정거래팀 김정주 입법조사관)
- 토론 : 김명규 교수(목원대), 송윤아 박사(보험연구원),
박삼수 교수(영남대), 박종화 상무(손해보험협회),
이기욱 국장(금융소비자연맹), 김진홍 과장(금융위원회)
- 송윤아 박사는 보험사의 손해사정능력은 조직내부의 기술이나 단순한 기능을 뛰어넘는 노하우를 포함한 종합적인 능력으로 이 역량의 외부위탁은 고객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손해사정 관련 법규는 손해사정의 공정성이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 보다 효율적으로 회복가능하도록 손해사정의 투명성 강화와 정보비대칭성 완화 등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5.2 작업반, 회의 참여

국회, 정책 및 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라 2014년 금융위원회 규제개혁 T/F 참여를 비롯한 각종 작업반 활동, 자료 제공, 자문, 회의 참석 등을 수행하여 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적이고 경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기여했다.

각종 T/F	작업반명 / 주최	참여자
	보험산업 경쟁 혁신 T/F / 금융위원회 보험과	이태열 외
	금융회사 인센티브제 개선 작업반 / 금융위원회 소비자기획단	박선영
	사적연금법 제정 검토를 위한 작업반 / 금융위원회 연금팀	전성주 외
	보험회사 사기조사 초동대응 강화 작업반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송윤아 외
	ORSA 도입 준비 실무작업반 / 금융감독원	장동식
	보험매뉴얼 가이드라인 작업반 / 금융감독원	이태열
회의/ 자문/ 포럼	작업반명 / 주최	참여자
	연금포털 T/F 자문/ 금융위원회 연금팀 (2014.1)	이태열
	금융위 자체평가위원회 / 금융위원회 (2014.1)	안철경
	고령친화금융산업 시장규모 추정방법 자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4)	정원석
	금융발전심의회 /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2014)	안철경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 / 금융감독원 (2014. 6)	전용식
	100세 시대 보험산업 역할 은퇴연구소장 좌담회 / 한국보험신문(2014.6)	류건식
	공용차량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침 전문가 간담회 / 국토교통부(2014.7)	김경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사업 회의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2014.7)	전용식
	차등보험요율제 회의 참석 및 자문 / 예금보험공사(2014.7)	조영현
	승용차 공동이용 운영개선 자문 / 서울시 (2014.7)	기승도
	금융감독 자문위원회 회의 / 금융감독원(2014.7)	변혜원

6.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6.1 국제세미나 개최

보험연구원은 선진 보험·금융 시장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보험산업 종사자들의 국제적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매년 해외의 저명한 보험·금융 산업 전문가 및 학자를 초대하여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은 2008년에 시작되어 2014년 7회를 맞이하였다. 2014년에는 ‘건실한 의료비 보장체계 확립 및 공·사 건강보험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건실한 의료비 보장체계 확립 및 공·사 건강보험 협력 방안	
	소주제	발표자
2014년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2014년 10월 22일)	국내 의료비 증가 추이와 과제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관리 정책	윤석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의료보장체계 확립을 위한 공·사협력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요국의 의료비 관리 경험과 정책 비교	제롬 마트룬돌라 RGA 홍콩·동남아시아 전략기획국장
	주요국 의료비 관리와 공·사 협력현황	안정훈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연구기획실장
	호주의 의료비 투명성 제고 정책	임혜선 스위스재보험 이사

6.2 OECD 보험 및 사적 연금위원회 참석

보험연구원은 1993년 7월부터 재무부 국제금융국 주관 OECD 보험작업반에 소속되어 관련 정책자료 작성과 보험·사적 연금위원회(Insurance and Private Pension Committee)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OECD와 관련한 일련의 회의에서 한국정부가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 한국 OECD 대표부 참사관과 협조하여 올바른 결정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할 때나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보험정책 수립방향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작성하여 정부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1995년 6월부터 1996년 3월까지의 OECD 보험위원회의 추가요청자료 작성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1996년 6월의 제57차 OECD 보험회의부터 2014년 12월의 제94차 OECD 보험회의까지 한국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2014년에는 6월과 12월에 OECD 사적연금 작업반 회의와 보험·사적 연금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OECD 보험·사적 연금위원회는 시장중심의 보험 및 사적연금 시스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장기화된 저이자율 환경이 보험회사와 연기금에 미치는 영향, 기관투자자와 장기 재원조달, 대재해리스크 경감 및 재원조달, 연금상품 및 보증옵션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규제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도 OECD 보험·사적 연금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정책연구에 적극 활용하고 보험산업 발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6.3 LIMRA-LOMA 연례전략이슈회의 참석

LIMRA는 보험산업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회사들에 리서치, 컨설팅, 평가, 개발, 준수, 규정 서비스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이며, LOMA는 능력 있는 보험설계사와 같은 유능한 임직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개발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솔루션을 제시하는 회사이다. 이들 두 회사에서 주최하는 LIMRA-LOMA의 연례전략이슈회의는 아시아권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CEO, 임원, 주요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마케팅, 판매채널, 기업경영 등의 트렌드와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이다.

2014년 11월 6일(목) 개최된 2014년 아시아지역 판매채널회의에서는 “디지털 세계에서의 판매전략”이라는 대주제와 3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지역 소셜 네트워크 세대에 적합한 판매채널 전략, 전속설계사 생산성 증진 방안, 보험판매 채널변화에 대한 대응 및 방카슈랑스 관련 디지털화 경향 등에 대한 발표와 자국 경험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7. 보험·금융 도서 정보제공

자료실을 통해 보험연구원의 업무 및 조사연구 활동 지원과 보험회사 임직원 및 보험분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교수들에게 도서 정보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금융·보험 관련 전문도서 및 최신 정보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정리·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최신 자료까지 국내보험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NAIC, ISO, SOA, CAS, CII, A.M. Best, LOMA, LIMRA, ABI, 일본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일본손해보험협회, 일본생명보험협회 등 해외 주요 보험 관련 단체들의 보고서와 단행본, 통계자료, 법률서적 등을 광범위하게 소장하고 있어 보험지식의 보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모든 자료가 전산화되어 「Maestro-Y」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외부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자료 검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10월 말 현재 단행본 24,900여 권, 학위논문 1,800여 권, 정기간행물 350여 종, 세미나 자료 및 보고서 2,300여 종, 비도서 자료 120여 종이 소장되어 있다.

V.

일반 현황

경영비전

연혁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임직원 현황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2014년 KIRI Weekly 발간 목록

1. 경영비전

본 원은 보험을 중심으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세계화·융합화·겸업화 등의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산업은 물론이고 국내외 금융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금융연구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2. 연혁

2008년 2월 26일 개원한 이후 2008년을 금융권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는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인력·예산 등에 있어서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였으며, 2010년 11월 26일에는 독자적인 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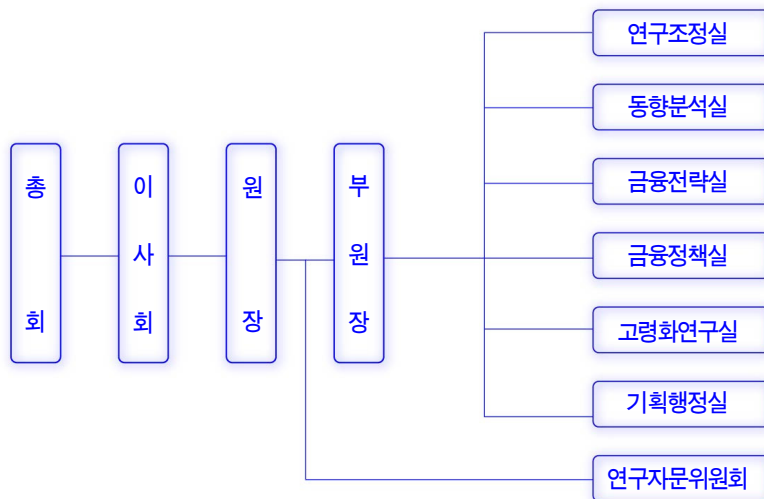
3대 강호 원장 취임 이후에는 보험산업의 장기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연구 외에도 보험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핵심 연구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전문연구기관에 걸맞은 유연한 고용 및 성과시스템 아래 유능한 연구인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연구직군에 대해서 엄격한 실적평가를 통한 재임용제도를 구축하고, 연구직군과 행정직군을 포함한 전직원에 대해 실적에 따른 성과보상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연구기관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연구 전 과정에서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였다. 그 결과 현재 금융산업의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여 보험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종합금융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주요 연혁	일 자	주요 내용
	1995년 9월	보험연구소 설치
	1996년 9월	인터넷 문헌정보 서비스 개시
	1999년 9월	보험개발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
	2004년 7월	제1회 국제세미나 개최
	2006년 1월	보험개발연구, 등재학술지로 선정
	2007년 12월	보험연구원 설립 금감위 승인
	2008년 2월	보험연구원 개원, 초대 나동민 연구원장 취임
	2009년 2월	보험개발연구, 보험금융연구로 제호 변경
	2010년 4월	2대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취임
	2010년 11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창립
	2013년 4월	3대 강호 보험연구원장 취임

3.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3.1 조직도



3.2 총회

일반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있다. 총회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사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2014년 12월 말 현재 생명보험회사 24개사, 손해보험회사 19개사가 사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매회계년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소집되며, 임시총회는 안전발생 시 의장이 소집한다. FY2014에는 2014년 2월 1차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총 6회의 총회가 개최되었다.

3.3 이사회

보험연구원은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다. 이사회는 보험연구원의 연간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기타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결정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협회장 2인), 원장, 사원대표이사(생명보험대표 5인, 손해보험대표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FY2014에는 2014년 2월 제1차 이사회를 시작으로 총 3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3.4 연구자문위원회

보험연구원은 연구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연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보험·금융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연구자문위원과 위원장을 위촉한다.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된다. FY2014년 연구자문위원회는 2015년 연구사업 계획에 대한 자문을 위해 2014년 10월에 개최되었다.

4. 임직원 현황

(2014. 12월 말 현재)

원장	연구직			행정원	초빙연구위원	비서/사서 /기사	합계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조원				
1	27	22	4	8	2	3	67

5.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원장

|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성명	직위	최종학위
강호	원장	The University of Georgia 경영학 박사

부원장

|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궐위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안철경	부원장/실장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마케팅, 판매채널

부원장직속 대외협력센터

- | 외부용역의 수행
- | 외부용역관련 행정처리
- | 기타 외부용역과 관련된 업무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기승도	수석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계학 박사	통계학, 자동차보험
김경환	수석연구원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정책, 보험 관련 법규
장동식	수석연구원	숭실대학교 정보통계학 박사과정 수료	리스크 감독, 생명보험
이정환	선임연구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거시경제, 계량경제
박정희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마케팅

연구조정실

- 연구사업계획의 기획 및 수립
- 연구사업계획의 일정 및 실적 관리
- 연구관련 대외업무 및 직원의 대외활동 관리
- 각종 국제회의, 학술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기획
- 연구관리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등 각종 연구 관련 위원회의 주관
- 신규연구사업 개발 및 업무 조정
- 대내외 연구원 홍보 및 소통
- 발간물의 편집 및 교열
- 홈페이지, 인터넷, 사무관리전자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 기타 연구 관련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윤성훈	실장(겸직)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국제경제, 응용미시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국민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경영, 보험정책, 재무관리
김선아	부장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연구행정 업무
변철성	수석담당역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홍보, 전산 업무
이유리	연구조원	고려대학교 언론학 석사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동향분석실

- 국내외 경제, 금융동향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 국내 보험시장 동향분석 및 전망
- 국내 보험회사 재무분석
- 해외 보험시장 정보의 조사 및 분석
- 금융 및 경제관련 주요통계의 집적관리
- 보험수요 예측모델 개발
- 보험가입성향 등 수요자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 OECD 등 국제기구와 관련한 연구 및 지원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윤성훈	실장(겸직)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국제경제, 응용미시
김석영	부실장	Arizona University 수학 박사	보험계리, 리스크관리
임준	연구위원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론
변혜원	연구위원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응용미시
김진익	수석담당역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재무관리
최원	선임연구위원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리스크관리, 보험경영
채원영	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 석사	응용통계
이소양	연구위원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이아름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 석사	금융, 무역
이해랑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 박사과정	소비자정보, 공정거래

금융전략실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일반생명보험 관한 연구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재보험에 관한 연구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재보험기법 등에 관한 연구
 자산운용 연구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및 재무건정성감독 연구
 회사별 경영성과 평가 연구
 보험회계 및 세제 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임준환	실장	Brow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국제금융, 파생금융
전용식	연구위원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계량경제, 금융경제, 환경경제
조재린	연구위원	Queen's University 통계학 박사	비모수회귀분석, 최적디자인
최창희	연구위원	The University of Iowa 경영과학 박사	보험계리, 경영과학
조영현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시장미시구조, 자산가격평가, 위험관리
김세중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금융경제, 보험계리
황인창	연구위원	KAIST 경영공학 박사	자산가격평가, 위험관리, 재무계량경제
이경아	연구원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이혜은	연구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김혜란	연구원	건국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김미현	연구조원	건국대학교 정보통신경영학 석사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금융정책실

보험산업 정책 및 제도개선과제 개발연구 및 지원
 보험회사 합병, 겸업화, 진입·퇴출 등 보험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
 보험모집 및 채널에 관한 연구
 업무행위규제,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지배구조, 자율규제 등에 관한 연구
 금융감독제도, 예금보험제도 등 금융하부구조에 관한 연구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에 관한 연구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시장에 관한 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이태열	실장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거시경제, 계량경제, 금융
정봉은	연구위원	게이오대학교 상학 박사과정 수료	건강보험, 사적연금보험
황진태	연구위원	Clems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계량경제, 경제성장
김해식	연구위원	St. John's University 리스크 관리학 석사	보험회계, 재무건전성 평가
송운아	연구위원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응용미시, 산업조직, 지배구조
이승준	연구위원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기업금융, 응용미시
박선영	연구위원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영학 박사	투자론, 부동산금융, 국제재무, 자본시장
권오경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석사	회계학
정인영	연구원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국제금융
오병국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응용미시
이성은	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 석사	소비자보호, 판매채널
이선주	인턴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보험계리
정민지	연구조원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고령화연구실

-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타 공·사 연금에 관한 연구
- 의료실손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공·사 건강보험에 관한 연구
-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제반 이슈 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류건식	실장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생명보험, 리스크관리, 퇴직연금
조용운	연구위원	University of Houston 경제학 박사	보건경제, 계량경제, 보험경제
강성호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재정금융, 연금보험
이창우	연구위원	Bost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보건경제, 산업조직, 응용미시
정원석	연구위원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게임이론
전성주	연구위원	Bost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재무계량경제, 시계열계량경제
오승연	연구위원	Massachusetts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수리경제
이상우	수석연구원	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 박사과정 수료	생명보험, 일본금융보험 동향
김동겸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재무관리
김미화	연구원	경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국제금융
김유미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보험계리
김영주	연구조원	단국대학교 행정학 학사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기획행정실

- 연구원 경영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조정 및 관리
- 일반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 보험금융연구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출판관리
- 각종 국제회의, 학술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의 행사 운영
- 각종 계약 체결 및 관리
- 사무실 비품, 물품, 차량의 조달 및 관리
- 결산, 인사, 교육, 복리후생제도 기획 및 입안
- 예산의 수립·운영 및 통제
- 의전 및 비서업무
-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도서·자료의 수집, 구입, 관리 및 해외연수·출장자료의 관리
- 연구조사정보 DB의 구축 및 도서회원제 운영 및 관리
- 문서수발, 통제, 보존 및 관리
- 기타 연구원 내 사업추진과 관련한 일반업무 및 행정에 관한 사항

성명	직위	업무분야
안철경	부원장/실장	기획행정업무 총괄
김세환	부장	기획, 행사 업무
홍성연	수석담당역	회계, 세무, 교육 업무
이상운	수석담당역	총무, 자료실 업무
김형진	선임담당역	인사, 예산, 규정 업무
이성원	담당역	급여, 회계 업무

6.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정기간행물		
	간행물 명	발간 주기	주 관
정기간행물	보험금융연구	연 4회(2, 5, 8, 11월)	금융전략실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연간(8월)	동향분석실
	Korean Insurance Industry	연간(8월)	동향분석실
	보험동향	계간(3, 6, 9, 12월)	동향분석실
	KiRi Weekly	주간	동향분석실
	고령화리뷰	연간(7, 12월)	고령화연구실
	용역보고서		
	보고서 명	저 자	
용역보고서	질병장애 및 장기요양 인구 증가에 관한 연구	김석영 외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조영현 외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률 개선 연구	김석영 외	
	금융회사의 장수위험 관리 제고방안	임준환 외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송윤아 외	
	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김경환 외	

7. 2014년 KIRI Weekly 발간 목록

날 짜	호 수	이 슈	포커스	글로벌 이슈
2014.01.06	제266호	• 싱가포르의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개편 논의와 시사점	-	• 고령화와 은퇴인구 확대 우려 • 터키 리라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 위기 가능성과 시사점
2014.01.13	제267호	-	•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 2012년 전세계 상위 25개 보험회사 현황과 시사점 • 중국 지방정부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최근의 논란
2014.01.20	제268호	-	•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보유현황 및 시사점	•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논란 • 바젤위원회의 자본규제 완화 조치
2014.01.27	제269호	-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위험요인과 시사점	•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와 시사점 • IMF의 세계경제전망 상황 조정과 정책권고
2014.02.10	제270호	-	• 개인정보유출 등 사이버리스크 관리의 중요성과 대응방안 • “보호자 없는 병원”시행의 고려사항 • 2013년 4월~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분석과 시사점	• 2013년 중국 보험산업 현황 및 2014년 전망 • EU 솔벤시 II 시행 일정 확정
2014.02.17	제271호	•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와 Fragile 5의 외환위기 가능성	-	• 최근 부각된 비트코인의 문제점과 시사점 • 영국 손해보험회사의 배당정책과 시사점

날 짜	호 수	이 슈	포커스	글로벌 이슈
2014.02.24	제272호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의 한계와 향후 고려사항	• 세액공제 확대에 관한 소고	• 최근 일본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실질 임금 하락 • 미국의 외국계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 강화
2014.03.03	제273호	• 보험계약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행시 영향	• 펀드슈퍼마켓 도입과 금융상품 판매 채널 진화 전망	•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신흥국 진출 현황 및 전망 • 2013년 미국 생명보험산업의 경영 성과 개선
2014.03.10	제274호	-	•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의 배경과 영향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보상한도 확대 필요	•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과 향후 전망 • 중국 양회의 주요 논의 내용
2014.03.17	제275호	-	•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우려 하는 이유	• 중국경제 둔화 우려와 시사점 • 유럽 대형은행의 미국 사업전략 변화
2014.03.24	제276호	-	• 국내 금융업권간 인수합병 추진현황과 시사점	• EU의회,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안 승인 • 중국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체계 개혁 동향
2014.03.31	제277호	• 책임준비금 시가평가 도입과 보험회사의 선제적 대응	-	• 일본 국제시장의 위험요인과 아베노믹스 • 영국의 금융자문서비스 현황과 시사점
2014.04.07	제278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현황과 시사점	-	• 일본의 소비세 인상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논란 • 중국 보험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정책 현황 및 시사점
2014.04.14	제279호	-	• 제3보험 손해사정사 제도 再考	• 주요국 기준금리 전망과 시사점 • 미국 생명보험산업: 저금리의 영향과 시사점
2014.04.21	제280호	•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생활습관과 시사점	• 국가간 개인정보 이동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강화의 필요성	• 2014년 1/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과 향후 전망에 대한 논란 • 인터넷 기업의 금융서비스업 진출과 시사점
2014.04.28	제281호	• FY2013 생명보험 동향 및 시사점	•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논의에 관한 소고	• 국내외 그림자금융 확대 추세와 시사점 • 중국의 보험회사 M&A 규제완화 및 시사점
2014.05.07	제282호	• FY2013 손해보험산업 동향과 시사점	• 차매특별등급 도입과 보험회사 차매 보험상품	• 과거 금융위기 발생 배경과 대응의 시사점 • 미국 생명보험산업의 도전과 성장기회
2014.05.12	제283호	-	•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 2013년 세계 보험산업 M&A 현황과 특징
2014.05.19	제284호	• 국민건강보험 후자가 민영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	-	• 중국과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감소와 시사점 • 미국의 원칙중심 책임준비금 제도(PBR) 도입 추진현황

날 짜	호 수	이 슈	포커스	글로벌 이슈
2014.05.26	제285호	•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과 시사점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도입의 의미와 시사점	• 금융안정위원회의 보험권 자본규제 강화 • 중국 방키슈랑스시장의 현황
2014.06.02	제286호	• 장수리스크 관심 확대와 시사점	•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 논란	• 미국의 Big Data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 유럽 방키슈랑스시장의 현황과 전망
2014.06.16	제287호	• 부부 이혼시 퇴직급여 재산분할제 도입 방안	• 사적연금의 연금화 필요성과 과제	• 미국 401K 적립금 감소 예상과 영향 • 일본 1/4분기 경제성장률 개선 평가
2014.06.23	제288호	-	• 글로벌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전략과 시사점	• 글로벌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위험요인 • 글로벌 보험산업 건전성 규제강화의 영향과 대응
2014.06.30	제289호	-	• 잠재성장률 제고와 금융의 역할	• 미국의 인플레이션 논쟁과 기준금리 인상 전망 • 2014년 하반기 유럽 은행의 재무건전성 및 경영전망
2014.07.07	제290호	• 재보험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소고	-	• 미국 퇴직연금가입자를 위한 은퇴 설계 제언 • 영국의 네덜란드식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시사점
2014.07.14	제291호	-	• 한국과 일본 노인 삶의 질과 노인 복지에 관한 소고	• 미국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증가와 시사점 • 중국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역력비율 현황 및 전망 • 한·중 정상회담 경제·금융 분야 성과에 대한 중국의 평가
2014.07.21	제292호	-	• 최근 금융정책 변화와 시사점	• 2013년 세계 보험산업 현황과 전망 • 보험산업이 주목해야 할 신종리스크(New Emerging Risk)
2014.07.28	제293호	-	• 일본 경제 장기부진의 시사점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 고령층 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판매채널의 역할	• IFRS4 2단계 도입 관련 주요 이슈 • 미국의 금융규제 개혁 추진 현황
2014.08.04	제294호	• 보험금 청구·지급관련 제도개선의 향후 논의방향	• 보험회사 이자율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시사점	• 영국 퇴직연금 자동가입제와 퇴직 연금시장 전망 • 아시아 주요국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현황 및 시사점
2014.08.11	제295호	-	• 해외 장수스왑(Longevity Swap) 거래 증가와 시사점	• 기관투자자의 장기투자 활성화 관련 논의 • 아르헨티나 채무불이행의 원인과 평가
2014.08.18	제296호	-	• 이슬람 금융과 금융회사 해외사업	•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우려 확대 • 인구고령화의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날 짜	호 수	이 슈	포커스	글로벌 이슈
2014.08.25	제297호	•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특징과 검토 방향	-	• 생명보험회사의 성공적 빅데이터 활용방안 • 인도의 보험회사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와 시사점 • 호주,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2014~17년 국가전략 도입
2014.09.01	제298호	• 해외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시장 성장의 시사점	• 보험회사 행정지도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와 시사점 • 일본의 정성적 위험관리체계 강화와 시사점	• 저금리 지속의 영향과 주요국의 대응 방안 • 연금제도 평가 기준과 제도 개선 시 고려 사항
2014.09.15	제299호	• 미국 MMF 규제 개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비경제활동인구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합리화 필요	•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가 미칠 영향과 시사점 •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와 자동차보험
2014.09.22	제300호	• 복합점포 활성화의 득과 실	• 국내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시사점	• 미국 특약형 건강보험시장 성장과 원인 •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규제 변화 및 시사점
2014.09.29	제301호	• 자동차보험 보상원리에 대한 소고	-	• 고령층 이보험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고려사항 • 외국계 보험회사 중국시장 진출 성과와 시사점
2014.10.06	제302호	• 일본 제3보험 상품동향 및 시사점	-	• 세계 경제의 과도한 부채와 저성장 위험 • 미국,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시행 방안 확정과 시사점
2014.10.13	제303호	-	•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논의와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 검토	• 글로벌 생명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 회사 대응 • AIG의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 사례와 시사점
2014.10.20	제304호	-	• 기준금리 인하, 저금리 장기화와 보험산업 • 손해사정의 외부위탁 강제법안에 대한 검토	• 애플리와 세계적 유행성질병이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 •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활용 현황
2014.10.27	제305호	-	• 판매채널 다변화에 따른 온라인채널 활성화 방안 필요 • 3/4분기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소고	•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해외시장 철수와 시사점 • ASEAN경제공동체(AEC) 출범과 ASEAN 보험산업 전망
2014.11.03	제306호	•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 미국 생명보험산업의 2014년 상반기 경영실적 분석 • 2013년 중국 자동차의무보험 영업수지 현황과 시사점
2014.11.10	제307호	• 공제사업 현황 및 감독강화 필요성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타당성 검토	-	• 중국 온라인 보험 판매 현황과 시사점 • LTC 보험의 직면 과제와 보험회사의 역할
2014.11.17	제308호	-	• 행정지도 상사관리시스템 구축의 의의와 시사점	• 최근 주요국의 연금 개혁 현황 •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제언

날 짜	호 수	이 슈	포커스	글로벌 이슈
2014.11.24	제309호	-	• 한·중 FTA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의무 보험 제도 개선 방향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소통 현황과 시사점 • 동남아 5개국 생명보험시장의 특성과 제언
2014.12.01	제310호	-	• 변액보험 보증수수료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시사점 • 자동차보험을 통한 다른 손해보험 상품 판매 가능성 분석	• 2015년 세계 보험산업 전망 •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시행과 시사점
2014.12.08	제311호	• 보험회사 세제적격 연금지출 현황 및 시사점	• 미국 CDA(Contingent Deferred Annuity)상품 판매 논의와 시사점	• 중국의 금융개혁 본격화와 시사점 • 유럽 보험회사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2014 연차보고서

발 행 인 강 호

편집위원장 윤성훈

편 집 위 원 김선아

편 집 실 무 이유리

제 작 경성문화사 (786-2999)

발 행 일 2014. 12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